

■ 목차

I. 코로나19 피해 및 방역

1. 확진자, 사망자, 치사율 / 1
2. 의료시스템 / 8
3. 방역 현황 / 22

II. 각국 정부 대응

1. 경제 지원 / 32
2. 가계 지원 / 50
3. 보험산업 지원 / 61

III. 보험회사 영향 및 대응

1. 보험산업 영향 / 73
2. 상품개발 및 보장확대 / 84
3. 보험회사의 사회적 기여 / 91
4. 팬데믹 리스크 / 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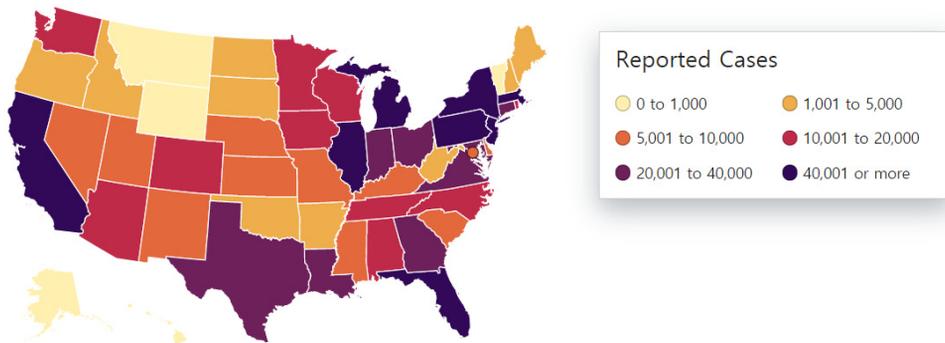
I. 코로나19 피해 및 방역

1. 확진자, 사망자, 치사율

가. 미국

- 2020년 1월 19일 우한 지역을 여행하고 돌아온 35세 남성의 코로나19 확진을 시작으로 미국 전 지역에 지역감염(Community Transmission) 형태로 확산됨

〈그림 1〉 미국 주별·지역별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수 현황



자료: 질병통제예방센터(CDC)

- (피해 현황) 2020년 5월 13일 오후 2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1,369,964명, 사망자 수는 82,387명으로 6.0%의 치사율을 보임¹⁾
 - 확진자 수는 인구 10만 명당 415.7명 발생하고 있으며, 전 세계 누적확진자 및 사망자의 수가 가장 많아 심각한 상황임

1) Johns Hopkins Coronavirus Resource Center(2020년 5월 13일 기준 자료임)

나. 일본

- 2020년 2월 초에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이후,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로 확진자가 급증하였음
 - 일본 내륙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중국 우한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일본인 191명 중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우한에 다녀오지 않은 내국인의 확진 사례가 발생하면서 전국에 빠른 속도로 확산됨
- (피해 현황) 2020년 5월 13일 기준 일본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는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712명)를 포함하여 1만 6,832명이며, 완치자 수는 10,519명임
 -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와 치사율은 각각 710명, 4.2%이며, 인구대비 확진자 수는 100만 명당 133명이므로 발생률은 0.00133%임²⁾

다. 중국

- 코로나19는 2019년 12월 후베이성 우한을 시작으로 2020년 1월 최대 명절인 춘절 연휴를 거쳐서 전국으로 확산됨
 - 2019년 12월 8일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후베이성 우한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확산세가 멈추지 않아 2020년 1월 23일부터 우한에 대한 봉쇄 조치가 시행됨
 - 그러나 2020년 3월 초부터 코로나19 확산의 진정세가 확인해지면서 4월 8일 우한에 대한 봉쇄가 해제됐음
- (피해 현황) 2020년 5월 13일까지 중국 내 누적 확진자 및 완치자 수는 각각 8만 2,929명 및 7만 8,195명에 달했으며 치료 중인 환자 및 격리 중인 의심 환자는 각각 101명, 4명이 있음³⁾
 -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4,633명이며, 치사율은 5.6%임

2) <https://coronaboard.kr>

3) 中国政府网(2020. 4), “截至5月13日24时新型冠状病毒肺炎疫情最新情况”

라. 대만

- 대만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020년 1월 21일에 처음으로 발견됐으며, 그 이후 대만 정부가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한 덕분에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
 - 대만의 코로나19 첫 확진자는 중국 우한에서 다녀온 사람이며, 중국과 거리상 매우 가깝고 교류도 많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산 속도가 거세질 가능성이 있었음
 - 2003년 5월 대만에서는 사스(SARS,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해 일일 기준 중국 본토 확진자를 추월한 바 있음
 - 그러나 대만 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11명이 되는 2020년 2월 5일에 중국 본토를 방문한 모든 외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등 강력한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취함⁴⁾
 - 중국 본토를 방문한 대만인은 귀국 후 무조건 14일간의 자가격리를 받아야 됨
- (피해 현황) 5월 13일까지 대만 내 누적 확진자 및 완치자 수는 각각 440명 및 368명에 달했으며 치료 중인 환자는 65명이 있음⁵⁾
 - 코로나19 사망자 수는 7명이며, 치사율은 1.6%에 불과함

마. 유럽

- (피해 현황) 2020년 5월 13일 오전 8시 기준 유럽 국가 중 영국은 감염자 226,463명, 사망자 32,692명, 치사율 14.44%, 이탈리아는 감염자 221,216명, 사망자 30,911명, 치사율 13.97%, 스페인은 감염자 269,520명, 사망자 26,920명, 치사율 9.99%, 프랑스는 감염자 140,227명, 사망자 26,991명, 치사율 19.25%, 독일은 감염자 173,171명, 사망자 7,738명, 치사율 4.47%임
 - 인구 대비 확진 비율은 영국 0.33%, 이탈리아 0.37%, 스페인 0.58%, 프랑스 0.21%, 독일 0.21%이며, 인구대비 사망 비율은 영국 0.05%, 이탈리아 0.05%, 스페인 0.06%, 프랑스 0.04%, 독일 0.01%임

4)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2), “2月6日起全中國大陸(含港澳)列二級以上流行地區, 居住中國大陸各省市陸人暫緩入境”

5) 衛生福利部, 嚴重特殊傳染性肺炎專區, 最新疫情資訊(2020년 5월 8일 기준 자료임)

■ (독일) 독일의 경우 감염자의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치사율 및 인구 대비 사망 비율이 유난히 낮게 나타남

- 유럽연합(EU) 통계에 따르면 EU 국가들의 65세 이상 노령 인구 비율 평균은 19.4%이며, 독일은 21.2%(2015년 기준)로 이탈리아(21.7%)와 함께 유럽 최고 수준임
- 독일은 노인 인구도 많고 건강습관도 좋지 않으나 의료비, 인력, 병상 등 의료 관련 인프라가 유럽 최고 수준을 확보하고 있어 치사율이 낮은 것으로 분석됨

〈표 1〉 유럽 국가 코로나19 피해 현황

(단위: 명, %)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감염자	226,463	221,216	269,520	140,227	173,171
사망자	32,692	30,911	26,920	26,991	7,738
치사율	14.44	13.97	9.99	19.25	4.47
인구	67,886,011	60,461,826	46,754,778	65,273,511	83,783,942
65세이상 노인 인구	18.1	22.3	19.0	19.3	21.2
인구 대비 확진 비율	0.33	0.37	0.58	0.21	0.21
인구 대비 사망 비율	0.05	0.05	0.06	0.04	0.01

주: '치사율'은 감염자 대비 사망자 비율을 의미함
 자료: 1) 2020 통계청, UN, 대만통계청 기준
 2) OECD(2019. 11. 28), 각 국가별 'Country Health Profile 2019'
 3) <https://coronaboard.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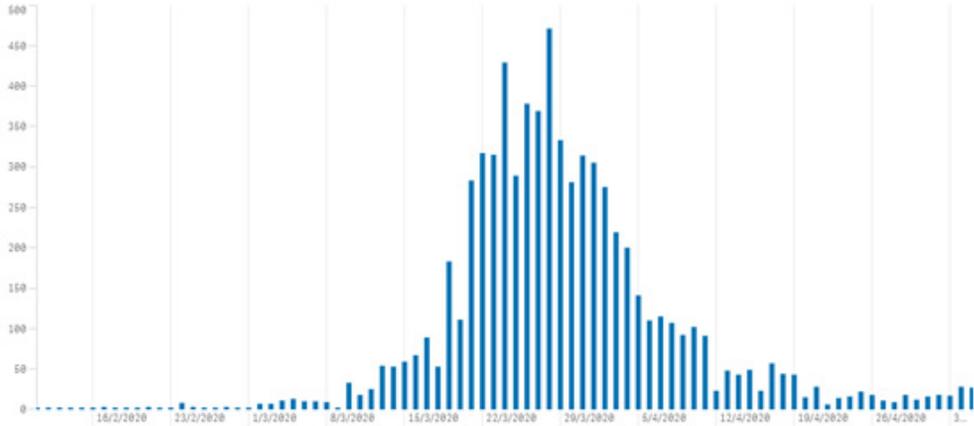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2020년 1월 말 첫 코로나19 확진자를 시작으로 2020년 3월까지 급속도로 확산되었다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2〉 호주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추세

(단위: 명)



자료: 호주 보건부

- (피해 현황) 2020년 5월 13일 오후 3시 기준 총 검사 수 909,025명 이상, 누적 확진자 수 6,975명, 사망자 수 98명, 완치자 수 6,271명을 기록하였으며, 치사율은 1.4%임
- 발생상황을 살펴보면, 신규 발생 건의 대부분은 New South Wales주와 Victoria주에서 발생하였으며, 양성반응 비율은 Tasmania주만 제외하고 1% 미만임

〈표 2〉 호주의 주별 검사 수, 양성반응 비율, 사망자 수 현황

(단위: 명, %)

구분	총 검사 수	검사 양성반응 비율	사망자 수
호주 전체	909,025	0.8	98
Australian Capital Territory(ACT)	12,637	0.8	3
New South Wales(NSW)	323,887	0.9	45
Northern Territory(NT)	5,759	0.5	0
Queensland(QLD)	142,040	0.7	6
South Australia(SA)	72,725	0.6	4
Tasmania(TAS)	20,088	1.1	13
Victoria(VIC)	273,255	0.6	18
Western Australia(WA)	58,634	0.9	9

주: 2020년 5월 13일 3시 기준 자료임
 자료: 호주 보건부

■ (감염 경로) 호주 확진자들의 대부분은 해외유입으로 인한 감염임

- 호주 전체 확진자 중 62.3%는 해외유입으로, 37.2%는 지역 내 감염으로 나타났으며, 지역 감염의 27.0%는 확진자 접촉으로 인해, 나머지는 접촉자가 밝혀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대) 호주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든 연령대에 걸쳐 발생함

- 호주 코로나19 총 확진자의 중앙값은 48세이며(범위는 0세에서 101세임), 총 사망자의 중앙값은 80세임(범위는 42세에서 96세임)

2) 싱가포르

■ (신규 확진자) 2020년 1월 23일 싱가포르 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확진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함

- 첫 확진자는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남성이었으며, 싱가포르에 일행 9명과 방문하여 확진 판정을 받음
- 2020년 2월 초 현지 교회 등 소규모 집단 내 전파로 확진자 수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퇴원자 수도 늘어나며 '방역 모범국'으로 지칭됨
- 그러나 3월 23일 학교가 개학하면서 지역사회 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함
- 4월 12일 이후 기숙사에 밀집하여 거주하던 이주노동자의 기숙사에서 집단감염자가 폭증하면서 싱가포르 내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

〈그림 3〉 싱가포르 코로나바이러스 신규 확진자 수 추세

(단위: 명)



자료: 싱가포르 보건부

- (피해 현황) 2020년 5월 13일 10시 기준 누적 확진자 수 24,671명, 사망자 수 21명, 완치자 수 4,809명을 기록하였고, 치사율은 0.08%임
 - 확진자 대부분은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임

- (감염 경로) 2020년 5월 13일 기준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는 이주노동자와 싱가포르 국민 또는 영주권자 감염은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기숙사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신규 확진자 수는 매일 백 명 단위로 증가하는 추세임
 - 감염 경로가 해외유입인 경우는 5월 5일 이전에는 579명이 감염되었으나, 5월 10일 1명 발생 이후 5월 25일 기준 추가 신규확진자는 없음

2. 의료시스템

가. 미국

■ (의료체계) 미국의 의료시스템은 민간의료체계가 주도하고 있으며, 정부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의료보험 제도가 제한적·보완적 역할을 하고 있음

- 2017년 미국의 공적건강보험 대상자는 전체 인구의 35.9%에 불과하며, 민간의료보험 대상자가 54.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약 10%에 해당하는 인구는 건강보험 미가입자임⁶⁾
 - 정부에 의해 제공되는 공적의료보장제도는 65세 이상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어(Medicare), 저소득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Medicaid),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CHIP: Children's Health Insurance Program)이 대표적임⁷⁾
 - 민간의료보험은 직장단위 건강보험⁸⁾과 개인단위 건강보험으로 구분되며, 90% 이상이 직장단위 건강보험 가입자임
 - 건강보험 미가입자는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낮은 근로자가 대다수임

■ (검사비용) 2020년 3월 18일, 공중보건 비상사태 동안 민간의료보험 가입자가 본인부담 없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됨⁹⁾

- 공적의료보험인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가입자도 본인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에는 주별로 선택권(Option)을 부여하여,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 적용해 코로나19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게 함¹⁰⁾
 - 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진단을 위한 의료진 방문 비용(원격진단

6) OECD Health Statistics 2019

7) 그 외 군인의료보험(TRICARE), 재향군인 의료보장(VA), 연방공무원의료혜택(FEHB), 인디언보험(Indian Health Service) 등이 있음

8) 전일제 근로자 50명 이상인 기업의 고용주는 건강보험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함

9) 가족 우선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 DIVISION F(Health Provisions)을 참조함

10) 51개 주 중 37개 주가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 제공함(2020년 2월 19일 기준, 카이저 패밀리 재단(Kaiser Family Foundation) 자료를 참고함
(<https://www.kff.org/health-costs/issue-brief/state-data-and-policy-actions-to-address-coronavirus/>)

- 포함), 긴급치료센터, 응급실 이용 등의 비용도 포함됨
- 건강보험 미가입자에게 메디케이드 혜택을 확대적용하지 않는 주에서는 고액의 코로나19 검사비가 청구될 수 있음
- 이후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CARES) 법안의 통과로 아직 FDA 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검사까지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장시킴
 - CARES 법은 보험회사와 계약되어 있지 않은 기관(Out-of-network Provider)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에도 건강보험회사가 검사비용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검사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¹¹⁾
- (인력역량 확보) 미국은 약사가 의사를 대신하여 기존의 처방전을 연장하고 약을 처방할 수 있도록 하여 의사 인력이 더 중요한 사안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함
 -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2.6명, 간호사 수는 11.7명으로 OECD 평균(의사 3.5명, 간호사 8.4명)에 비해 의사 수가 적은 편임
- (보건의료 시설 확보) 미국 다수 주에서는 검사를 신속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한국의 사례를 모방하여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Drive-through Centres)를 운영하고 있음
 - 2016년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2.8개로, OECD 평균(4.7개)보다 낮은 수준임
- (예방·대응)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한 원격의료 서비스의 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발표함¹²⁾
 - 코로나19 긴급사태 기간 동안, 건강보험 양도 및 책임에 관한 법(HIPPA) 규제를 완화하여 원격건강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페이스타임, 스카이프 등의 원격통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어플리케이션이 HIPPA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시키지 않아도 서비스 제공에 사용할 수 있지만, 페이스북 라이브(Facebook Live), 틱톡(TikTok) 등과 같이 일반대중이 접속 가능한 공개플랫폼 사용은 금함

11) 보험회사와 협상된 요율(Negotiated Rate)이 없는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공식 인터넷 홈페이지에 코로나19 검사비용 현금가격을 공시하도록 하고(CARES 법 3202(b)),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회사가 보상하도록 함(CARES 법 3202(a)-(2))

12) <https://www.hhs.gov/coronavirus/telehealth/index.html>

- 메디케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는 코로나19 긴급사태 기간 동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프로그램 대상자들이 원격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고, 보장하는 원격의료서비스 항목도 확대함

나. 일본

- 일본 의료제도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보편적인 의료보험 제공, ② 전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유접근(Free Access), ③ 현물급여 제공 등을 3원칙으로 하는 사회보장제도임
 - 보험자는 지역건강보험조합과 직장건강보험조합으로 분류되는 수많은 건강보험조합 등이 있음
 - 의료서비스로는 보험진료(급여)와 보험외진료(비급여)로 구분하지만, 이를 혼합하여 진료 시 전액을 비급여성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음
- 일본은 코로나19 감염과 관련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한 이들을 선별 검사하는 시스템이었으나 긴급사태 선포에 따라 의사 판단에 따라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완화함
 - 일정 기준은 발열 '37.5℃ 이상', '동맥혈 산소포화도(SPO2) 93% 이하', '폐렴 증상'의 3가지 조건이고, 이를 모두 충족하여야 함
- 후생노동성 장관은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검사비용 약 1만 8천 엔을 공적으로 부담할 계획을 2020년 3월 3일 밝힘
 - 공적건강보험에서 의료비는 원칙적으로 초등학교 이상 69세 이하의 경우 30% 본인부담하고, 부담 한도액(월 57,600엔)¹³⁾을 초과할 경우 사후 환급함
 - 후생성장관의 발표에 따라 3월 6일부터 코로나19 검사(PCR)¹⁴⁾ 시 공적건강보험이 적용되고, 본인부담금 약 30%도 정부가 부담함
 - 다만, PCR 검사 이외에 환자가 CT 등의 검사를 요구할 경우 의료비는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공적건강보험의 일반 규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음

13) 근로자 표준보수월액 26만 엔 이하의 경우 본인부담 한도액임

14) 환자의 침이나 가래 등을 통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유전자 증폭 검사(PCR: Polymerase Chain Reaction)임

다. 중국

- (의료보험제도) 중국 의료보험제도는 국가가 각종 사고와 질병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로 기본의료보험(공적건강보험)과 상업의료보험(사적건강보험)으로 구성됨¹⁵⁾
 - 기본의료보험의 평균가입률은 95% 이상으로 현재 가장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가입 대상별로 크게 2가지로 구분함
 - 도시근로자 대상의 도시근로자 기본의료보험과 도시 비근로자 및 농촌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도농주민 기본의료보험으로 구분됨
 - 상업의료보험은 보험회사의 영리성 의료보험제도로 중국의료보험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며 크게 5가지 종류가 있음¹⁶⁾
 - 의료보험, 질병보험, 소득보장보험, 간병보험 및 의료의외보험¹⁷⁾이 있음
- 코로나19 확진자의 치료비용 부담과 관련해 기본의료보험 가입자는 치료비용이 전액 면제되지만 기본의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원칙상 치료비용을 본인이 부담함
 - 기본의료보험 가입자의 치료비용은 기본의료보험 보장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남은 비용은 정부가 재정으로 부담함¹⁸⁾
 - 2020년 3월 15일 기준 중국 코로나19 확진자의 평균 치료비용은 1인당 1만 7,000위안이며, 65%를 기본의료보험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35%를 정부가 부담함
 - 기본의료보험 미가입자의 치료비용을 원칙상 환자 본인이 부담하지만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을 경우 정부 재정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음
 - 상업의료보험 가입자의 경우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에 따라 치료비용을 지급함
 -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는 기본의료보험 가입 시 기본의료보험의 보장한도를 초과한 비용만을 부담하며 기본의료보험 미가입 시 치료비용을 전액 부담함¹⁹⁾

15) 新华网(2020. 1), “多层次医疗保障体系不断健全——我国医疗保障改革成果综述”

16)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9), 「健康保险管理办法」

17) 의료사고로 인한 병원의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임

18) 新华网(2020. 3), “国家医保局：以人民为中心，切实保障患者医疗费用”

19) 中国政府网(2020. 4), “国家医保局 外交部 财政部 国家卫生健康委关于外籍新冠肺炎患者医疗费用支付有关问题的通知”

- 한편, 정부가 지정한 후베이성을 경유한 사람, 해외 유입 사람, 발열 증상이 있는 사람 및 코로나19 확진자의 밀접접촉자의 검사비는 정부가 부담함²⁰⁾
 - 단, 본인이 자진해서 코로나19 검사를 받는 경우 본인이 검사비를 부담해야 함

라. 대만

- (의료보험제도) 대만 건강보험제도는 전국민을 적용대상으로 하는全民건강보험(공적건강보험)과 이를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상업건강보험(사적건강보험)으로 구성됨²¹⁾
 - 全民건강보험은 1995년 기존의 10여 개 공적건강보험의 통합으로 출범했으며 대만에 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국민 및 대만에서 태어난 신생아가 모두 가입해야 함²²⁾
 - 全民건강보험 출범 이전에는 대만에서 공무원보험, 퇴직자보험, 사립학교교직원보 험, 농민건강보험, 지방의원건강보험, 저소득층건강보험, 군인보험 등이 있었음²³⁾
 - 2019년 기준 대만全民건강보험의 가입률은 99.8%를 기록했으며, 이에 대한 국민 만족도는 89.7%에 달함
 - 상업건강보험은 보험회사가 운영하는 영리성 의료보험으로 대만의료보험체계의 중요 한 부분으로 크게 7가지 종류가 있음²⁴⁾
 - 암보험, 부녀와 영유아보험, 중대질병과 특정질병보험, 입원의료비용보험, 장기개호 보험, 장애개호보험 및 상해의료보험이 있음
- (코로나19 치료비 부담) 대만 위생복지부는全民건강보험 가입자의 코로나19 치료비를 전 민건강보험이 지급하고 미가입자의 치료비용은 질병관제서가 부담하도록 규정함²⁵⁾
 - 외국인의 치료비용은 대만인처럼全民건강보험 가입자라면全民건강보험에서 지급하 고 미가입자라면 질병관제서가 부담함
 - 한편, 코로나19 검사비는 검사대상자의 경우 정부가 부담하지만 자진검사자 및 2020년

20) 红星新闻(2020. 4), “多地公布新冠检测机构：以自费为主, 重点防控人员费用由政府承担”

21) 李慧虹(2016. 9), 「保險學(概要)」

22) 行政院(2020. 3), “全民健康保險”

23) 呂建德 외 2명(2002. 1), 「我國社會保險政府補助政策合理性之研究」

24) 人壽保險商業同業公會(2020. 3), “我國健康險商品之市場概況”

25)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2), “嚴重特殊傳染性肺炎(COVID-19, 簡稱武漢肺炎)疫情問答輯(醫事機構版本)”

3월 17일 이후 중국 본토, 마카오 및 홍콩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서 입국한 유증상 외국인의 경우 본인이 부담해야 함²⁶⁾

- 코로나19 검사대상자는 14일 내에 해외여행이력이 있거나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있는 해외여행자와 접촉한 자, 발열 등의 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소견자, 원인불명의 폐렴으로 3일간 항생제 치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자를 포함함
- 중국 본토, 마카오 및 홍콩에서 입국한 유증상 외국인은 14일 동안의 자가격리 및 검사를 받아야 되지만 그 검사비는 정부가 부담함
- 대만의 코로나19 검사비는 3,000대만 달러임

마. 유럽

■ (의료시설 및 시스템) 병상 수, 의사 수, 간호사 수, 1인당 의료비 지출 금액을 살펴보면 유럽 국가들 중 독일이 의료시설 및 시스템이 가장 잘 갖추어져 있음

- 유럽 27개국 평균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는 5.41개이며, 영국은 2.54개, 이탈리아 3.18개, 스페인 2.97개, 프랑스 5.98개, 독일 8.00개임
- EU 평균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는 3.76명이며, 영국은 2.81명, 이탈리아 3.99명, 스페인 3.88명, 프랑스 3.37명, 독일 4.25명임
- EU 평균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는 8.40명이며, 영국은 7.80명, 이탈리아 5.80명, 스페인 5.70명, 프랑스 5.43명, 독일 12.90명임
- EU 평균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은 2,887유로이며, 영국은 3,409유로, 이탈리아 2,523유로, 스페인 2,221유로, 프랑스 3,883유로, 독일 4,459유로임
 - 독일 의료비의 84.5%는 공공재정에서 조달하며, 개인 부담은 12.5%로 EU 회원국 중 가장 낮음

■ (의료보장제도) 의료보장 제도는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이 국민보건서비스(NHS: National Health Service)를 택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독일이 의료보험제도(NHI: National Health Insurance)를 시행하고 있음

26)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3), “旅遊疫情第三級以外國家來台短期停留外來人士無健保卡者, 有症狀者須自費檢驗”

- 국민보건서비스(NHS)는 국민의 의료 문제는 국가가 책임진다는 관점에서 정부가 일반 조세로 의료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도임
 - 의료보험제도(NHI)는 사회연대성을 기반으로 보험의 원리를 도입한 의료보장체계로서 단일 보험자가 국가 전체의 건강보험을 관리 및 운영함
 - NHI(한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 비해 NHS(이탈리아, 스페인, 영국)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의 확진자 및 사망자의 비율이 높음
 - 의료보험체제에서는 의료비가 부족한 경우 추가 확보가 가능하나, 무상의료체제에서는 재정 상황에 따라 의료비 예산 확보가 불가능할 수 있음
- (무상의료국가의 의료 인력 이탈) 무상의료국가에서 의사는 공무원 신분으로, 이탈리아와 영국의 경우 재정 악화로 인한 의사 처우 악화로 의사의 해외 유출이 심각하였음
- 유럽연합(EU) 통계와 이탈리아 민간 연구재단 에우리스페스 보고서에 따르면 2005~2015년 10년간 이탈리아 의사 1만여 명이 자국을 떠났으며, 간호사는 약 8,000명이 떠남
 - 양질의 의사와 간호사가 떠난 뒤 그 공백을 동유럽 및 아프리카 출신 의사들이 메우고 있어 의료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음
- (영국) 영국은 진료비 지불 능력이 아닌 임상적 필요(Based on clinical need, not ability to pay)에 근거하여 무상의료를 제공하여 대기시간이 길고, 의료 인력이 부족하며, 설비 낙후라는 문제점이 있음
- 최근 모든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민간 병원에 가기 위하여 보험을 가입하는 추세임
- (독일) 독일은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이 소득수준과 직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구조로 공적 의료보험(85.5%),²⁷⁾ 공적의료보장(3.9%),²⁸⁾ 민간보험(10.3%) 3가지 형태로 구분됨²⁹⁾
- 공적보험의 보험자는 질병금고³⁰⁾이며, 민간 건강보험회사는 약 40여 개임

27) 1차 질병금고는 주정부가 관리하며 대상은 지역, 직장, 수공업자, 농민, 광부 및 선원이고 2차 질병금고는 생산직 및 사무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함

28) 의료비용 특별부담자로 공공부조, 연방국경수비대 및 국방군, 대체복무자, 연방원호법 및 연방보상법, 연방 철도공무원 및 체신공무원, 산재보험, 기타 지역 비용부담자(연방 주경찰)을 대상으로 함

29)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17. 12),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안정적 제도화를 위한 국외출장(독일) 결과보고서』

30) 공적의료보험조합으로 독일의 공적의료보험은 조합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조합과 유사함

- 보편적 의료복지를 제공하면서 동시에 민영 보험을 허용하고 있으며, 2009년 전 국민 건강보험제도를 도입하면서 기본 의료를 추가 비용없이 제공하는 법정 강제보험(SHI: Social Health Insurance)과 더 많은 보험료를 지불하고 폭 넓은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사적보험(PHI: Private Health Insurance)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일정 수준(2015년 기준 연 5만 4,900유로) 이하의 급여를 받는 봉급 생활자는 의무적으로 법정 강제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그 이상의 급여를 받는 고액 봉급생활자나 자영업자, 공무원은 법정 강제보험과 사적보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함
 - 2015년 기준 독일 국민의 88%가 법정 강제보험을, 10%가 사적보험을 이용 중임

〈표 3〉 유럽 국가 의료시설 및 제도

(단위: 개, 명, %, 유로)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인구 1,000명 당 병상 수	2.54	3.18	2.97	5.98	8.00
인구 1,000명 당 의사 수	2.81	3.99	3.88	3.37	4.25
인구 1,000명 당 간호사 수	7.80	5.80	5.70(10.5 ¹⁾)	5.43	12.90
1인당 연간 의료비 지출 금액	3,408.88	2,522.52	2,221.11	3,883.02	4,459.36
GDP 대비 의료비 지출 비율	9.80	8.80	8.90	11.20	11.20
의료보장제도	NHS(무상)	NHS(무상)	NHS(무상)	NHI(유상)	NHI(유상)

주: 스페인 간호사 수의 ()는 관리자, 교육자, 연구원 종사자 포함하는 숫자임
 자료: 1) eurostat(2020. 1. 31 최종 업데이트), Hospital beds(2017년 기준)
 2) eurostat(2020. 2. 24 최종 업데이트), Health personnel by NUTS 2 regions(2017 기준)
 3) eurostat(2020. 2. 24 최종 업데이트), Health personnel employed in hospital(2017 기준)
 4) eurostat(2020. 2. 24 최종 업데이트), Health personnel (excluding nursing and caring professionals)(2017 기준)
 5) eurostat(2020. 2. 24 최종 업데이트), Health care expenditure by financing scheme(2017 기준)
 6) OECD(2019. 11. 15), "OECD Health Statistics 2019"

- (코로나19 검사 대상) 5개 국가 모두 확실한 유증상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영국의 경우 역학기준 및 임상기준을 설정하고 두 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함
 - (영국) 역학기준은 증상 발현 14일 이내에 감염국가나 지역을 방문·경유한 경우 또는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를 의미하며, 임상기준은 심각한 급성호흡기감염이 있는 경우 또는 다른 증상 없이 열만 있는 경우를 의미함

- (이탈리아) 이탈리아는 확산 초반 광범위한 검사를 시행하였으나, 확산 후 중앙 정부는 확실한 유증상자로 대상을 좁혔음
 -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의 경우 2020년 3월 17일부터 광범위하고 공격적인 검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기도 함
- (스페인) 스페인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등 급성호흡기감염 증세를 보이면서 최근 14일 이내 코로나19 감염 위험국가에 체류한 경우 또는 확진자 또는 확진의심자와 밀접접촉한 이력이 있는 경우이거나, 중증급성호흡기감염 입원자 중 기타 의심감염질환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함
- (프랑스) 코로나19 감염병 대응 3단계(Phase Epidemique)에서는 모든 유증상자에게 진단검사(RT-PCR SARS-CoV-2)를 하지 않고, 유증상 중증환자 또는 의료인력, 노약자 및 고위험군, 임산부 등에 한하여 필수적으로 검사를 실시함
- (독일) 감염지역 방문 또는 확진환자 접촉 후 기침, 열, 호흡기증상을 보이는 경우 검사를 실시함

■ (코로나19 검사 비용) 의사의 소견에 따라 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무료이나 대기자가 많아 진단을 받기 어려우며, 개인적인 검사의 경우 비용이 비싼 편임

- (영국)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만 검사 비용이 무료이지만, NHS를 통한 검사가 어려워지자 연예인, 축구선수, 대기업 직원 등은 정부 규정을 피해 개인적으로 검사를 받음
- (프랑스) 프랑스의 코로나19 검사비용은 54유로이며 그 중 60%는 사회보장으로, 나머지는 보충적인 민간 보험을 통해 지원함
- (독일) 의사소견에 의한 검사는 건강보험으로 보장되며 의사 소견이 없는 경우 보다 비싼 비용으로 개별 검사가 가능함

■ (코로나19 검사 장소) 주로 병원 또는 보건소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예외적으로 방문 검사 또는 드라이브 스루를 도입하거나 군의료시설을 활용하는 국가도 있음

- (영국) 2020년 4월 2일 기준 공중보건국 산하 11개 연구소 및 NHS 산하 29개 연구소에서 검사가 가능함
 - 확산 초기 북런던에 위치한 잉글랜드 공중보건국의 연구소에서만 코로나19 검사 샘플

플을 처리하여 검사 속도가 느림

- (스페인) 스페인 정부는 코로나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든 개인 병원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국유화하여 민간 인력 및 시설을 국가가 통제함
- (프랑스) 중증환자 또는 입원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검사를 시행하며, 진단검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는 기타 환자의 경우 검사실(Laboratoire)에서 처방전 소지하에 검사 시행이 가능하고, 자택에서도 검체 채취가 가능함
 - 자택 검체 채취의 경우 전화를 통해 사전에 진단검사 시행 가능 여부 및 방식을 안내 받아야 함
- (독일) 관할보건소 및 인근병원 또는 드라이브 스루 검사도 가능하며 예외적인 경우 보건소 직원이 대상자의 집으로 직접 방문검사를 진행함
 - 집중치료병상을 확충하는 병원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병원 간 병상 현황을 공유하는 시스템을 통해 효율적 운영을 도모함

■ (코로나19 확진자 치료비) NHS를 채택한 영국의 경우 확진자의 국립병원 치료가 무료이며, 이탈리아의 경우 기본 진료 및 입원 치료가 무료임

■ (코로나19 관련 기타)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의 경우 의료인력의 자녀를 위한 교육 및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며, 스페인의 경우 데이터코비드(DataCovid)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제한령 준수를 감시하거나 무작위 항체검사를 실시하기도 함

- (영국) 영국은 검사 확대보다는 NHS에 부담이 물리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소호흡기, 집중치료 병상 확보 등에 역량을 집중하였으며, 의료 인력을 감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지침을 재정비함
- (이탈리아) 의료인력 자녀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 및 돌봄서비스 제공 조치함
- (스페인) 의료인력 자녀들의 경우 예외적으로 등교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데이터코비드'라는 이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동추세 분석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보건부에서는 무작위 항체 검사를 실시함
 - 데이터코비드 프로그램은 이동제한령을 국민들이 얼마나 잘 지키고 있는지 감시하는 프로그램임
 - 무작위 항체검사는 지역별 확산 실태 파악 등을 위해 스페인 전역 36,000가구(지역,

성별 등에 따라 무작위로 선정된 약 9만 명)에 대하여 실시함

- (프랑스) 의료인력 자녀들에 대한 예외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은퇴 의료인 및 의과 대학생 등을 일시적으로 동원함

〈표 4〉 유럽 국가 코로나19 검사대상 및 비용 등 비교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검사 대상	· 역학기준 및 임상기준 충족 시	· 확실한 유증상자	· 유증상 또는 밀접접촉자	· 유증상 또는 밀접접촉자	· 감염지역 방문 또는 밀접접촉 후 유증상자
검사 비용	·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만 무료 · 만영 병원 진단키트 375파운드	· 긴급 검사 1유로	-	· 54유로	· 의사소견에 따라 의심대상으로 분류되는 경우만 무료 · 이외 개인적 검사 가능
검사 장소	· 공중보건국 산하 11개 연구소 및 NHS 산하 29개 연구소 · 드라이브 스루 검사 도입	-	· 모든 개인 병원 및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업체를 국유화함	· 병원 또는 시내 검사실 · 자택 검체 채취 · 동부지역 집중치료실 부족으로 군의료시설 활용	· 관할보건소 및 인근병원 또는 드라이브 스루 · 예외적인 경우 보건소 직원 방문 검사
확진자 치료비	· 국립병원 무료	· 기본 진료 및 입원 치료 무료	-	-	-
기타	· NHS 부담 최소화를 위해 장비 및 병상 확보 집중 · 의료인력 보호 지침 재정비	· 의료인력 자녀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의료인력 자녀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데이터코비드 프로그램 가동 · 무작위 항체검사 실시	· 의료인력 자녀들에 대한 보육서비스 제공 · 은퇴 의료인 및 의과대학생 등 일시적 동원	· 검사시설 확보 차원 드라이브 스루 도입

자료: 1) 주 OECD 대표부(2020. 3. 30), “코로나19 관련 OECD 주요국 보건의료 대응 현황”

2) 각 국가 대사관 홈페이지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의료체계) 호주의 건강보험정책은 1990년 이전까지는 공적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초점을 맞추었고, 1990년대 이후 민영건강보험이 발전하기 시작함³¹⁾

- 호주의 공적건강보험제도는 메디케어(Medicare)라고 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함
 - 호주 국민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병원비를 우선 전액 지불하고, 지불한 병원 치료비나 입원비 일부를 메디케어에서 환불받음
- 1990년대 이후 호주 정부는 공공부문의 재정 부담으로 민영건강보험의 가입 활성화를 위한 소득기준별 인센티브·패널티 제도를 도입함
 -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은 공적건강보험이 보장해 주지 않는 진료비를 보장해주는 등 공적건강보험의 보완적인 역할을 수행함³²⁾
 - 소득기준별 인센티브 제도는 소비자가격지수, 보험료 인상분 등을 반영하여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며, 패널티 제도는 상위소득자³³⁾가 민영건강보험에 미가입 시 메디케어 부담금(Medicare Levy)을 추가하는 제도임

■ (검사비용) 호주 국민들 중 검사 대상자로 분류되는 경우에만 메디케어에서 검사 비용을 지급해주며, 검사대상이 아닐 경우 호주 보건부가 코로나19 검사비용을 부담함

- (검사대상) 검사대상의 경우, 아래와 같은 역학기준과 임상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역학기준은 14일 이내에 감염지역 방문력이 있는 경우와 14일 이내에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임
 - 임상기준은 열 또는 호흡기증상이 나타난 경우, 환자가 심각한 감염성폐렴을 앓고 있고 최근의 해외여행이력이 없고 다른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 환자가 중간 또는 심각한 감염성폐렴이 있고 해외여행이력이 없는 의료종사자인 경우임
- (검사장소) 호주 공공병원과 민영병원에서 모두 검사가 가능함

31) 보험연구원(2017. 12. 11), 「호주의 공·사 건강보험 연계 사례와 시사점」

32) 호주의 민영건강보험이 치과, 안과, 물리치료 미용목적 외과수술 등의 비급여 서비스 비용 중 약 50%를 보장하고, 나머지를 개인이 부담함

33) 2012년 기준 연간 개인소득 8만 호주 달러 이상, 가족소득 16만 호주 달러 이상인 경우임

- 호주 전역에 100개 이상의 호흡기·열 임시클리닉을 설치하여 검사를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함³⁴⁾
- (확진자 치료비) 호주 정부가 확진자 치료비의 45%를 지급해왔으며, 최근 50%까지 증액 계획을 발표함
 - 한편, 확진자들 중 메디케어 가입자들은 공공병원에서 무상으로 치료받을 수 있음
- (외국인) 호주 메디케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관광객, 학생, 워킹홀리데이를 비롯한 임시비자 소지자는 민간건강보험이나 여행자보험, 또는 자비로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불해야 함

2) 싱가포르

- (의료체계) 싱가포르의 건강보험제도는 싱가포르 보건부(MOH), 중앙적립기금(CPF: Central Provident Fund), 그리고 민간부문의 협력으로 개인 부담하에 정부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함
 - 싱가포르의 건강보험제도는 저렴한 헬스케어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목표로 함
 - 주요 정책으로는 3M 제도(Medisave, MediShield Life, Medifund)와 장기요양보험인 Elder Shield 등의 정부 보조금이 있음
- 메디세이브(Medisave)는 소액의 의료비 지불을 위한 것으로, 가입자 의무저축을 통해 매 월 소득 일부를 메디세이브 계좌(MSA: Medical Savings Account)에 입금하여 필요 시 본인 및 가족 의료비로 사용할 수 있음
 - 소정의 이자지급과 면세 혜택을 주는 반면, 메디세이브에 저축된 금액의 각 진료당 사용 한도를 제한하는데, 이는 은퇴 후를 대비하여 의료비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임
- 메디실드 라이프(MediShield Life)는 정부와 민간보험사가 합작하여 만든 보험상품으로, 보험료 인상률은 정부에서 관리함
 - 메디실드 라이프는 메디세이브가 충당하지 못하는 항암치료와 같은 중증질환치료비나 장기입원비 등 높은 의료비 지불을 위한 것임

34) 호주 보건부(<https://www.health.gov.au/initiatives-and-programs/coronavirus-covid-19-gp-respiratory-clinics>)

○ 메디세이브 계좌에서 메디셴드 라이프 보험료 지불이 가능하며, 모든 싱가포르 국민과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평생 지원함

■ 메디펀드(Medifund)는 정부 주도 의료보험상품으로, 정부보조금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자금임

○ 메디세이브, 메디셴드 라이프 등 정부보조금으로도 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저소득층을 위한 진료비 보조금임

○ 지급되는 메디펀드 금액은 환자 본인과 가족의 재정상태, 총 의료비 등에 따라 상이함

■ 엘더셴드(ElderShield)는 일상생활이 힘든 중증장애인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노년기를 위한 장기보험제도임

○ 현재 3개의 민영보험회사인 Aviva, Great Eastern, NTUC Income이 운영하고 있음

■ (검사비용) 싱가포르는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무료이지만, 일반병원에서 코로나19 의심진단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상급병원에서 검사가 진행됨

○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코로나19가 의심되어 일반병원을 방문한 경우, 환자들은 진료비를 일괄적으로 10 싱가포르 달러, 노인 환자들은 5 싱가포르 달러만 지불하도록 함

○ (확진자 치료비) 메디셴드 라이프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음

- 한편, 싱가포르 국민일지라도 2020년 3월 27일 싱가포르 정부의 해외여행 경고 조치 이후 해외여행을 강행하여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치료비는 본인 부담임

○ (외국인) 코로나19 확산 초기에는 외국인의 검사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되 이외 비용에 대해서는 자기부담을 원칙으로 하였지만 싱가포르 내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3월 7일 외국인 신규 검사 및 치료를 금지하며 검사비 무상 혜택을 폐지함

3. 방역 현황

가. 미국

■ (격리 조치) 정책적 지원 조치와 더불어 사회적 거리두기, 여행제한 및 금지 등의 격리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

○ (사회적 거리두기) 미 트럼프 대통령은 2020년 3월 13일 국가 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를 선언³⁵⁾하고, 10명 이상의 모임 금지, 자택대피령(Stay at Home Order)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함³⁶⁾

- 필수 비즈니스가 아닌 술집 및 레스토랑 영업을 제한하고 학교를 폐쇄함

- 2020년 3월 16일, 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지침 “15 Days to Slow the Spread”을 발표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³⁷⁾하였고, 4월 30일까지 한 차례 더 연장함

- 2020년 4월 16일, 미 정부는 “Opening Up America Again” 지침을 발표하여 주·지방정부가 코로나19 완화 추이에 따라 단계(Phase)를 조정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함³⁸⁾

○ 미 국무부는 주요국에 대한 여행 및 입국제한 조치를 취함

- 중국(2. 2), 이란(3. 2), 유럽(3. 13), 영국 및 아일랜드(3. 16)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시행³⁹⁾하였고, 캐나다와 멕시코(3. 21) 국경을 통한 여행객을 제한함⁴⁰⁾

35) White House(2020. 3. 13), “Proclamations”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proclamation-declaring-national-emergency-concerning-novel-coronavirus-disease-covid-19-outbreak/>

36) White House(2020. 3. 16),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3/03.16.20_coronavirus-guidance_8.5x11_315PM.pdf

37) <https://www.whitehouse.gov/articles/15-days-slow-spread/>

38) 3단계 대응 지침을 통해 단계별로 개인, 기업, 그리고 학교, 요양시설, 체육관, 술집 등의 특정 업종이 지켜야 할 사항을 제시함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20/04/Guidelines-for-Opening-Up-America-Again.pdf)

39) 국가별 입국제한 조치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문은 아래 홈페이지의 링크를 참조하기 바람
 (https://www.cdc.gov/coronavirus/2019-ncov/travelers/from-other-countries.html)

40)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2020. 3. 23), “Fact Sheet: DHS Measures on the Border to Limit the Further Spread of Coronavirus”
 (https://www.dhs.gov/news/2020/04/21/fact-sheet-dhs-measures-border-limit-further-spread-coronavirus#)

- 2020년 3월 말 코로나19 확산이 가속화되자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대해 여행경보 4 단계(여행금지) 조치를 발령하여 해외여행을 금할 것을 권고함⁴¹⁾
- 입국제한 지역으로부터 귀국하는 미국인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가 지정한 13개의 공항 중 한 곳으로 입국하여야 하며, 14일간 자가 격리(Self-quarantine) 조치를 취해야 함⁴²⁾

나. 일본

- (긴급사태 선포)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신규 감염자가 하루 최대 514명을 기록하고, 감염 경로 파악이 되지 않는 등 지역 감염이 확산됨에 따라 2020년 4월 7일 1차 긴급사태를 선포함
 - 1차 긴급사태는 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이며, 단체장은 지역 주민에게 외출 자제 요청과 각종 시설 사용 중단 등을 지시할 수 있음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의 전국 확산으로 의료체계 붕괴가 우려됨에 따라 전국 47개 광역자치단체로 확대하는 제2차 긴급사태를 2020년 4월 16일 선포함⁴³⁾

다. 중국

- (봉쇄방역) 2020년 1월 20일 중국 중앙정부는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 중 ‘을류’ 감염병으로 지정하였으나 ‘갑류’ 감염병 수준의 대응 조치를 채택함⁴⁴⁾
 - 중국의 법정감염병 중 ‘을류’ 감염병은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에 해당되며, ‘갑류’ 감염병은 흑사병과 콜레라에 해당됨

41) Travel.State.Gov(2020. 3. 31), “Global Level 4 Health Advisory - Do Not Travel”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traveladvisories/ea/travel-advisory-alert-global-level-4-health-advisory-issue.html>)

42) Department of Homeland and Security Press Release(2020. 3. 13),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utlines New Process for Americans Returning from Certain European Countries, China, and Iran” (<https://www.dhs.gov/news/2020/03/17/fact-sheet-dhs-notice-arrival-restrictions-china-iran-and-certain-countries-europe>)

43) <https://corona.go.jp/>

44) 中国政府网(2020. 1), “中华人民共和国国家卫生健康委员会公告”

- ‘갑류’ 감염병 수준의 대응은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조치이며, 정부가 모든 단계에서 격리 치료와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환자가 치료를 거부하면 경찰이 강제할 수 있고 공공 장소에서 검문도 가능함
- 이번의 코로나19를 ‘을류’ 감염병으로 지정하고 ‘갑류’ 감염병으로 대응하는 방식은 2003년 사스 사태 당시 중국 정부가 채택했던 방식과 같음

■ 2020년 1월 23일부터 31개 중국 지방정부는 잇달아 코로나19 비상대응 등급을 1급 중대 돌발 공공위생사건으로 지정해 사실상 전국적으로 봉쇄 조치를 시행함⁴⁵⁾

- 중국의 ‘국가 돌발 공공사건 긴급대처방안’은 돌발 공공사건 등급을 4개로 구분하고 있는데 1급은 가장 높은 등급임
- 봉쇄 조치는 대중교통 운행 중단, 지역 사회 봉쇄, 각종 모임 중단, 사람 이동 제한, 휴업 및 휴교 등을 포함함

■ (연휴 연장 및 개학 연기) 2020년 1월 26일 중국 중앙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춘절 연휴 연장, 개학 연기를 발표함⁴⁶⁾

- 기존 1월 30일까지였던 춘절 연휴를 2월 2일까지 연장했으며 개학 시기를 미루고 코로나19 방역 상황에 따라 개학 시기를 결정할 것이라고 발표함
- 대부분 지방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의 실제 현지 상황을 고려해 춘절 연휴를 2월 9일까지 추가로 연장함⁴⁷⁾
 - 특히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정부는 춘절 연휴를 2월 13일까지 연장함

■ (생활방역)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2020년 2월 23일부터 전국 31개 지역 가운데 27개 지방정부는 비상대응 등급을 하향 조정함⁴⁸⁾

- 이들 지방정부가 잇달아 대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은 코로나19 상황 호전 외에도 중국 중앙정부의 태도를 반영한 것으로 분석됨
 - 2월 23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 정상화를 위해 지역에 따라 대응 수준을 나

45)环球网(2020. 1), “全国所有省市自治区启动一级响应”

46)中国政府网(2020. 1), “国务院办公厅关于延长2020年春节假期的通知”

47) 券商中国(2020. 2), “金融类机构今起上班, 有29省发布延迟开工通知, 来看具体时间安排”

48) 健康时报(2020. 4), “全国调整应急响应级别, 这四个省市为何还是一级响应?”

뉘 단계적으로 조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함

- 27개 지역 가운데 6개 지역은 대응 등급을 2급으로 낮췄으며, 19개 지역에서는 3급으로 내렸고 2개 지역에서는 한꺼번에 4급으로 내리기도 함
- 후베이성은 코로나19 확산의 진원지이고 베이징시, 톈진시 및 허베이성은 한국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코로나19 대응 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비상대응 등급이 하향 조정됨에 따라 봉쇄 방역 체제가 생활 방역 체제로 전환되면서 각 지방정부는 사람 이동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설치된 ‘건강코드 앱’을 적극 활용하기로 함⁴⁹⁾

- ‘건강코드 앱’ 이용자는 개인정보와 여행 이력 등을 입력해 빨간색, 노란색, 녹색 코드를 부여받는데 빨간색과 노란색은 각각 14일과 7일의 자가격리 대상자를, 녹색은 이동이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함
- ‘건강코드 앱’은 처음에 저장성 항저우에서 먼저 보급됐으며, 현재 중국 전역으로 확산돼 200여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중국 정부는 경제활동 재개 과정에서 사업장과 공공장소의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대응 매뉴얼을 발표함⁵⁰⁾

- 동 대응 매뉴얼은 사무실, 마트, 터미널 및 교통수단, 학교, 공장, 요양원, 감옥, 아동복지센터, 병원 및 동네와 같은 장소에서의 위생관리, 감염유입 및 확산 방지 방법, 의심환자 또는 확진 환자 발견 시의 대응 방법 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함

■ (해외 유입 방역) 2020년 3월 26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최대한 억제하는 조치를 발표함

- 중국 외교부는 기존에 유효한 비자와 거류허가를 가진 외국인이 28일부터 입국할 수 없다고 밝혔음⁵¹⁾
 - 외교와 공무 비자 소지자들은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지 않음

49) 新京报(2020. 4), “各地“绿码”可否全国通行? 关于健康码这些问题得了解”

50) 中国政府网(2020. 2), “关于依法科学精准做好新冠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51) 外交部(2020. 3), “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国家移民管理局关于暂时停止持有有效中国签证、居留许可的外国人入境的公告”

- 중국 민항국은 외국 항공사는 29일부터 중국 노선을 한 개만 운영할 수 있고 매주 한 차례만 운항할 수 있다고 밝혔음⁵²⁾
 - 중국 항공사도 국가마다 한 개 노선만 운항할 수 있으며, 운항 횟수가 주 1회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대만

■ (해외 유입 방역) 2019년 12월 31일 대만 정부는 중국 및 세계보건기구에서 코로나19 관련 통보를 받았으며, 그때부터 중국 우한발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함⁵³⁾

- 2020년 1월 15일 대만 질병관제서는 코로나19를 법정감염병으로 분류시키면서 코로나19에 대한 감시 및 방역 수준을 한층 높임
 - 1월 20일 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중앙감염병지위센터를 설립함
- 1월 21일 중국 우한 입국자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를 발견하면서 중국 우한에 대한 여행경보를 최고 등급인 3급으로 상향 조정함
 - 앞서 1월 7일, 16일에 각각 여행경보를 1급 및 2급으로 조정한 바 있으며, 1월 28일 중국 전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3급으로 조정함
- 1월 23일 중국에서 우한에 대한 봉쇄 조치가 실시되면서 대만 정부는 감염병 방역 등급을 2급으로 상향 조정함
- 2월 6일부터 중국 본토, 마카오 및 홍콩을 감염병 오염지역으로 분류시켜 중국인의 대만 입국을 금지했으며 2월 10일부터 중국 본토, 마카오 및 홍콩을 경유한 입국자를 대상으로 14일의 자가격리를 실시함
 - 또한 2월 10일부터 대만과 중국 본토 사이에 운영되는 항공 노선을 4개로 축소함

■ 2020년 2월 14일부터 대만 정부는 잇달아 중국 본토, 마카오 및 홍콩 외의 일본, 한국, 이란,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페인, 영국, 미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발령하는 동시에 이들 나라에서 입국한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을 실시함⁵⁴⁾

52) 民航局(2020. 3), “民航局：每家航司往返中国和任一国家航线只保留1条每周最多1班”

53)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19. 12), “因應中國大陸武漢發生肺炎疫情，疾管署持續落實邊境檢疫及執行武漢入境班機之登機檢疫”

- 코로나19가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3월 20일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모든 여행객을 대상으로 14일간의 자가격리를 실시했으며, 3월 24일부터 대만을 경유하는 외국인의 환승을 금지함

■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4월 1일 대만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발표함⁵⁴⁾

- 전시회, 스포츠경기, 콘서트 등 근거리에서 밀접 접촉이 불가피한 사교활동 자제를 요청하며 참석이 불가피할 경우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일반적으로 실내에서 사람 간 1.5m, 실외에서 사람 간 1m 거리를 유지해야 하며 노래방과 같은 밀집된 공간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식당, 학교, 사무실 및 회의실, 대중교통(택시 포함), 매장이나 기타 사업장, 감옥과 같은 특수기관, 종교시설, 오락시설과 같은 특수시설을 대상으로 대응매뉴얼을 발표함
 -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접촉하는 직원은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함
- 한편, 4월 9일부터 국민의 건강을 고려해 호텔 및 클럽의 영업을 금지함⁵⁶⁾

■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2020년 5월 6일 대만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지만 호텔과 클럽의 영업 금지를 유지함⁵⁷⁾

- 마스크를 안 쓰고 외출하는 경우 실내에서 사람 간 1.5m, 실외에서 1m 거리를 유지하도록 권고함

마. 유럽

■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 국가별 경제적 폐쇄 조치 후 2020년 5월부터 완화되는 추세이며, 특히 스페인의 경우 각 단계가 최소 2주 이상 유지되는 4단계의 점진적인 전환 계획을 발표함

54)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最新消息及疫情訊息, 新聞稿(2020년 5월 11일 기준 자료임)
 55)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4), “「COVID-19(武漢肺炎)」因應指引：社交距離注意事項”
 56)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4), “全國酒店和舞廳, 自9日起停止營業”
 57)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4), “「COVID-19(武漢肺炎)」因應指引：社交距離注意事項”

- 0단계(5월 4일~) : 준비단계. 운동 및 산책을 위해 외출 가능, 프로 운동선수의 개인훈련, 소규모 예약 가능 식당 및 미용실 오픈 가능
- 1단계(5월 10일~) : 지역 간 이동은 6월 말까지 금지되나 지역 내 이동 가능.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10인 이하의 모임, 야외 카페(수용인원 30% 제한), 호텔(공동 구역 제외, Except Common Areas) 및 종교 시설(수용인원 30% 제한) 개방. 대중교통량 80% 예상
- 2단계(1단계 이후 최소 2주) : 술집과 레스토랑의 내부 좌석, 영화관, 극장, 주요 기념관 및 전시장(수용인원 30% 제한) 오픈, 콘서트 등의 문화 행사(수용인원 1/3 제한), 야외 행사의 경우 착석 가능한 경우 최대 400명까지 가능. 장애인 방문 가능, 노인 방문 불가능. 학교는 9월까지 폐쇄하나, 부모의 출근으로 요구가 있는 경우 6세 이하 어린이들에게 수업 제공 예정. 오락공간을 제외한 쇼핑 센터 오픈
- 3단계(2단계 이후 최소 2주 후, 6월 중순) : 이동제한 완화. 노인 가정(조건 미정), 오픈 바, 영화관 및 극장(수용인원 50% 제한) 방문 가능. 쇼핑객의 상점 입장 가능(수용인원 50% 제한, 사회적 거리 2미터 유지)
- 4단계(새로운 정상화 단계, 6월 말 가능성) : 사회적, 경제적 제약 종식. 지역 간 이동 가능. 대중교통량 100% 예상

■ (여행 금지 및 제한) 2020년 3월부터 대부분 국가가 국경 간 이동을 제한하거나, 국경을 개방하더라도 지역 간, 지역 내부 이동을 제한하였으며, 상황이 심각한 국가의 경우 5월까지 제한 조치를 연장함

■ (학교 및 대학 폐쇄) 2020년 3월부터 대부분의 국가에서 학교의 휴교 조치가 시행되었으며, 예외적으로 주요 근로자(영국) 및 의료진(프랑스) 자녀의 경우 교육을 제공하기도 함

- 프랑스와 독일의 경우 5월부터 일부 수업을 재개하고 점진적으로 개방하겠다는 방침이나, 스페인의 경우 원칙적으로 9월까지 휴교 조치를 유지하며 다만 4월 28일 발표된 점진적 전환 계획에 따라 2단계에서 부모의 출근으로 인한 요구가 있는 경우 6세 이하의 조건부 수업 제공이 가능함

■ (공공행사 취소 및 공공장소 폐쇄) 5개 국가 모두 3월부터 비필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활동을 전면 중단하고 재택근무로 전환하였으며, 각종 공공행사 및 스포츠 경기, 집회나 모임을 금지함

- 영국은 필수품 구입, 운동, 의료 서비스, 취약 계층(Vulnerable Person) 지원인 경우 예외적으로 이동을 허용함
- 스페인은 음식점에 대해 배달서비스를 허용함
- 프랑스는 시의회 선거의 2차 투표를 연기함
- 독일은 4월 20일부터 조건부 소규모 상점의 개점을 허용하나 대규모 행사의 경우 8월 말까지 제한함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격리조치) 호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외여행 제한 및 금지 등의 격리조치를 취하여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함⁵⁸⁾

- (사회적 거리두기) 2020년 3월 18일 100명 이상의 실내모임과 500명 이상의 야외 모임을 금지시키고 사회적 거리두기로 사람들 간 1.5m 이상 떨어질 것을 명령함
- 호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화하며, 2020년 3월 22일 ‘1단계 폐쇄(Shutdown Stage 1)’ 조치, 3월 24일 ‘2단계 폐쇄(Shutdown Stage 2)’ 조치, 3월 30일 ‘3단계 폐쇄(Shutdown Stage 3)’ 조치를 취함
 - ‘1단계 폐쇄’로 레스토랑, 카페, 펍, 클럽, 헬스장(Gym), 실내 운동시설, 카지노, 극장, 종교시설 등이 전면 폐쇄되고 식당과 카페는 방문포장만 가능하게 됨
 - ‘2단계 폐쇄’로 푸드코트 폐쇄(포장 및 배달 허용), 10명 이상의 모임, 부동산 경매 및 오픈 하우스, 놀이공원, 오락실 등이 금지되었고, 미용실(30분 이내), 결혼식 5명, 장례식 10명 등으로 제한됨
 - ‘3단계 폐쇄’로 필수적이지 않은 모임은 2명으로 제한됨
 - 사회적 거리 두기 규정을 어기면 최소 1,000호주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함
 - 외출이 가능한 네 가지 사유는 출퇴근 및 통학(재택 근무 및 온라인 수업이 불가능한

58) 호주 총리(<https://www.pm.gov.au/media/update-coronavirus-measures-220320>;
<https://www.pm.gov.au/media/update-coronavirus-measures-24-March-2020>;
<https://www.pm.gov.au/media/statement-update-coronavirus-measures>)

경우), 식품 및 생필품 쇼핑, 동네 산책, 가벼운 운동(혼자 혹은 1명까지 허용), 병원 진료 및 방문 등이 있음

- (봉쇄정책) 각 주(州)들이 주경계를 봉쇄하고 있어 주간 이동에도 제한이 생김
- 한편, 2020년 5월 8일, 호주 정부는 신규 확진자가 감소세를 보임에 따라 각 주(州)의 실정에 맞게 2020년 7월까지 3단계에 걸쳐 폐쇄 조치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기로 발표함⁵⁹⁾
 - 1단계 완화로는 10명까지 집, 비즈니스, 공공장소 모임을 허용하고, 도서관, 커뮤니티센터, 지역 내 여행, 소매 상점, 소형 카페와 식당 영업을 허용하며 장례식 참석 인원 30명 및 결혼식 10명 미만 등으로 허용함
 - 2단계 집, 비즈니스, 공공장소 모임 인원을 2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극장, 갤러리, 캠핑장, 커뮤니티 스포츠, 다른 주 여행을 부분 허용함
 - 3단계 모임 인원을 최대 100명 미만으로 허용하고 펍 및 클럽 부분 제한 조치가 해제되고, 푸드 코트, 사우나, 다른 주 여행을 전면 허용함
 - 이 단계에서는 직장으로 복귀해도 되며, 해외 여행은 호주-뉴질랜드, 남태평양 도서국 허용을 검토하고 유학생 출국 허용도 검토함
- (여행제한 및 금지) 호주 정부는 점진적으로 해외여행 및 입국제한 조치를 취함
 - 3월 15일, 해외 입국자 14일 자가격리가 발표되었고, 해외에서 출발한 크루즈선의 입국도 금지됨
 - 3월 18일, 호주인의 해외여행 금지를 권고하였고, 19일 호주 시민권자, 영주권자와 그 직계가족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함
 - 3월 24일, 호주 정부가 여행 경보를 4단계로 상향 조정함에 따라, 모든 호주인은 해외여행이 금지됨

2) 싱가포르

- (격리조치) 2020년 4월 3일 싱가포르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Circuit Breaker)’발표에 따라 필수 분야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하고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함

59) 호주 정부, “Roadmap to a COVIDSafe Australia, A three-step pathway for easing restrictions”

- 4월 7일부터 필수 서비스·경제 분야를 제외한 사업장은 임시 폐쇄 후, 모두 재택근무를 시행함
 - 필수 분야로는 보건, 에너지, 대중교통 및 물류, 치안 및 핵심 인프라 관리, 은행·금융·보험, 식품소매(방문포장만 가능), 슈퍼마켓, 시장 등 및 배달, 쓰레기 폐기 및 수자원 관리, 통신, 제약 및 바이오, 전기공, 배관공, 차량 수리, 글로벌 공급망 등임
 - 4월 8일~5월 4일 초·중·고 및 고등 교육기관은 가정에서 온라인 수업 체제로 전환하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도 임시 폐쇄함
 - 한편, 필수분야 종사 등으로 인해 대체 육아수단이 없는 부모 등을 위해서 오프라인 수업을 제한적으로 운영함
- 2020년 5월 2일 싱가포르 정부는 서킷 브레이커 조치 일부를 완화하기로 발표함
- 5월 12일부터 재택 식품사업(Home-based Food Businesses)의 비대면 배달과 수거를 허용하고 이발소, 세탁소 운영도 허용됨
 - 케이크 및 제과, 포장된 스낵과 디저트 등의 식품점은 포장 및 배달만 가능함
- 2020년 5월 19일 싱가포르 정부는 6월 1일 서킷 브레이커 조치를 종료하고 6월 2일부터 3단계에 걸쳐 경제활동을 재개하기로 발표함
- 1단계 조치로 반도체 및 공학 관련 생산 업체, 재무와 보험, 도매, 수송 등 대중과 접촉하지 않는 업체들은 6월 2일부터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음
 - 서킷 브레이커 기간 금지된 예배나 미사, 불공 등의 종교 행위도 허용되지만, 집단 모임은 허용되지 않음
 - 5월 19일부터 일부 졸업반 학생들은 등교하였고, 나머지 학년은 온라인 수업과 등교를 격주로 번갈아 가면서 진행할 예정임
 - 싱가포르 정부는 1단계 조치는 몇 주간 진행될 예정이며, 지역감염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기숙사 이주노동자 감염도 관리 가능한 상태를 보이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II. 각국 정부 대응

1. 경제 지원

가. 미국

■ (긴급자금) 미국은 지난 3, 4월 동안 코로나19에 대응하고 그 여파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5건의 입법을 완료하고, 3조 달러 이상의 긴급자금을 지원함

○ 『Coronavirus Preparedness and Response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2020』(2020. 3. 6)¹⁾

- 코로나19 백신 및 기타 의료용품 개발, 주 및 지역 공공보건기관 및 조직에 대한 지원, 코로나19 영향을 받는 소기업에 대한 대출 등에 총 83억 달러의 긴급자금을 지원함

○ 『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FFCRA)』(2020. 3. 18)²⁾

- (무료검사) 코로나19 무료검사 실시를 위한 자금을 지원함

- (식량지원)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학교 5일 이상 연속 휴교 시 비상 식량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함

- (유급병가·휴가 제공) 코로나19로 자가격리 혹은 일할 수 없는 직원을 대상으로 10일간의 유급병가 제공,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12주의 유급휴가를 제공함

○ 『Coronavirus Aid, Relief, and Economic Security Act, CARES Act』(2020. 3. 27)³⁾

- 개인과 가족 긴급재난소득 지원, 실업급여 추가 지원, 중소기업 소득보호대출 지원, 항공산업에 320억 달러의 자금 지원 등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한 총 2조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추진함

1)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074>

2)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201>

3)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748>

- 『Paycheck Protection Program and Health Care Enhancement Act』(2020. 4. 24)⁴⁾
 - 제공 기관 및 코로나19 검사 역량 확대를 위한 추가 자금 제공, 중소기업 소득보호 대출 지원 확대 등 총 약 1,620억 원의 추가 자금을 지원함
- 『Student Veteran Coronavirus Response Act of 2020』(2020. 4. 28)⁵⁾
 - 대학교 및 대학교 캠퍼스에서 실무 연구(Work-Study)를 직업으로 가진 재향군인들을 대상으로 생계를 지원함

■ 뉴욕주 금융청은 2020년 3월 24일, 긴급 규제(Emergency Regulation)를 실행하여 뉴욕주 금융기관에게 코로나19로 곤경에 처한 주민들 대상 금융 지원을 요청함

- 90일의 기간 모기지 지불 유예기간 제공, 은행 ATM 수수료 면제, 마이너스 통장 잔고에 대한 수수료(Overdraft Fee) 면제, 신용카드 연체 수수료 면제 등을 요청함⁶⁾

■ 뉴욕주 금융청은 2020년 4월 7일, CARES 법안의 사각지대에 놓인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 대해서 최소 90일간의 지불 유예, 연체 수수료 면제, 채권추심소송 90일간 중지 등의 금융 지원을 뉴욕주 금융기관에 요청함⁷⁾

- CARES 법에 따라 연방정부 학자금 대출 대상자에게는 학자금 대출 상환 연기 등의 금융 지원을 제공하였지만, 이 외의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대상들은 사각지대에 놓임

■ (통화정책) 미 연준(Federal Reserve System)은 코로나19 극복을 목적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하여 제로금리 수준을 달성하였고, 이후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언하고 유동성을 공급함

- 2020년 3월 3일, 미 연준은 긴급 FOMC 임시회의에서 코로나19 리스크 확대를 감안해 기준금리를 연 1.00~1.25%로 1%p 인하함
- 2020년 3월 15일, 미 연준은 FOMC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연 0.00~0.25%로 1.0%p 인하하고, 경제가 정상화될 때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할 것을 선언함

4)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266>

5) <https://www.congress.gov/bill/116th-congress/house-bill/6322>

6) https://dfs.ny.gov/reports_and_publications/press_releases/pr202003241

7) https://dfs.ny.gov/press_releases/pr202004072

- 7,000억 달러 규모의 국채 및 주택대출담보증권(MBS: Mortgage Backed Security) 매입 계획도 함께 발표함
- 2020년 3월 23일, 미 연준은 국채 및 MBS 매입을 지속할 것을 발표하여 사실상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시작됨

나. 일본

- (긴급 경제대책)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산업보호 및 긴급 생활 안정을 위하여 117조 엔 규모의 긴급 경제대책을 포함한 수정예산안을 2020년 4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⁸⁾
 - (중소·소규모 사업자 지원금) 전년도 대비 수입이 5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자, 개인사업자(프리랜서 포함)에게 최대 200만 엔을 지급함
 - (세제우대 조치 등) 코로나19 영향으로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중소기업에게 납부를 1년간 유예함
 - (관광, 식당, 이벤트 사업 지원) 코로나19 사태 종식 후 국내 여행 비용의 절반을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함
 - (고용조정기금) 사업 운영이 곤란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일시 휴업 및 교육훈련을 실시할 경우 휴업 수당 및 임금액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기금제도를 조성함
 - (지역경제 지원) 지방활성화교부금을 신설하여 지자체가 지역 실정에 부합한 필요 사업에 지원함
 - (의료 지원) 인공호흡기 및 인공 심폐 장치 확보, 의료기관에 마스크 및 방호복 우선 배포, 코로나19 치료제(아비간) 200만 명분을 확보함
- 일본 경제산업성은 코로나19 긴급 경제대책(2020년 4월 7일)의 후속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이자·무담보 대출제도를 신설함⁹⁾
 - (대출 자격) 소득이 감소한 중소기업 또는 프리랜서를 포함한 자영업자

8) 東京新聞(2020. 4. 22), “生活困窮、相談を緊急事態宣言2週間・経済打撃”

9) 経済産業省 News Release(2020. 5. 4)

- (대출 혜택) 대출액이 15% 감소한 중소기업에게 보증보험료 면제와 실질 무이자 대출(대출액 5% 감소 시 보증보험료 50% 감면) 제공, 자영업자의 경우 보증보험료 면제, 무이자 대출을 제공함
- (대출 조건) 대출한도액 3천만 엔, 대출기간 10년(거치기간 5년), 무이자·무담보기간 3년임
- (무이자·무담보 부담 주체) 신용보증제도가 전액 보증하고, 지방자치단체가 대출 이자를 부담함

■ (정책금융) 일본 정부는 정책금융의 일환으로 일본 코로나19에 따른 휴업·휴직으로 소득이 감소한 가계의 생계유지를 위하여 무이자 소액용자금을 신설함

- (무이자 대출) 생활이 곤란한 가구가 가계대출 시 1인 가구 최대 65만 엔(2인 가구 80만 엔)을 용자받을 수 있도록 긴급소액용자금을 신설함
- (대출 조건) 대출기간은 3~12개월, 월 대출금은 1인 가구 최대 15만 엔(2인 가구 20만 엔), 상환기간은 10년 이내, 무이자 무담보임

■ 일본 금융청의 코로나19 긴급사태 선포에 따른 후속조치로 다음의 조치를 각 금융기관에 요청함

- (공시자료 제출 연장) 코로나19에 따른 사정으로 기한내 금융상품거래법에 의거한 유가증권보고서, 사분기보고서, 반기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사전 승인하에 제출기한을 연장함
- (보험회사 핫라인 구축) 보험회사를 포함한 금융기관에게 코로나19 관련 질의에 관해 소비자 핫라인 구축을 2020년 2월 28일 요청함
- (재택근무 요청) 정부의 긴급사태 선포(2020년 4월 7일)에 따라 출근 근무자 70% 감축을 보험회사를 포함한 각 금융기관에 요청함¹⁰⁾
- (고용유지 요청)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 후속조치로 무기계약직 근로자, 파트타임 근로자, 파견직 근로자, 취업 내정자 등의 고용유지를 각 금융단체에 요청함¹¹⁾

10)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3)

11)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7)

다. 중국

■ (인민은행) 중국 인민은행은 통화정책을 이용해 방역 관련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경감 및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섬

○ 코로나19 방역과 관련된 의료물자 생산기업, 생필품 생산기업, 운송 및 판매 기업의 자금난 해결을 위해 2020년 2월 3일 3,000억 위안의 재대출(상업은행에 대한 중앙은행의 대출)을 공급함¹²⁾

- 또한 중소기업의 조업 재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해 2월 26일 및 4월 10일에 각각 5,000억 위안 및 1조 위안의 재대출을 추가로 제공하기로 함

○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월 20일 및 4월 10일에 각각 한 차례씩 총 두 차례에 걸쳐 기업 대출금리 산정의 기초가 되는 대출우대금리를 인하함¹³⁾

- 1년 및 5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각각 기존의 4.15%, 4.80%에서 3.85%, 4.65%로 인하함

○ 시중 유동성 공급 확대를 위해서 3월 16일 포용적 금융(Inclusive Finance)¹⁴⁾ 기준을 충족하는 은행의 지급준비율을 0.5~1.0%p 내렸으며, 4월 3일 중소기업의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1.0%p 인하를 결정함¹⁵⁾

- 포용금융 기준¹⁶⁾을 충족하는 주식상업은행(Joint-stock Commercial Bank)의 지급준비율을 1.0%p 추가로 인하함

■ (은보감회) 은보감회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 완화를 위해 피해 기업 및 개인을 대상으로 일련의 맞춤형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함¹⁷⁾

○ 2020년 1월 26일 코로나19 동안 방역 관련 특정 기업에 대한 용자 제공, 원활한 금융 서비스 보장, 피해기업에 대한 대출중단 금지, 피해지역의 금융편의 제공을 포함한 금융 서비스 강화를 요구함¹⁸⁾

12) 凤凰网(4), “央行: 3000亿专项再贷款接近收官1万亿再贷款再贴现将惠及逾200万中小企业”

13) 新华社(2020. 4), “4月LPR报价“双降” 市场预计未来仍存降准空间”

14) 포용적 금융은 저소득계층, 영세중소기업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합리적인 비용으로 광범위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15) 北京日报(2020. 4), “央行定向降准1个百分点释放长期资金4000亿元”

16) 포용금융 기준과 관련된 구체적 내용은 중국 인민은행이 발표한 “央行调整普惠金融定向降准考核标准”를 참조함

17) 中国政府网(2020. 2), “国务院联防联控机制: 用好已有金融支持政策 精准支持疫情防控和复工复产”

18)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的通知”

- 2월 1일 피해지역, 피해산업 및 피해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피해고객에 대한 여신 지원 제공, 온라인 금융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함 금융서비스 강화를 금융기관에 재차 요구함¹⁹⁾
- 2월 15일 기업의 조업 재개에 대한 지원, 과학기술을 활용한 금융서비스 혁신, 사회적 책임 실천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서비스 개선을 금융기관에 요구함²⁰⁾
- 3월 1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원리금 상환기간 연기, 신규용자 확대, 온라인 등 다양한 채널 개통을 금융기관에 요구함²¹⁾

라. 대만

■ (경기부양책) 2020년 2월 25일부터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총 1조 500억 대만 달러의 경기부양책을 시행함²²⁾

- 이번에 발표된 경기부양책 규모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특별예산(2,100억 대만 달러), 원래 정부기관이 보유한 예산 및 운용한 기금(1,400억 대만 달러), 이번에 신설된 신용대출한도(7,000억 대만 달러)를 포함함
- 이번 경기부양은 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노동자에 대한 지원, 세제 지원 및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에 집중되어 있음
 - 금융지원은 기업 조업 재개에 필요한 대출, 중소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출의 이자에 대한 보상, 중소기업의 대출 이자를 감면하는 은행에 대한 보상 등을 포함함
 - 노동자에 대한 지원은 노동시간 단축에 대한 보상, 실업자에 대한 지원, 노동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음
 - 세제 지원은 영업세, 소득세, 영업용 부동산세, 영업용 자동차세, 정부 보조금에 대한 세금 면제 등이 있음
 - 수도요금과 전기요금 감면은 영업이 어려운 기업의 수도요금 5% 할인, 서비스업과

19)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人民银行·财政部·银保监会·证监会·外汇局关于进一步强化金融支持防控新型冠状病毒感染肺炎疫情的通知”

20)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21)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3), “银保监会·人民银行发展改革委·工业和信息化部·财政部联合发布《关于对中小微企业贷款实施临时性延期还本付息的通知》”

22) 行政院(2020. 4), “因應武漢肺炎衝擊 共通性及各產業紓困振興措施”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10% 할인 및 대기업 전기요금 중의 수수료 면제를 포함함

■ (개인채무자 지원책)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은행에게 코로나19로 채무상환이 어려워진 개인채무자에게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을 유예하도록 명령함²³⁾

○ 채무 상환 유예 대상은 주택 대출, 자동차 대출, 소비 대출, 신용카드 대출 및 기타 개인 대출이 있으며, 대출원금과 이자 상환의 유예 기간은 3~6개월로 책정됨

- 개인 채무 상환 유예 기간의 위약금 및 지연이자는 면제됨

- 개인 채무 상환 유예 신청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임

■ (중소기업의 대출 조건 완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재무제표가 없어서 대출을 못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대출 조건을 완화함²⁴⁾

○ 부동산담보 및 연대보증인이 없고 법정영수증을 사용하지 않아도 납세증명서가 있고 신용평가가 정상인 중소기업은 1% 이하의 금리로 최고 50만 대만 달러의 대출을 받을 수 있음

■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원활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무실과 점포 소독, 부서별 재택근무, 사이버사기 예방을 주문함²⁵⁾

○ 또한 고객 안전을 위해 은행이나 보험회사에게 점포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체온 및 마스크 착용을 확인하고, 체온이 이상하거나 마스크 미착용 고객의 출입 금지를 권고함²⁶⁾

23)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5), “個人受疫情衝擊者貸款至年底前可申請展延”

24)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金管會說明小規模營業人貸款的特色”

25)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2), “請周邊單位加強防疫措施以達營運不中斷目的”

26)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為防疫所需, 自4月20日起進入銀行營業場所, 倘有體溫過高情形或未配戴口罩者, 不得進入”;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5), “為防治控制嚴重特殊傳染性肺炎疫情所需, 進入保險公司營業場所, 應配合實施量測體溫並應佩戴口罩, 倘有體溫過高情形或未佩戴口罩者, 不得進入”

■ (보조금 지급)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 사람, 의료기관 의료진, 의료기관, 숙박업체,²⁷⁾ 제약업체, 사회복지 사업자, 돌봄서비스업체²⁸⁾ 및 자연치유 서비스업체²⁹⁾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함³⁰⁾

○ (일반인) 코로나19 방역으로 격리대상자, 검역대상자에게³¹⁾ 매일 1인당 1,000대만 달러를 지급함

- 다만 격리나 검역 기간 동안 급여나 비슷한 보조금을 수령하는 사람, 코로나19 방역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2020년 3월 17일 이후 3급 여행경보로 지정된 국가나 지역에서 입국한 사람이 격리되거나 검역을 받는 경우는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됨

○ (의료기관 의료진) 2020년 2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외여행 취소로 발생한 비용손실을 보상하며,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하는 의료진에게 매달 1인당 1만 대만 달러의 수당을 지급함

○ (의료기관)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의료기관, 영업을 어려운 의료기관의 영업손실의 일부를 보상하며, 코로나19 검역업무가 우수한 의료기관에게 보너스를 지급함

- 영업을 어려운 의료기관은 영업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6개월 연속 15% 이상 감소하거나 3개월 연속 30% 이상 감소한 기관을 의미함

- 코로나19 검역 건수나 위험정도에 따라 의료기관에게 보너스를 지급하지만, 대부분은 일선에서 일하는 의료진에게 지급해야 함

○ (숙박업체) 코로나19로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숙박업체, 영업을 어려운 숙박업체의 영업손실 일부를 보상함

- 영업을 어려운 숙박업체는 2020년 1월 15일 이후부터 영업수익이 3개월 이상, 15% 이상 감소한 것을 의미함

-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숙박업체의 인건비와 운영비, 영업을 어려운 숙박업체의 대출금 이자만을 보상함

27) 숙박업체는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체 가옥, 노인복지기관, 유아보육기관, 장애인 복지기관을 포함함

28) 돌봄서비스업체는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장기요양기관, 장애인 일간 돌봄 서비스 업체, 장애인 가정식 돌봄 서비스 업체, 2세 미만 아동의 보육기관 및 아동과 청소년 돌봄 업체가 있음

29) 자연치유서비스는 차나 요법, 발마사지, 경락마사지 및 스포츠마사지를 포함함

30) 衛生福利部, 嚴重特殊傳染性肺炎專區, 紓困補償措施

31) 격리나 검역대상자가 장애인 또는 노약자인 경우 이를 돌보는 사람에게도 보조금을 지급함

- (제약업체) 코로나19로 인한 원료나 한약재 공급 부족이 발생한 제약업체에게 최고 200만 대만 달러를 지급함
- (사회복지 사업자) 영업이 어려운 사회복지 사업자에게 최고 3개월의 추가근무수당, 운영비, 대출 이자를 지급함
 - 사회복지 사업자는 사회복지단체, 재활지원 버스운송업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익 법률사무소, 장기요양기관에게 셔틀버스 및 음식 제공업체를 포함함
- (돌봄서비스업체) 영업정지 명령을 받는 업체에게 인건비 및 운영비를 지급하며, 영업이 어려운 업체에게 대출금의 이자만을 지급함
- (자연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추나요법, 마사지, 발마사지 및 경락마사지를 제공하는 자연치유 서비스 업체에게 최고 3만 대만 달러를 지급함

마. 유럽

- (사회적 안정 조치) 코로나19 관련 조치로 의료장비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거나 사업상의 금지 규정을 완화하는 등 사회적 안정을 위한 조치들이 도입됨
 - 영국은 중요 의료용품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인공호흡기, 테스트키트, 보호장비 등에 대한 EU 외 수입에 대해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면제함
 - 영국 경쟁 당국(Competition Authorities)은 데이터 및 유통 창고 공유를 위해 슈퍼마켓 간 협업 금지 규정을 완화함

〈표 1〉 유럽 국가 산업전반 대응 정책 및 제도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사회적 거리두기 및 격리 조치 ((Quarantine /Confinement))	· 3. 23 경제 전반 폐쇄	· 5. 4 완화 조치 발효	· 3. 15~5. 10 전국적 락다운(Lockdown) 조치 · 5. 24까지 연장 · 4단계 점진적 전환 계획 발표(4. 28) · 14세 이하 어린이 이동 제한 완화(4. 27)	· 3. 17 낮 12시 기준 봉쇄 조치 시행 · 5. 11까지 연장 · 필수활동 제외 외출 제한 · 노인 포함 위험집단 자가격리 권고	· 3. 22~4. 15 2인 이상모임 금지 · 5. 4까지 연장 · Bavaria, Saarland, Saxony 더 엄격한 봉쇄 조치 도입

〈표 1〉 계속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27부터 모든 상점 및 대중교통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여행 금지 및 제한 (Travel Bans /Restriction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경은 개방 · 관광객 자국 복귀 권고 · 30일간 시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23~4. 10 엄격 제한 · 5. 2까지 연장 · 거주 중인 자방(Municipality) 외 이동 금지 · 외국인 및 거주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입국 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페인 시민, 거주민, 육상 운송을 제외한 육상 경계 폐쇄(3. 16) · 3. 23부터 30일간 공항 및 항구 폐쇄(4. 21~5. 15까지 연장) · 스페인 국민 및 거주자를 수송하는 항공편을 제외한 이탈리아 직항편 운항 금지(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간, 국가 외 이동 제한 · 장거리 운송 감소 추세 · EU 및 Schengen 국경 폐쇄 (30일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6부터 Schengen 국경 통제 · 4. 10부터 입국자는 자가격리 필수 · 3. 18부터 EU 외부로부터 개인 입국 금지(최소 30일간)
학교 및 대학 폐쇄 (Closure of Schools/ Universit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6 시행 · 주요 근로자 자녀 예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4~4. 3까지 · 4. 14까지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2부터 전국 휴교 · 9월까지 개학하지 않으나 2단계부터 조건부 수업 제공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진 자녀 제외 모든 교육기관 폐쇄 · 5. 11부터 점진적 개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초까지 폐쇄 · 5. 4부터 일부 수업 재개
공공행사 취소 및 공공장소 폐쇄 (Cancellation of Public Events / Closure of Public Plac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거리 강조 · 행사 및 모임 금지 · 재택 불가능한 경우에만 출퇴근 허용 · 필수품 구입, 운동, 의료 서비스, 취약 계층(Vulnerable Person)을 돕기 위한 이동 허용 · 3. 23 비필수산업(학교, 카페, 술집, 식당, 영화관, 체육관, 상점 등) 폐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0~4. 14 술집, 음식점, 기타 소매업 폐쇄 · 스포츠경기 및 집회 금지 · 3. 23 생활활동 중지 · 필수사업 외 산업 및 상업 활동 금지 · 3. 26 추가 제한 · 4. 3~4. 30 스포츠, 술집, 유사활동 금지(3.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26 호텔 폐쇄 · 3. 30~4. 9 비필수산업 전면 중단 · 식품 및 필수품 판매 상점 제외 모든 소매점 폐쇄 · 음식점 폐쇄 및 음식 배달 서비스만 유지 · 박물관, 도서관, 공공 공연장(영화관 및 극장) 폐쇄 · 스포츠 행사 및 지역 행사 중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개회의 금지 · 필수사업 외 공공사업 및 기업 폐쇄 · 기업 및 행정부는 원격 수행 가능한 모든 업무에 대해 재택근무 적용 · 시의회선거 (Municipal Elections)의 2차 투표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 15 비필수산업 및 상점, 레저, 문화 시설 폐쇄 · 대규모 행사의 경우 8월 말까지 제한 · 4. 20 엄격한 조건하에서 (800㎡ 이하 소규모) 점포 및 서점, 자동차 대리점, 자전거 매장 등 오픈 가능

〈표 1〉 계속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요 의료용품 수입에 대한 관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3. 31) · 슈퍼마켓 간 협업 금지 규정을 완화(3. 20) 	-	-	-	-

주: 1) ()안의 숫자는 정책이 발표된 날짜임

2) 재정 및 통화 정책 관련 자료는 영국 2020. 4. 25, 이탈리아 2020. 5. 4, 스페인 2020. 5. 6, 프랑스 2020. 4. 25, 독일 2020. 4. 23 기준 자료임

3) 직장 및 사회 정책 관련 자료는 영국 2020. 4. 21, 이탈리아 2020. 4. 7, 스페인 2020. 4. 24, 프랑스 2020. 5. 4, 독일 2020. 4. 24 기준 자료임

자료: OECD, "Key country policy responses 'Country Policy Tracker"(www.oecd.org/coronavirus/en)

■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국가별로 대규모 자금 확보를 통해 국가 대출 및 보증을 제공하며, 그 외에도 대출 상황을 유예하거나 기존 제도의 확대를 통해 기업을 지원함

○ (영국) 3,300억 파운드 규모(GDP 대비 14.9%)의 임시 국가 대출 및 기업 보증 제도를 도입함

- 코로나바이러스 기업금융기능(Coronavirus Corporate Financing Facility, 2020년 3월 20일) 및 사업중단대출제도(CBILS: Coronavirus Business Interruption Loan Scheme, 2020년 3월 17일)를 포함함

○ (이탈리아)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무수수료 보장성 펀드를 17억 유로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출 상황을 9월 말까지 6개월 중단하며, 중견기업 신규 대출을 최대 100억 유로 보증함

○ (스페인) 기존 대출보증에서 임차인 대출 보증에 12억 유로를 배정하고, 임대료 6개월(최대 상환기간 10년)에 대한 0% 이자 대출 또는 임대료 납입 지원을 위한 직접 보조금(월 900유로)에 대한 보증 제도 도입 및 국가개발은행(ICO, National Development Bank)을 통한 최대 1,000억 유로의 보증을 새로 도입하였으며,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스페인수출보험 공제회(CESCE, Spanish Export Insurance Credit Company)를 통해 최대 20억 유로의 추가 보증을 지원함

○ (프랑스) 국가가 3,000억 유로의 현금 대출을 보증하고, 최대 100억 유로까지 미지급 신용보험에 대한 공공재보험 활성화로 기업활동 유지에 필요한 신용보험 유지를 지원하며, 2018년 10월 출시한 'Cap Francexport' 공공재보험 제도를 프랑스 수출기업으로 확대함

- (통화정책) 영국은 정책금리를 2020년 3월 11일, 19일 두 단계에 걸쳐 0.75%에서 0.15%로 인하하였으며, 재무부와 공동 제공하는 코로나 기업 금융 기능(CCF: Covid Corporate Financing Facility)을 통해 대출을 지원하고, 유동성 지원을 위해 정부 W&M(Ways and Means) 기능을 통해 3억 7,000만 달러를 조달하는가 하면 양적완화 및 중소기업 자금 조달 방안(TFSME: The Term Funding schem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을 제시함
- (건전성 규제) 영국은 거시건전성(Macro Prudential)정책을 도입하고, 이탈리아는 각종 요건 및 수준을 완화하였으며, 프랑스는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개방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나, 스페인은 거시건전성 감독 규제 조치가 없음
 - (영국) 2020년 3월 17일 자본 요건 완화로 경기대응 완충 자본율(The 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Rat)이 0%로 하락하여 은행이 1,900억 파운드 내외의 추가 신용 공급이 가능해졌으며, 건전성 규제 당국(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은 영국은행(BoE)의 정책적 조치에 대응하여 은행의 배당 또는 보너스 향상을 금지함
 - (이탈리아) 중요도가 낮은 은행 및 비은행 중개업자는 일시적으로 Pillar 2 지침, 손실보전 완충자본(Capital Conservation Buffer) 및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Liquidity Coverage Ratio)의 요구수준 이하로 영업을 가능하며, 개정된 부실채권(NPL: Non Performing Loan)³²⁾ 감축 계획서 제출 기한이 2020년 6월 30일로 연기되고, 기타 보고 및 감독 또한 유예됨
 - (프랑스) 프랑스 금융안정고등평의회(The French High Council for Financial Stability)는 2020년 3월 18일 은행의 경기대응 완충 자본을 완전히 개방하기로 결의하였으며, 이에 따라 중소기업을 위한 Banque de France 재융자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됨

〈표 2〉 유럽 국가 금융 정책 및 제도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민간 대출자에게 혜택을 주는 대출에 대한 국가 보증	· 3,300억 파운드 규모 임시 국가 대출 및 기업 보증 제도	· 중소기업대출 무수수료 보장성 펀드 17억 유로 확대	· 임차인 대출 보증에 12억 유로 배정 (3. 31발표) · 임대료 0% 이자 대출 또는	· 국가가 3,000억 유로의 현금 대출 보증 · 최대 100억 유로까지	-

32) 무수익여신. 금융회사의 부실대출금액과 부실지급보증금액을 합친 것으로 일반적으로 '부실여신' 또는 '부실채권'을 뜻함

〈표 2〉 계속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Loan Guarantees by the State Benefiting Private Borrower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소기업 대출상환 6개월(9월 말까지) 중단 중견기업 신규 대출 최대 100억 유로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보조금 최대 1,000억 유로의 국가개발은행 보증 수출기업 대상 스페인수출보험공제회 보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재보험 활성화 'Cap Francexport' 공공재보험 제도 확대 	
통화정책 (Monetary Policy)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금리 인하 대출 지원 유동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ECB가 설정한 통화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BaFin의 경기대응 완충 자본 조정: 0.25% → 0% 	-
건전성 감독 (Prudential regul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매크로프루덴셜 정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요도가 낮은 은행 및 비은행 중개업자의 Pillar 2 지침, 자본 보전 완충 및 유동성 보장 비율 수준 이하 영업 가능 NPL 감축 계획서 제출 기한 연기 기타 보고 및 감독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 차원의 중대 조치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대응 완충 자본 완전 개방 	-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가세 납부 연기 사용자를 위한 대규모 대출 제도 1년간 영세 소매 및 병원 등에 대한 지방세 폐지 영세기업 3,000 파운드 무조건 현금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금 납부 및 사회보장 의무 정지 및 연기 향후 9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신용보증 기금 요건 완화 피해가 큰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 자금 지원 공공보증제도 보증 확대 항공사 7억 유로 지원 리스크 평가 없이 중소기업 즉시대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요 감소 영향을 받는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 중소기업 세금 6개월 유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동성 공급을 위한 무한대 규모의 새로운 대책 도입 예정 KfW의 기업에 대한 6,100억 달러 대출 허용

주: 1) ()안의 숫자는 정책이 발표된 날짜임

2) 재정 및 통화 정책 관련 자료는 영국 2020. 4. 25, 이탈리아 2020. 5. 4, 스페인 2020. 5. 6, 프랑스 2020. 4. 25, 독일 2020. 4. 23 기준 자료임

3) 직장 및 사회 정책 관련 자료는 영국 2020. 4. 21, 이탈리아 2020. 4. 7, 스페인 2020. 4. 24, 프랑스 2020. 5. 4, 독일 2020. 4. 24 기준 자료임

자료: OECD, "Key country policy responses 'Country Policy Tracker'"(www.oecd.org/coronavirus/en)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경제 부양 지원) 호주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경기 부양을 위해 총 1,886억 호주 달러의 재정을 투입할 계획임³³⁾

- 이는 호주 전체 GDP의 약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기업의 세금감면, 취약계층 지원, 중소기업 보조금 지급이 포함됨
- 176억 호주 달러의 1차 경제 부양 패키지, 660억 호주 달러 규모의 2차 경제 부양 패키지
와 별도로 1,050억 호주 달러의 금융 시스템 운영을 위한 지원금이 이에 속함

■ (1차 경제 부양 패키지) 2020년 3월 12일 호주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인해 타격을 입은 경제를 지원하기 위한 176억 호주 달러의 1차 경제 부양 패키지를 발표함³⁴⁾

- 네 개 분야로 구성된 동 패키지는 사업 투자 촉진, 중소기업 지원 및 고용 안정을 위한 현금 조달, 피해가 큰 산업 및 지역사회 지원, 가계 부양에 중점을 두고 있음
 - (사업투자) 호주 정부는 2020년 3월 12일부터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사업체의 일시 자산 상각액(IAWO: Instant Asset Write-Off)³⁵⁾ 한도를 3만 호주 달러에서 15만 호주 달러로 확대시켰으며,³⁶⁾ 이는 세금 공제의 일환임
 - (중소기업 지원) 2020년 1월 1일에서 2020년 6월 30일 사이에 매출액이 5,000만 호주 달러 미만인 고용주는 2,000~2만 5,000호주 달러의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고용주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최대 9개월 동안 견습생 또는 연수생 임금의 50%의 임금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산업 및 지역 지원)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은 산업 및 지역을 지원

33) 호주 총리(<https://www.pm.gov.au/media/supporting-australian-workers-and-business>); 호주 재무부(<https://treasury.gov.au/coronavirus/businesses>); 호주 국세청(ATO)(<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34) 호주 재무부(<https://treasury.gov.au/coronavirus/businesses>); 호주 국세청(ATO)(<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35) 매출이 1,000만 호주 달러 이하인 소규모 사업체가 구입한 자산에 대해 감가상각하지 않고 한 번에 비용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임. 예전에는 각 구입한 자산 가격이 3만 호주 달러 이하인 경우 즉시 비용공제가 가능하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해 기준금액을 15만 호주 달러로 증가시킴

36) 이 혜택은 2020년 6월 30일까지 연간 총 매출액이 5억 호주 달러 미만인 기업이 받을 수 있음

하는데 10억 호주 달러가 투입되며, 특히 관광산업, 농업, 교육 분야에 투입될 것임

■ (2차 경제 부양 패키지) 호주 정부는 같은 날인 2020년 3월 12일 자영업자, 중소기업, 실업자 및 은퇴자 재정지원을 위한 660억 호주 달러 규모의 2차 경제 부양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함³⁷⁾

- (중소기업과 비영리단체 지원) 2020년 4월 28일부터 연간 매출액이 5,000만 호주 달러 이하인 사업체와 비영리단체를 위한 최소 2만 호주 달러에서 최대 10만 호주 달러의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함
- (비즈니스 파산 방지) 회사의 부채가 2천 호주 달러가 되면 채권자가 독촉장(Statutory Demand)을 발행하는 기준 금액을 2만 호주 달러로 인상하였고, 회사가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기간은 21일에서 6개월로 연장하였으며, 파산 후 6개월 동안 회사 대표들의 개인적인 책임이 면제됨
- (중소기업 운영자금 유통) 최대 5,000만 호주 달러 매출규모의 중소기업이 신규 대출 시 대출금의 50%를 보증하는 코로나바이러스 중소기업 보증제도(Coronavirus SME Guarantee Scheme)를 도입함
-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 지원) 소득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및 자영업자(Sole Traders and Self-employed)는 소득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음
- (일부 기업법 조항의 일시적 완화)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는 12월 31일 회계연도에 2020년 5월 31일까지 연례총회(AGM)를 개최해야 하는 회사에 대해 2개월 동안 혼합적으로 가상 연례 총회를 할 수 있도록 함

■ (3차 경제 부양 패키지) 2020년 3월 30일 호주 정부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한 대규모 실업사태를 예방하고자 1,300억 호주 달러 규모의 일자리 지키기 수당(JobKeeper Payment)이 포함된 3차 경제 부양 패키지를 추가로 발표함³⁸⁾

- 3월 1일 이후 해고되었거나 해고될 위험에 처한 근로자 600만 명에게 최대 6개월까지 일률적으로 2주에 1,500달러의 임금 보조금이 지급될 것임
 - 보조금은 호주 국세청(ATO)를 통해 집행되며 사업체는 정부 보조금이 직원에게 지

37) 호주 재무부(<https://treasury.gov.au/coronavirus/businesses>); 호주 국세청(ATO)(<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38) 호주 재무부(<https://treasury.gov.au/coronavirus/jobkeeper>); 호주 국세청(ATO)(<https://www.ato.gov.au/General/New-legislation/The-Australian-Government-s-Economic-Response-to-Coronavirus>)

급되었음을 입증해야 함

- 실제로는 5월부터 지불되나 3월부터 소급 적용이 가능함

■ 호주 정부와 호주 중앙은행(Reserve Bank of Australia)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자 GDP의 10%에 해당하는 경기부양책을 발표하였으며,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함

- 2020년 3월 3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0.75%에서 0.50%로 0.25%p 인하함³⁹⁾
- 2020년 3월 19일 호주 중앙은행은 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기준금리를 0.50%에서 0.25%로 한 번 더 인하하며 사상 최저 수준이 됨⁴⁰⁾
 -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낮은 기준금리임
- 2020년 4월 7일 호주 중앙은행은 기준금리를 기존 0.25%로 동결하며 3년물 국채금리 목표치도 0.25%로 유지한다고 발표함
 - 호주 중앙은행은 완전고용과 물가상승률 목표치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며 인플레이션은 지속해서 목표 범위인 2~3% 이내에서 움직일 것으로 전망함

2) 싱가포르

■ (경제 부양 지원)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2월~4월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599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경기부양책을 통해 가계 및 기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금 지원을 확대함

■ (정부 예산안) 싱가포르 정부는 2020년 2월 18일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입은 기업, 근로자, 가정, 기관을 위하여 약 64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지원 대책을 마련한 2020년 예산안을 발표함

- (Stabilisation and Support Package) 기업 지원의 일환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관광업, 항공업, 택시업, 소매업 및 요식업 등 5개 산업의 근로자 일자리 유지와 기업을 돕

39) 호주 중앙은행(<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0/mr-20-06.html>)

40) 호주 중앙은행(<https://www.rba.gov.au/media-releases/2020/mr-20-08.html>)

기 위하여 40억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함

- (관광업) 호텔, 서비스 아파트(Service Apartment)⁴¹⁾와 MICE⁴²⁾ 행사 장소 대상으로는 2020년 재산세 30%를, 국제크루즈선, 페리 터미널, 상업용 부동산 등은 재산세 15%를, 통합리조트는 재산세 10%를 환급 지원함
 - (항공업) 일자리 유지와 비용 절감을 위하여 1억 1,200만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고 창이 공항 재산세 15%를 환급 지원함
 - (택시업) 택시업계와 차량공유 서비스업에 7,700만 싱가포르 달러의 지원금을 제공함
 - (소매업 및 요식업) 정부가 운영하는 현지식 푸드코트인 호커센터 세입자들의 한 달치 월세를 면제함
- 일자리 유지를 위해 싱가포르 국민 및 영주권 보유 취업자의 3개월치 월급의 8%(월 상한 3,600 싱가포르 달러)를 기업에 지원함

■ (정부 추경 예산안 1차) 2020년 3월 26일 싱가포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484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추경 예산안을 발표함

- 싱가포르 정부는 금번 추경 예산안을 일자리 보전 및 가계 지원, 기업 생존력 제고, 경제 및 사회적 복원력 제고를 목표로 편성함
 - 일자리 보전 및 가계 지원을 위해 기존 일자리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저소득자·구직자·실업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집중 편성함
 - 기업 생존력 제고를 위해 소득세 납부를 유예하고, 재산세 환급,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타격 업종 지원 등을 강화하였으며, 기업 신용접근성을 제고함

■ (정부 추경 예산안 2차) 2020년 4월 5일 싱가포르 정부는 51억 싱가포르 달러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안을 발표함

- 직장 폐쇄 등 강화된 정부 조치로 인해 경제적 타격이 전망됨에 따라 일자리 보전 및 가계 지원, 기업 생존력 역량 제고를 위해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함
 - 기존 일자리 지원사업 예산을 증액시키고 업종별 차등 적용되던 급여지원 비율을 4

41) 호텔의 서비스와 아파트의 편리함을 모두 갖고 있으며, 외국인들에게 오랜 기간 동안 임대하기 위하여 만든 주거 공간임

42)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를 합쳐놓은 용어임

월 한 달간 전 업종에 대해 확대 적용함

- 싱가포르 정부는 4월 한 달간 기업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부담금(Monthly Foreign Worker Levy)을 면제해주고,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 1인당 750싱가포르 달러의 고용부담금을 추가적으로 지원해 줌
- 기존 예산안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지원 대상이 소유 부동산 가치 기준 13,000 싱가포르 달러 이하의 부동산 소유자이었지만, 추경 예산안에서는 21,000싱가포르 달러 이하로 소유 부동산 가치 기준을 상향 조정하여 소득지원 대상을 확대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21년까지 부가가치세(GST) 인상을 보류함

- 싱가포르 정부는 2018년 예산안 발표 당시 2021~2025년 중 부가가치세 인상 계획을 발표했으나, 2020년 2월에는 2021년 중 부가가치세 인상은 없을 것으로 발표함

2. 가계 지원

가. 미국

- (경기부양 지원금) CARES 법에 근거해 특정 소득 이하 국민에게 1인당 최대 1,200달러(아동 500달러)를 지원하고 실업급여를 추가 지원함
 - 성인 1인당 1,200달러(연 조정소득 75,000달러 이하 대상)를 별도 신청할 필요 없이 수표 발송 또는 은행계좌 입금 방식으로 지원함
 - 연 조정소득 75,000달러 이상~99,000달러 이하인 개인에게는 소득 100달러당 지원금 5달러 감액함
 - 실업급여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최대 39주간 실업급여를 제공하고, 4개월간 실업급여 주당 600달러 추가 지원함

- (영양보조) FFCRA, CARES 법에 근거해 노약자를 대상으로 식량 및 영양프로그램을 지원함
 - (CARES) 7억 5천만 달러를 푸드뱅크, 인디언 식량지원 프로그램 등에 지원함
 - (FFCRA) 여성, 유아 및 어린이를 위한 특별 영양보충 프로그램을 지원(4억 달러)하고, 저소득층 가구의 자녀가 휴교령으로 5일 이상 연속 등교하지 않는 경우 비상 식량을 지원함

- (유급병가·휴가 지원) FFCRA에 근거하여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일을 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해 유급병가 및 유급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500인 이하 기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및 코로나19 확진 직원에 대해 10일간의 유급병가를 제공하도록 함
 - 자녀를 돌봐야 하는 경우 최대 12주(유급휴가는 10주)간의 추가 휴가를 제공하도록 함

- (모기지 상환 연기) CARES법에 근거하여 연방 보조금을 받는 주택에 거주하거나, 임대인이 연방 또는 정부지원기업(GSE: Government Sponsored Enterprise)이 지원하는 모기지를 보유하고 있는 세입자의 경우 모기지 상환 연기, 압류 금지, 강제 퇴거 금지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음
 -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추가 비용 없이 모기지 대출 상환을 최대 180일

- 간 중지 혹은 감액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후 추가 180일 연장 요청이 가능함
- 모기지 대출기관은 2020년 3월 16일 이후 60일간은 모기지 미상환을 이유로 자산을 압류할 수 없음
- 임대인은 해당 세입자가 임차료를 미지급하더라도 2020년 3월 27일부터 7월 25일 동안은 강제 퇴거를 요구할 수 없음
- (학자금 대출 상환 중지) CARES법에 근거하여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은 2020년 9월 30일까지 자동으로 중지됨
 - 상환 중지된 원리금은 일정 조건 만족 시 학자금 대출 탕감 프로그램(Student Loan Forgiveness Program)으로 편입됨

나. 일본

- 2020년 4월 7일 긴급경제대책의 일환인 가계 생활안정 대책은 육아수당, 세제혜택, 공공요금 납입 유예, 의료지원, 원격수업 예산 확보 등임⁴³⁾
 - (육아수당) 육아수당 지급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 1인당 1만 엔 추가 육아수당을 5월 중에 지급 예정임
 - (주거지원금) 휴업·휴직 등에 의한 소득 감소로 임대료 납입이 곤란한 가계에 3~9개월 월세액 상당의 주거 지원금 지급 예정임
 - (세제혜택) 가계 부담 경감을 위해 소비세를 1년 동안 기존 10%에서 5%로 인하 검토 중임
 - (사회보험료 감면) 수입 감소로 건강보험료 납입 등이 곤란한 가구에 국민건강보험료, 간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감면을 실시할 예정임
 - (공공요금 납입 유예) 생활이 곤란한 가구에 국세, 지방세, 전기, 가스, 전화요금, NHK 요금 등의 각종 공공요금 납입을 일정기간 유예 예정임
 - (의료지원) 유치원, 초등학교, 간병시설에 마스크를 배포하고, 가구당 천 마스크 2매씩 배포 예정임
 - (원격수업 지원) 임시 휴교 시 원활한 온라인 수업을 위한 예산 약 2,292억 엔을 확보함

43) <https://corona.go.jp/action/>

-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재난지원금으로 전 국민에게 1인당 10만 엔씩 이르면 5월부터 지급하는 수정안을 2020년 4월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함⁴⁴⁾
- (긴급재난 지원금) 지급 대상은 나이, 소득에 관계없이 주민등록상 전 국민이고, 외국인도 3개월 이상 체류 자격을 갖춘 경우를 가능하며, 지급방법은 현금임

다. 중국

- (상품권 제공) 2020년 3월 2일부터 16개 지방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위축된 소비 회복을 위해 지역 시민에게 약 100억 위안 상당의 상품권을 제공함⁴⁵⁾
 -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심각한 소비심리 위축 및 이에 따른 소비판매 부진 현상이 나타나 각 지방정부가 소비 진작에 적극적으로 나섬
 - 2020년 1~2월 중국 사회소비재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20.5% 급감했는데 사회소비재 매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0년 이후 처음임
 - 상품권 사용 기간을 한시적으로 두어 지역사회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함
 - 특히 일부 상품권은 일정한 금액을 초과할 때에만 사용이 가능함
- (사이버범죄 예방 및 방지 강화) 2020년 4월 9일 중국 정부는 코로나19 동안 늘어나는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힘⁴⁶⁾
 - 도시 봉쇄 조치로 사람이 집에서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강력 범죄가 줄고 있지만 금전적 이익을 얻기 위한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범죄가 크게 늘어났음
 - 중국 공안부는 온라인 도박 및 사이버범죄의 유형을 명시하며 그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발표함

44) 기초안 가구당 30만 엔에서 1인당 10만 엔 방안으로 최종 수정됨

45) 中国经济周刊(2020. 5), “多省市发放百亿“消费券”效果到底如何?”

46) 中国政府网(2020. 4), “关于新冠肺炎疫情期间依法严厉打击跨境赌博和电信网络诈骗犯罪的通告”

라. 대만

- (마스크 구매 실명제) 2020년 2월 6일 대만 정부는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실명으로 마스크를 구매하도록 규정함⁴⁷⁾
 - 앞서 대만 정부는 1월 24일 외국인의 사재기를 막기 위해 대만에서 만든 마스크 수출을 금지한 바 있음⁴⁸⁾
 - 全民건강보험 카드를 지참하고 지정 제약업체에서 실명으로 마스크를 살 수 있지만, 1인당 일주일에 2장씩 신분증 끝 번호에 따라 ‘홀짝제’로 마스크를 구입해야 함
 - 마스크 구매 실명제 시행 이후부터 마스크 구입 시간대가 겹치고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인터넷 및 스마트폰 앱, 편의점에서 예약, 결제 및 수령까지 할 수 있도록 개선함⁴⁹⁾

- (재난기본소득 지급) 2020년 5월 4일 대만 정부는 코로나19로 생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인당 1만 대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함⁵⁰⁾
 - 지급 대상은 고용보험이 없는 일용직 노동자 및 어업에 종사하는 어민을 포함하며 이들은 각각 34만 명 및 140만 명에 달함

- (사이버범죄 예방) 질병관제서 명의로 보내는 스팸메일이 발견되면서 5월 4일 대만 질병관제서는 개인정보 유출이나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스팸메일에 조심하라고 권고함⁵¹⁾
 - 코로나19 방역 관련 정보는 질병관제서 공식 홈페이지에서만 게시된다고 명시함

47)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 “口罩販售實名制2月6日上路, 民眾可持健保卡購買”

48) 經濟部(2020. 1), “公告自109年1月24日起至109年2月23日止CCC6307.90.50.10-6「紡織材料製口罩, 過濾效果94%及以上者」及CCC6307.90.50.20-4「其他紡織材料製口罩」2項貨品增列輸出規定代號「111」, 並列入「限制輸出貨品表」”

49) KNOWING新聞(2020. 4), “4月22日上路! 1分鐘看懂口罩實名制3.0新規定”

50) 行政院(2020. 5), “雨露均霑擴大紓困 蘇揆: 補助工作無加保者及農漁民”

51) 衛生福利部疾病管制署(2020. 5), “防詐騙! 指揮中心從未發「最終通知」, 接獲不明郵件勿開啟”

마. 유럽

■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 국가별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업자 및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조치를 실시함

- (영국) 고용유지제도를 통해 향후 3개월간 매달 2,500파운드 한도로 근로자 급여의 80% 까지 보조금 신청이 가능하며, 자영업자에게 최근 3년간 소득의 최대 80%까지 보조금을 제공함(월 2,500파운드, 평균 수익 50,000파운드 미만 자영업자에게 적용)
- (이탈리아) 100억 유로를 배정하여 임금 지원, 자영업자 일회성 지원금 지급, 실업자에 대한 담보대출 상환 정지, 보육지원 강화, 지속근무자에 대한 보너스 지급, 모기지 등 채무상환 유예 조치 등을 시행함
- (스페인) 필수사업을 제외하고 임시고용조정제도(ERTE, Temporary Employment Adjustment Schemes)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조건 완화 및 단순화 조치를 시행하였으며, 실업급여(Unemployment Benefit) 적용 연장, 근로자 급여 지원, 자영업자 특별수당 지원, 에너지 수도 등에 대한 사회적 혜택(Bono Social) 자동 연장, 감염자 및 격리자 급여 지급, 취약계층에 대한 임대료 납부 유예 및 모기지 상환 유예 등의 조치를 취함
- (프랑스) 휴교 대상자와 피해 근로자에 대한 병가 보상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실업급여를 연장하고 자영업자 및 기업 소득 지원을 위한 고립자금(Solidarity Fund) 확보 등의 조치를 실시함
- (독일) 사회급여 적용 요건을 완화하고 자산 및 아파트 규모 고려조건을 삭제하였으며, 일시적으로 소득이 감소하는 부모의 경우 아동수당(Kinderzuschlag) 혜택을 받을 수 있고, 2020년 5~12월 사이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실업자에 대한 실업급여를 3개월 연장함

■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직원 노출 감소) 5개 국가 모두 재택근무를 권장하며, 이탈리아는 재택근무에 필요한 장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함

■ (확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한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각 국가별로 근로자 및 자영업자에 대한 조치를 도입함

- 영국은 기존 4일차부터 가능하던 법정병가 수당을 1일차부터 지급하며, 이탈리아는 근무 중 확진된 경우 산업재해를 적용하고, 스페인은 1일차부터 확진자 및 격리자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며, 독일은 근로자 및 자영업자의 소득에 대해 연방정부가 보상함

- (재택근무불가 격리자에 대한 소득 지원) 재택근무가 불가능한 근로자에 대해서도 법정병가를 도입하거나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정부가 급여 지급을 보장함
- (예측 불가능한 보육 수요 지원) 영국, 프랑스, 독일은 필수 근로자의 자녀를 위하여 일부 학교 및 보육 시설을 개방하고 이탈리아 및 프랑스, 독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경우 유급 또는 무급 휴가를 지급하며, 스페인은 취약계층 가족을 위해 사회서비스 프로그램에 6억 유로를 지원하고 아동 식량 공급을 위해 2,500만 유로를 지원함
- (실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이탈리아는 대다수 자영업자, 관광업자, 농업 근로자, 공연 예술 근로자 등에게 3월 한 달간 총 600유로의 세금을 면제하고 4,000유로 미만 소득 근로자를 위한 100유로 보너스를 지급하며, 독일은 자영업자와 프리랜서의 소득 손실을 세금신고서에 따라 보상함
- (기업의 근무시간 조정 및 일자리 보존 지원) 영국과 이탈리아는 단축근무를 도입 및 확대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급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영국은 HMRC보조금, 독일은 Kurzarbeit를 신청할 수 있음

〈표 3〉 유럽국가 일반가정 대응 정책 및 제도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조세 및 분담금 변경을 제외한 개인 및 가구에 대한 소득지원 대책 (Income Support Measures for Individuals and Households Excluding Tax an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용유지제도 (3. 20) · 자영업 소득 지원 제도 (3. 26) · 자영업자를 위한 유니버설 크레딧(UC: Universal Credit) (3. 20) · 자율격리자 (Self-quarantined People)의 법정병가 수당(3.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억 유로 초과 할당 - 임금지원 등 50억 유로 - 자영업자 및 계절근로자에게 일회성 지원금 600유로 지급 - 실직근로자의 부동산 담보 대출 상환 1년 정지 -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치구 자영업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필수사업 제외 임시고용조정 제도(ERTE, Temporary Employment Adjustment Schemes) 적용 범위 확대(4. 21) · 실업급여 (Unemployment Benefit) 연장 적용 (4. 21) · 경제활동 중단으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권 (최소한의 복지 혜택, 장애인 혜택) 확대 · 실업급여 연장 · 자영업자 및 기업 소득 지원을 위한 고립자금(Solidarity Fund) 지원 · 실업보험 개정 일부 연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 1부터 6개월 간 사회급여(Social Benefit) 적용 완화 · 아동수당 (Kinderzuschlag) 혜택 · 실업급여 연장 · 4. 1~6. 30 사이 임대료 체납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 해지 불가

〈표 3〉 계속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Contribution Changes)		<p>최대 3개월 월 500유로 수당</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 12세 이하 아동의 보육지원 강화 또는 보육서비스 지원 600유로 - 모기지 등 채무상환 유예 - 지속근무자에 대한 일회성 보너스 100유로 등 	<p>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한 급여 전액 지급 (3. 3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영업자 특별 수당 지급 (SSC 기반 70%, 최소 1개월) (3. 17) · 에너지 제공 혜택(Bono Social) 9. 15까지 자동 연장 (3. 31 확대) · 감염자 및 격리자 대한 병가 급여 사회보장예산으로 지급 · 비모기지 크레딧(Non-mortgage Credits)의 변경 관련 공증 수수료 인하(4. 21) · 6개월 이내 만료 예정인 임대주택 계약 연장 · 취약계층 신용 유예 · 취약계층 모기지 상환 3개월 연기 		
직장 내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직원 노출 감소 (Reducing Workers' Exposure to Covid-19 in the Workplac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부문 재택근무용 노트북 구입 및 개인 보호 장비 구매 · 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 · 살균처리에 대한 세금 공제 · 공공행정 재택근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권장 · 중소기업 지원 · 공공프로그램 추진 · 보건안전책임 기관(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 y Salud en el Trabajo)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권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택근무 권장

〈표 3〉 계속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구체적 방향 및 개별 장비 사용에 대한 최신 지침 발표 · 격리 조치 근로자에 대한 보호 개선		
확진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소득 지원 (Income Support to Sick Workers and Their Families)	· 1일차부터 법정병가 수당 지급 (이전 4일차부터 가능)	· 근무 중 확진된 경우 산업재해 적용	· 근로자 및 자영업자 소득 보장 (사회보장규제 기준 75%)	· 자녀 보육이 필요한 경우 유급 병가 보장	· 근로자 급여 보장 및 연방정부로부터 보상 가능 · 자영업자도 보상 가능
재택근무 불가 격리자에 대한 소득 지원 (Income Support to Quarantined Workers Who Cannot Work from Home)	· 법정병가 제공	· 확진자 병가 간주 및 고용주 급여 부담 국가 부담	· 3. 30~4. 9 유급휴가 부여	-	· 직원 급여 보장 및 연방정부로부터의 보상 가능 · 자영업자도 보상 가능
예측불가능한 보육 수요 지원 (Helping Dealing with Unforeseen Care Needs)	· 필수서비스업 종사자 자녀를 위한 일부 시설 개방	· 12세 이하 자녀 부모 50% 급여 지급 15일 휴가, 12~16세 자녀 부모 무급 휴가, 또는 최대 600유로 지원	· 재택근무 및 탄력근무 시간을 보육 수요에 맞춰 조정 가능 · 취약계층 가족 지원 · 아동 식량 보전을 위해 2,500만 유로 지원 · 보건소 및 보건 기관의 경우 영업 정지 또는 단축 근무 적용 불가	· 양육이 필요한 부모 유급병가 가능 · 필수 근로자 자녀를 위한 일부 시설 개방	· 필수 근로자 자녀를 위한 일부 시설 개방 · 부모 유급휴가 가능
실업자 또는 자영업자에 대한 소득 지원 (Income	-	· 대다수 자영업자, 관광업자, 농업 근로자, 공연 예술	-	-	·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전년도 세금신고서의 이익에 따라

〈표 3〉 계속

구분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독일
Support to Persons Losing Their Jobs or Self-employment Inco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등 3월 한 달간 총 600유로의 세금 면제 · 국내 근로자에 대한 사회공헌금 지급 기한 6월로 유예 · 4,000유로 미만 소득 연속 근무자를 위한 100유로 보너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득손실 보상 가능 · 실업자는 순임금의 67%(자녀가 없는 경우 60%) 지급
기업의 근무시간 조정 및 일자리 보존 지원 (Helping Firms to Adjust Working Time and Preserve Job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근무 도입 · 기업 및 단체는 임금보전을 위해 HMRC에 보조금 신청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축근무 전체 기업으로 확대 · 경제적 이유로 인한 해고 2개월 유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 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급여 보장 범위 확대 · 코로나19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 세부조사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urzarbeit를 신청요건 완화 · 코로나19를 이유로 임대료 미납 가능 (4.1) · 임대료 납부 유예 · 전기·가스·수도·통신 비용 연체료 없이 유예 가능

주: 1) ()안의 숫자는 정책이 발표된 날짜임

2) 재정 및 통화 정책 관련 자료는 영국 2020. 4. 25, 이탈리아 2020. 5. 4, 스페인 2020. 5. 6, 프랑스 2020. 4. 25, 독일 2020. 4. 23 기준 자료임

3) 직장 및 사회 정책 관련 자료는 영국 2020. 4. 21, 이탈리아 2020. 4. 7, 스페인 2020. 4. 24, 프랑스 2020. 5. 4, 독일 2020. 4. 24 기준 자료임

자료: OECD, "Key country policy responses 'Country Policy Tracker'"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2020년 3월 12일 호주 정부가 발표한 1차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가계 부양금과 기간제(Casual) 직원을 위한 질병 수당 지원 내용도 포함됨

○ (가계 부양) 연금, 사회 보장, 재향 군인 등 기타 소득 지원 수혜자 및 복지카드(Concession Card) 소지자에게 750호주 달러 현금이 지급됨

- 지불 기간은 2020년 3월 31일부터 4월 중순까지 진행됨

○ 코로나19로 인해 자가격리 중인 기간제 직원은 질병 수당(Newstart Sickness Payment)

을 받을 수 있음

- 해당 수당의 경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기기간이 면제됨

■ 호주 정부가 발표한 2차 경기 부양 패키지에는 생계 지원금이 추가되었으며, 연금 조기 인출이 가능해짐

○ (생계 지원금) 4월 27일부터 향후 6개월 동안 정부는 2주에 550호주 달러의 추가 수당을 제공할 예정임

- 코로나바이러스 생계 지원금은 기존 및 신규 수령인 모두에게 지급되며 자격 조건은 구직자 보조금, 청소년 수당, 육아 수당, 농가 수당, 특별 혜택 수혜자 등의 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들임

○ 실직한 정규직 직원, 기간제 근로자,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 소득 테스트를 충족하는 계약직 근로자에게도 소득 지원이 확대됨

○ 또한 1차 부양 패키지에서 발표된 750호주 달러의 지원금 수령자들에게 추가로 750호주 달러를 지급함

○ (연금 조기 인출) 코로나19로 인해 금전적으로 어려운 개인은 2019/20 회계연도에 최대 1만 호주 달러, 2020/21 회계연도에 추가로 1만 호주 달러까지 연금을 인출할 수 있음

- 조기 인출에 대해 면세 혜택을 부여하고 복지수당 또는 재향 군인 연금 지불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연금 인출을 청구하려면 실업자, 구직자 수당, 육아 수당, 특별 혜택, 농가 수당 등의 수령자, 2020년 1월 1일 또는 이후에 해고되거나 근무 시간이 20% 이상 단축된 개인, 자영업자의 경우 비즈니스 운영이 중단됐거나 매출의 20%가 감소했을 경우 등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함

2) 싱가포르

■ (정부 예산안) 싱가포르 정부가 2020년 2월 18일 발표한 정부 예산안은 가정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 및 보유 재산에 따라 16억 싱가포르 달러를 지원하기로 함

○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 100~300싱가포르 달러의 일회성 현금을 지원하고, 2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게 최소 100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지원함

○ 50세 이상 싱가포르 시민권자의 복지 카드(Passion Card)에 100싱가포르 달러를 추가로 충전해줄 예정임

○ 저소득층에게는 100싱가포르 달러의 슈퍼마켓 바우처를 지원할 예정임

■ (정부 추경 예산안 1차) 싱가포르 정부가 3월 26일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서는 기존 예산안보다 지원 규모를 46억 싱가포르 달러를 증액시킴

○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 주기로 하였던 일회성 현금을 100~300싱가포르 달러에서 300~9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함

○ 21세 미만의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지원금도 100싱가포르 달러에서 3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함

■ (정부 추경 예산안 2차) 싱가포르 정부가 4월 5일 발표한 추경 예산안에서는 가계소득 보전 패키지 대상 범위를 확대함

○ 21세 이상의 모든 싱가포르 시민권자에게 주기로 하였던 지원 금액 최소액을 300싱가포르 달러에서 600싱가포르 달러로 상향 조정함

3. 보험산업 지원

가. 미국

■ 미국 상원은 건강보험회사 CEO에게 코로나19와 관련된 모든 치료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비용분담(Cost Sharing) 요건을 폐지해줄 것을 요청함(2020. 3. 19)⁵²⁾

- 응급실 치료, 원격의료 방문, 보건소 및 긴급치료, 처방약 90일 보충 등의 보장으로 확대 적용함

1) 캘리포니아주 보험감독국

■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비용의 자기부담금과 공제액을 없애 무료로 검사받을 수 있도록 함(2020. 3. 5)⁵³⁾

- 검사비용, 응급실 이용 및 긴급치료 비용, 진료소 방문 비용 등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제반의 비용에 대해서 적용함
- 이 외에도 보험회사와 계약되지 않은 기관(Out-of-network)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보장하도록 하고, 원격의료서비스 제공, 처방약 부족 시 타 약물 사전승인 규제 완화 등도 권고함

■ 코로나19 긴급사태로 인해 소비자와 기업이 보험료를 미납하여 보험계약이 취소되지 않도록 60일간의 보험료 납입 유예 기간을 요청함(2020. 3. 18)⁵⁴⁾

■ 캘리포니아주 보험청은 소비자들이 필요 시 신속히 원격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회사에게 원격진료서비스 보장과 이에 대한 본인부담 비용은 대면 진료 시보다 낮게 설정하도록 요구함(2020. 3. 30)⁵⁵⁾

52) United States Senate(2020. 3. 19), "Covid-19 insurance ceo letter"

53) CDI, "Bulletin: COVID-19 Screening and Testing"(http://www.insurance.ca.gov/0250-insurers/0300-insurers/0200-bulletins/bulletin-notices-commiss-opinion/upload/COVID-19-Screening-and-Testing.pdf)

54) CDI, "Notice: 60-Day Grace Period for Insurance Premium Payments Due to the Disruption Caused by the Novel Coronavirus (COVID-19) Outbreak"(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upload/nr030-BillingGracePeriodNotice03182020.pdf)

- 모든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전화 기반 혹은 비디오 기반 등의 모든 형태의 원격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함

■ 근로자들이 코로나19 증상이 나타나거나 확진될 경우, 이민자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이 근로자 보상 혜택(Workers' Compensation Benefit)을 받을 수 있음을 보험회사에 환기시킴(2020. 4. 6)⁵⁶⁾

- 헬스케어, 응급서비스, 식품 생산, 영업, 배달 등 최전방 직업의 근로자들을 포함함

■ 코로나19 비상사태 와중에 식품, 의약품 및 비상의약품 등 필수 비즈니스의 배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⁵⁷⁾의 경우 개인 자동차보험에 근거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회사에 촉구함(2020. 4. 10)⁵⁸⁾

- 개인 자동차보험, 스쿠터 보험 등에 필수 비즈니스의 배달 보장(Delivery Coverage) 추가, 필수 비즈니스 기업의 자동차보험에 추가적인 피보험자 등록 등을 요청함

■ 캘리포니아 보험감독청은 보험회사에게 COVID-19 긴급상황 동안 재정 도움이 필요한 소비자와 기업들에게 최소 3, 4월⁵⁹⁾ 동안의 보험료를 환급해주도록 함(2020. 4. 13)⁶⁰⁾

- 코로나19 비상사태로 인한 자택대피명령, 기업 강제폐쇄명령 등으로 인해 현재의 사고 또는 손실 위험을 반영하지 않는 보험료를 면제받을 필요가 있다고 주장함

- UC Davis의 특별보고서⁶¹⁾에 따르면, 차량운행량 감소로 인해 고속도로 및 도로에서의 사고, 부상, 그리고 사망자 수가 줄어들었음

- 보험회사로 하여금 60일 이내에 발행했거나 발행할 예정인 보험료 환급과 관련하여 보험감독국에 보고하도록 명령함

- 보험료 환급 대상에 해당되는 보험으로는 개인용 및 상업용 자동차보험, 근로자보상 보험, 상업용 다중위험보험, 상업용 배상책임보험, 의료과실보험, 그리고 그 외에 코

55)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4-2020.cfm>

56)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6-2020.cfm>

57) 배달서비스 근로자는 미 국토안보부에서 필수 핵심 인프라 근로자(Essential Critical Infrastructure Workers)로 정한 총 16개 분야 근로자에 해당됨

58)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7-2020.cfm>

59) 자택 대피 명령(Shelter-in-place)이 연장될 경우 5월분까지 포함함

60) <http://www.insurance.ca.gov/0400-news/0100-press-releases/2020/release038-2020.cfm>

61) Special Report on the Impact of COVID-19 on California Traffic Accidents

로나19의 영향으로 손실 위험이 감소한 기타 보험 등입

2) 뉴욕주 금융서비스국(DFS⁶²⁾)

■ 뉴욕주는 코로나19 검사와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줄 것을 요청함(2020. 3. 3)⁶³⁾

- 보험회사와 계약된 기관(In-network Provider)에서 진료를 보기 어려운 경우, 계약되지 않은 기관(Out-of-network Provider)에서 검사를 받더라도 비용을 보장하도록 함
- 이 외에도 원격건강관리 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공급망 차질로 처방약이 부족할 경우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약품 외에도 보장하도록 하는 등 소비자 보호 차원의 가이드 라인을 함께 제공함

■ 뉴욕주는 보험회사와 여행사에게 전염병 사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CFAR: Cancel For Any Reason)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할 것을 권고함(2020. 3. 6)⁶⁴⁾

- CFAR 여행보험 상품은 소비자가 표준여행보험 상품에 가입하지 않고 별도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함께 가입할 것을 권유하지 않도록 함
 - 해당 상품은 표준 여행보험 상품보다 보험료가 약 40~60% 가량 높고, 전염병 등의 이유로 여행 취소 시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 뉴욕주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보험회사의 운영리스크 및 재무리스크(Operational Risk and Financial Risk)를 점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회사별로 자체적인 대응 계획을 세워 제출할 것을 요구함(2020. 3. 10)⁶⁵⁾

- (운영리스크) 고용유지계획, 원격근무의 보안 및 효율성, 중요서비스 공급망 점검, 소비자 및 직원과의 소통계획 수립 및 평가 등입
- (재무리스크) 소비자의 보험료 납부 능력,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능력, 보험금 청구 대응, 거래상대방의 신용리스크, 투자자산 스트레스 테스트, 그리고 자본, 수익, 유동성 평가 등입

62) New York State Department of Financial Services

63) DFS,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3(2020)

64) DFS,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4(2020)

65) DFS,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5(2020)

- 뉴욕주는 코로나19 비상사태 동안 보험계약자가 원격의료서비스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긴급규제(Emergency Regulation)을 적용함(2020. 3. 15)⁶⁶⁾
 - 보험회사가 보장하는 의료서비스를 원격의료로 제공하는 경우에도 모든 종류의 본인부담을 면제함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보험소비자와 소기업들을 위해 보험료 납부기한 연기, 보험관련 서비스 지속 제공, 보장 조건에 대한 유연한 해석 등에 대한 지침을 제공함(2020. 3. 19)⁶⁷⁾
 - 2020년 3월 30일, 뉴욕주는 긴급규제를 적용해 생명보험료 납부 최대 90일, 손해보험료 납부 최대 60일을 연기할 수 있도록 함⁶⁸⁾

- 뉴욕주 금융청은 뉴욕주 건강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일선에서 일하는 필수 비즈니스의 근로자들이 보험회사와 계약된(In-network) 의료기관에서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모든 비용분담을 면제하도록 긴급규제를 적용함(2020. 5. 2)⁶⁹⁾

66) DFS,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6(2020)

67) DFS,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7(2020)

68) https://www.dfs.ny.gov/press_releases/pr202003301

69) https://dfs.ny.gov/press_releases/pr202005021

나. 일본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정상적인 업무 및 계약 유지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업무 간소화 조정 및 보험계약자 보호 조치를 보험협회에 요청함⁷⁰⁾
 - (보험계약자 보호 조치) 고객보호 관점에서 보험계약자가 보험계약 유지 등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적절한 대응을 취하도록 요청함
 - 보험료 납입 및 계약갱신 유예기간 설정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함
 - 이러한 정보를 보험회사 및 대리점 등의 점포에서 보험계약자가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충분한 주의를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함
 - (보험회사 업무 간소화 조치) 보험회사 또는 대리점의 영업중지 시 영업점포 상호 등을 신속하게 고시하고 동시에 그 취지를 신문 또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고객의 주의를 당부함

- 일본 금융청은 코로나19 감염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회사가 보험약관을 유연하게 해석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요청함⁷¹⁾
 - (후생노동성 요청) 코로나19를 향후 제1종 또는 제2종 감염병으로 분류할 예정이므로 감염법령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금융청에 사전에 안내함
 - (금융청의 조치) 이를 근거로 금융청은 코로나19가 보험약관의 보험금 지급 사유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향후 보험약관을 확대 해석하거나 상품상 필요한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각 보험협회에 요청함

70) 金融庁 報道資料(2020. 3. 13)

71) 金融庁 報道資料(2020. 4. 10)

다. 중국

■ 은보감회는 보험회사가 피해 지역, 피해 기업 및 피해 개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험서비스 제공을 권장함⁷²⁾

- (피해 지역의 원활한 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시휴업, 영업시간 조정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고객에게 알리고 이용 가능한 대체 수단을 안내함
- (피해 고객에 대한 보장 제공) 보험상품의 보장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해 코로나19 피해를 보상하고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청구를 우선적으로 처리함
- (방역 관련 개인 및 기업에 대한 보장 강화)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있는 의료진에 대해 상해보험, 건강보험, 양로보험, 의료보험을 제공하며, 피해 기업에 대해 보험료 감면, 보험료 납부기간 연장을 제공하고 영세중소기업의 생산, 경영활동에 필요한 다양한 보장서비스를 강화함
- (농업 생산 관련 위험에 대한 보장 제공) 농업 생산에 필요한 농업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함
- (IT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 혁신)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고 원격기술을 활용한 비현장 사고 사정 방식을 이용해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게 처리함

라. 대만

■ (보험업 법정감염병 대응조치 적용) 2020년 1월 22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됨에 따라 보험회사가 『보험업 법정감염병 대응조치』⁷³⁾에 따라 관련 조치를 시행하도록 발표함⁷⁴⁾

- 동 대응조치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0800무료전화 개통, 코로나19 방역 홍보 강화, 보험금 지급 신속 처리 등과 같은 조치를 시행해야 함

72)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1), “关于加强银行业保险业金融服务配合做好新型冠状病毒感染的肺炎疫情防控工作通知”;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2), “中国银保监会办公厅关于进一步做好疫情防控金融服务的通知”

73) 동 규정은 사스가 발생한 이후 2014년에 제정됐으며 보험회사의 법정감염병 대응조치를 명시하고 있음

74) 金融监督管理委员会(2020. 1), “金管會督導保險業啟動因應法定傳染病相關應變措施事宜”

- 또한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가 보험상품 보장범위에 포함되지 않아도 위로금이나 기타 형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함
- (사이버보안 강화 요구) 2020년 2월 21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 관련 사이버해킹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보험회사에게 사이버보안 강화를 요구함
 - 재택근무 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보안 취약점, 코로나19 정보로 사칭한 이메일 및 악성프로그램을 주요 위협 대상으로 제시함
 - 또한 2020년 5월 4일 대만 금융보안원이 발표한 보안 위협과 대응방안에 따라 사이버보안을 강화하도록 명시함
- (신형상품 인정기준 수정) 2020년 2월 30일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가입자가 코로나19에 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정감염병의 면책기간을 취소하거나 줄이는 상품을 기존 허가제 대신 등록제로 판매할 수 있다고 허용함⁷⁵⁾
- (불필요한 출국 및 모임 자제 권고)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코로나19의 감염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의 직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출국 시 상세일정 보고를 요구하며, 100명 이상의 실내 모임과 500명 이상의 실외 모임을 금지함⁷⁶⁾
-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관련 규제 완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임대료 감면 행위를 장려하기 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자산의 인정 기준을 완화함⁷⁷⁾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의 임대료를 감면하는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임대료 및 수익률이 부동산 자산 인정 기준에 미달해도 해당 부동산을 부동산 자산으로 인정하도록 규정함
- (보험 서비스 강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는 보험회사에게 홈페이지에서 보험료 납입 유예, 약관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처리와 같은 보험서비스를 공시하도록 요구함⁷⁸⁾

75)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金管會就保險業者針對「嚴重特殊傳染性肺炎」推出縮短或取消等待期間醫療保險商品之說明”

76)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109年3月18日函請周邊單位及保險相關公會轉知所屬會員, 各機構人員自即日起至嚴重特殊傳染性肺炎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解散之日止, 平日、假日 出國均應明確填報或使所屬機構知悉所前往國家、地區(含轉機)”;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109年3月25日函請保險相關公會轉知所屬會員, 將中央流行疫情指揮中心宣布即日起, 室內超過100人以上、室外超過500人以上的公眾集會活動建議停辦, 以減低社區感染的風險”

77)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衝擊, 金管會近期將發布「保險業辦理不動產投資有關即時利用並有收益之認定標準及處理原則」之相關暫行措施”

마. 유럽

■ (EIOPA: European Insurance and Occupational Pensions Authority) 유럽보험연금 감독청(EIOPA)은 코로나19가 EU 보험 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 및 성명을 발표하고,⁷⁹⁾ 연차보고 및 분기별 보고, 지급여력 및 재무상태 보고와 관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권고함⁸⁰⁾

- 사업 연속성을 위해 2019년 말 감독 보고 및 공개 시기 유예, Solvency II 영향 평가 마감일을 2020년 6월 1일로 연장함
- 지급여력 및 자본 관련 Solvency II에 따라 EU 보험회사들은 지급여력 자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충분한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야 함
- 배당금 분배 및 임원 보너스(Variable Remuneration) 정책⁸¹⁾
 - 기업 배당 일시 중지 및 임원 보너스 지급을 제한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보호 및 잠재적 손실에 대비하여 충분한 자기자본을 지속적으로 보유하기 위한 모든 조치들을 취하여야 함

■ (영국) 영국보험협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보험소비자 보호를 위해 여행보험 관련 권고 사항을 발표하였으며, 금융감독당국과 건전성규제당국은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Solvency II 관련 규제를 완화함

- (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여행보험을 제공하는 모든 회원 보험사들에게 코로나19 기간 중 해외여행자들에 대한 지원을 제공할 것을 권고하고, ABI 회원 보험사는 보험계약자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수행해야 함⁸²⁾
 - 취소된 여행 및 해외여행과 관련 보상을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
 - 취소 및 여행 중단으로 인한 발생 비용에 대해 여행 보험금 청구를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처리해야 함

78)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金管會保險局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COVID-19)防疫措施專區, 專區說明”

79) EIOPA(2020. 3. 17), “EIOPA statement on actions to mitigate the impact of Coronavirus/COVID-19 on the EU insurance sector”

80) EIOPA(2020. 3. 20), “Recommendations on supervisory flexibility regarding the deadline of supervisory reporting and public disclosure - Coronavirus/COVID-19”

81) EIOPA(2020. 4. 2), “EIOPA statement on dividends distribution and variable remuneration policies in the context of COVID-19”

82) ABI(2020. 3. 4), “Coronavirus - travel insurance pledges by ABI travel insurance members”

- 여행 계획 변경 시 여행보험 변경조치 등임
- (FCA: Financial Conduct Authority) 영국 금융회사 영업행위감독당국은 보험회사들이 고객 처우와 관련하여 유연성을 발휘할 것을 촉구하고⁸³⁾ 보험소비자들을 위하여 보험 상품별 보장 및 갱신 등과 관련한 정보를 공개함⁸⁴⁾
 - 보험회사들이 탄력적 운영, 비즈니스 연속성, 직원 결근 등과 같은 예상 가능한 모든 문제에 대해 계획을 수립하고, 보험소비자 보호에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 FCA에 통보할 것을 요구함
 - 여행보험, 자동차보험, 주택 및 개인 의료보험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
- (PRA: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BoE: Bank of England) 보험회사들은 최근 몇 주간의 국채 수익률 하락에 따라 건전성 규제 위원회(PRC: Prudential Regulation Committee)에 Solvency II 규제의 완화를 요청하였으며,⁸⁵⁾ BoE는 EIOPA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Solvency II 관련 보고 기한을 연장함⁸⁶⁾

■ (이탈리아) 이탈리아 보험당국 및 보험감독자협회는 보험소비자의 불만사항 및 정보처리 요청과 관련한 응답 기한 요건을 완화하고, 각종 문서의 제출 기한을 연장함

- (IIA: Italian Insurance Authority) 이탈리아 보험당국은 불만사항 및 정보요청 처리 기간 등 규제 요건을 완화하고 규제 문서 및 보고서 제출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지침 및 공지를 발행함⁸⁷⁾
- (IVASS: Italian Institute for the Supervision of Insurance) 이탈리아 보험감독자협회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함⁸⁸⁾
 - 보험 유통망 보고서 제출 기한을 2020년 3월 29일까지로 연장함
 - 주택보험 시행일을 2020년 7월 1일로 연기함
 - 고객 불만사항에 대한 응답 기한은 45일에서 75일로, 고객 정보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은 20일에서 35일로 연장함⁸⁹⁾

83) FCA(2020. 3. 19), "Insurance and coronavirus (Covid-19): our expectations of firms"
 84) FCA(2020. 3. 19), "Insurance and coronavirus (Covid-19): information for consumers"
 85) The World Bank Group(2020. 3. 29), "COVID-19 Outbreak: Insurance Implications and Response"
 86) BoE(2020. 3. 23), "Covid-19 regulatory reporting amendments"
 87) The World Bank Group(2020. 3. 29), "COVID-19 Outbreak: Insurance Implications and Response"
 88) IVASS(2020. 3. 17), "COVID-19 emergency: first measures in favour of insurance market operators"
 89) IVASS(2020. 3. 23), "COVID-19 Emergency - extension of the periods for managing complaints and enquiries"

- (스페인) 스페인 농작물 보험청(ENESA: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isheries and Food, the State Entity of Agrarian Insurance)은 2020년 4월 16일 이전 종료 예정인 농업보험 가입 기간을 20일 연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와인 제조, 체리, 사료 작물, 공업용 섬유 및 무농약 작물, 테이블 포도의 생산 및 생산 지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⁹⁰⁾

- (프랑스) 프랑스 정부는 세금 등의 납부 기한을 유예하였으며, 프랑스 금융감독원(ACPR)은 보험회사의 우선순위 지정 및 배당금에 대한 제재 조치를 실시함
 - (프랑스 정부) 세금 및 사회보장기금 납부 기한을 2020년 3월까지 연장하였으나 납입 유예된 세금 및 분담금은 적용되지 않음
 - (ACPR: The Autorité de contrôle prudentiel et de résolution) 프랑스 건전성 통제 및 정리 당국은 보험회사의 보고 기한을 연장하고 보험소비자 보호를 강조하였으며, 업무 연속성을 위해 자본금 요건을 우선순위로 두고 2020년 10월 1일까지 배당금 지급을 중단할 것을 발표함⁹¹⁾
 - (FFA: Fédération Française de l'Assurance) 프랑스 보험협회는 17억 7,500만 유로의 연대 기금을 마련하고 그 중 1억 5,000만 유로를 여행보험에 지원하는 등 보험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프랑스 정부와 연계하여 향후 전염성 질병에 대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 마련에 착수함⁹²⁾

- (독일) 독일 연방 금융감독청(BaFin: Bundesanstalt für Finanzdienstleistungsaufsicht)은 추가 공지가 있을 때까지 보험회사의 감사를 시행하지 않으며, EIOPA의 권고에 따라 감독보고 일정 및 Solvency II 영향 평가를 연기함⁹³⁾

90) The World Bank Group(2020. 3. 29), "COVID-19 Outbreak: Insurance Implications and Response"

91) ACPR(2020. 5. 7 업데이트), "Communications de l'ACPR dans le contexte de la pandémie Covid-19"

92) FFA(2020. 4. 30 업데이트), "Coronavirus COVID-19 et assurance"

93) BaFin(2020. 4. 7), "Aktuelles zum CoronaVirus"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⁹⁴는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다음을 권고함⁹⁵)

- 생명보험회사와 손해보험회사는 각 보험산업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위기를 극복하고 보험가입자 응대 시에 유연성 권고함
 - ASIC는 보험가입자가 보험료를 미납하였을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으로 보험을 해지하지 말고 납입 유예 기간을 주기를 권고함
- 보험회사는 지역 내 의료관리자 또는 전문가와의 화상 상담 등을 통해 우선적이고 즉각적으로 보험금 청구와 민원을 처리 권고함
- 보험회사가 가입자의 보장내역, 전염병에 대한 면책 사항 등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자세한 상담을 권고함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건전성감독청(APRA)⁹⁶는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보험회사가 퇴직연금수탁자의 단기투자전략을 검토하고, 퇴직연금을 목적에 맞게 조정하기를 권장함⁹⁷)

- 증권투자위원회와 건전성감독청은 보험회사에게 퇴직연금의 유동성이 적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권고함
- 호주 퇴직연금 조기 인출과 관련한 보험사기피싱으로 퇴직연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험회사는 규제당국과 함께 이에 대응하도록 권고함
-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와 건전성감독청은 신탁관리자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에 대응할 여력이 생길 때까지 신규 규제를 도입하지 않기로 함

94) Australian Securities & Investments Commission

95)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https://asic.gov.au/about-asic/news-centre/articles/covid-19-information/>

96) Australian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97) 호주 증권투자위원회, <https://asic.gov.au/about-asic/news-centre/articles/asic-and-apra-letter-to-superannuation-trustees-on-impact-of-covid-19/>

2) 싱가포르

- 2020년 3월 31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⁹⁸⁾은 생명 및 건강보험회사에게 보험료 납입 연장을, 일반 보험회사에게는 각 계약자별 상황에 맞게 보험료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권고함⁹⁹⁾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보험회사에게 코로나19로 인해 보험료 납입이 어려운 생명 및 건강보험 계약자들의 경우 최대 6개월까지 납입 연장을 해주도록 권고함
 - 또한,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재산 및 자동차 관련 일반 보험 가입자들의 경우 보험료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손해보험회사와 건강보험회사 설계사들의 자격시험 응시기간을 연장하고, 전문가 개발 요건(Professional Development Requirements) 기준을 경감시켜 줌¹⁰⁰⁾
 -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4월 9일~5월 5일 기간 동안 설계사 자격시험이 중단되었으며, 이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은 자격시험을 응시 기간을 고용시점으로부터 6개월로 유예시켜 줌
 - 보험회사들이 설계사 교육 시 비디오 컨퍼런스와 같은 비대면 매체를 활용하도록 함

98) 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99)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mas-and-financial-industry-to-support-individuals-and-smes-affected-by-the-covid-19-pandemic>

100)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 <https://www.mas.gov.sg/regulation/faqs/faqs-on-relief-measures-relating-to-covid-19-situation-gi-health-cpd>

Ⅲ. 보험회사 영향 및 대응

1. 보험산업 영향

가. 미국

- (손실 규모) Willis Towers Watson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미국과 영국 손해보험시장의 보험손실 규모는 코로나19가 6개월 내에 점진적으로 완화될 것을 가정할 경우 약 32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됨¹⁾
 - 기업휴지·행사취소보험은 정부의 입장 강제폐쇄명령 및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청구가 증가하여 59~113억 달러 손실이 예상되는 등 단기 손실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됨
 - 의료 및 건강관리업종 종사자의 코로나19 노출리스크가 증가함에 따라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의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약 69억 달러의 손실 발생이 추정됨
 - 기업의 직원 확진자 정보 노출, 근무시간 단축, 해고 등의 사유로 기업의 고용관련 배상책임보험의 청구가 늘어나 약 13~16억 달러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됨
 - 코로나19 방지를 위한 사업장의 부적절한 대처 등의 이유로 일반배상책임보험(요양병원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포함)의 손실 또한 7억 2,200달러 수준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됨
 - 자동차보험의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차량운행이 감소하면서 개인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금 지급이 403억 달러 감소하고, 상업용 자동차보험의 경우 66억 달러의 보험금 지급 감소가 예상됨

1) Willis Towers Watson(2020. 5), "Scenario Analysis of the COVID-19 pandemic"

〈표 1〉 미국 - 코로나19로 인한 손해보험종목별 영향 추정

보험 종목	2020년 보험료 예상	보험금 청구 영향
기업휴지 및 행사취소보험 (BI & Contingency)	보험료 9.9% 감소 예상	59~113억 달러 손실 예상
근로자 재해보상보험 (Workers' Compensation)	보험료 18% 감소 예상	69억 달러 손실 예상
고용배상책임보험(EPL)	점진적 감소 예상	13억~16억 달러 손실 예상
일반배상책임보험	보험료 6% 감소 예상	7억 2,200달러 손실 예상
자동차보험	(개인용) 160억 달러 환급 예상 (상업용) 7억 달러 환급 예상	(개인용) 403억 달러 손실감소 예상 (상업용) 66억 달러 손실감소 예상

주: 1) '중간 시나리오(Moderate Scenario): 6개월 내 코로나19 점진적 완화' 기준 추정치임

2) 코로나19로 인한 손실 규모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손해보험 종목 위주로 소개함

자료: Willis Towers Watson(2020. 5), "Scenario Analysis of the COVID-19 pandemic", p. 24를 재구성함

나. 일본

■ (생명보험 영업실적) 일본 생명보험업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저축성보험과 종신보험의 영업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2019년 4/4분기 외화보험 영업실적이 외국채권 수익률 하락과 방카슈랑스 판매 중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0% 감소하고, 종신보험도 약 40% 감소할 전망이다²⁾

■ (순이익) 다이이치(第一)생명홀딩스 사장은 금융시장 혼란에 의한 금리 및 주가 하락의 영향으로 2019년도 당기순이익이 10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 (해외사업) 니혼(日本)생명은 호주 자회사인 MLC가 코로나19와 호주 금융당국의 소비자 보호조치로 인하여 보험금 지급 등이 증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함³⁾

■ (비대면 영업 전환) 대형 생명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침에 따라 대면영업을 자제하고 비대면영업을 확대할 것을 검토하고 있음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은 2020년 5월 7일부터 저축성상품을 제외한 보장성상품에 대한 영업방식을 대면에서 비대면방식으로 전환하였으며, 니혼(日本)생명, 다이이치(第一)생명도 비대면 영업방식을 허용할 전망이다⁴⁾

2) 日本經濟新聞(2020. 5. 12)

3) 日本經濟新聞(2020. 3. 18)

- (Moody's 평가) Moody's는 일본 생명보험업계의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변경함⁵⁾
 - 코로나19 사태 이후 국내외 자본시장 불확실성 확대 등이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임
 - 특히, 자본시장 변동성이 증가하여 일본 생명보험회사의 자본은 향후 1년에서 1년 6개월 사이에 축소될 가능성이 있음
 - 일본 생명보험회사들은 국내주식과 외국채권, 외환 등 다양한 위험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주식시장 하락 및 급속한 엔고 발생 시 큰 영향을 받기 쉬운 구조임
 - 다만, 생명보험 수입보험료는 대규모 장기 보유계약 때문에 신계약이 급감하더라도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전망됨

- (Fitch Ratings 평가) 그러나 Fitch Ratings는 코로나19가 일본 국내 보험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함⁶⁾
 - 일본은 코로나19 감염자가 상대적으로 적고, 공적건강보험에 의한 보장률이 높아 민간 보험회사가 인수할 리스크가 적음
 - 민영 의료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상 입원급부금 지급 시 금액과 기간 등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임

다. 중국

- (수입보험료) 2020년 1/4분기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6%p 하락한 2.3%에 그쳤음⁷⁾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각각 2019년 1/4분기에 비해 각각 15.3%p, 7.0%p 낮아진 2.7%, 0.3%로 하락함
 - 생명보험 중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유배당보험 및 연금보험 수입보험료는 도시 봉쇄 방역

4) 日本經濟新聞(2020. 5. 2)

5) Moody's(2020. 4. 9)

6) 日本經濟新聞(2020. 3. 18)

7)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4), “2020年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9. 4), “2019年1-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조치로 인한 은행 채널의 판매 위축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9%, 13.8% 감소함⁸⁾

- 손해보험 중 자동차보험 수입보험료는 자동차 판매량 급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함
- 2020년 1/4분기 자동차 판매량은 36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2.4% 급감함⁹⁾

■ (지급보험금) 2020년 1/4분기 중국 보험산업 지급보험금은 정부의 코로나19 치료비 부담 및 기업휴지보험의 낮은 가입률로 전년 동기 대비 8.6% 감소했음¹⁰⁾

-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율은 각각 2019년 1/4분기 -6.1%, 15.9%에서 -38.1%, -11.7%로 하락함
- 중국 생명보험회사는 감독당국 권고에 따라 코로나19를 기판매 생명보험의 보장범위에 포함시켰지만 금액이 크지 않은 사망보험금 및 입원일당만을 제공함
-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중 치사율은 5.6%에 불과함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 및 운송보험이 거의 없어 코로나19로 인한 보험금 지급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자동차 이용 감소로 자동차보험 보험금 지급은 감소함¹¹⁾
- 확산 이후에 코로나19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은 25개가 출시됐지만 중국 기업의 기업휴지보험에 대한 낮은 인식으로 가입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보임
- 다만 손해보험 중 신용보험 및 보증보험 지급보험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증가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임¹²⁾

■ (당기순이익) 2020년 1/4분기 중국 상위 보험회사인 중국인수생명 및 중국 평안보험의 당기순이익은 금리 및 주가 하락에 따른 투자수익률 하락으로 각각 전년 동기 대비 34.4%, 42.7% 하락함¹³⁾

- 2020년 1/4분기 중국인수생명 및 중국평안보험의 자산운용 투자수익률은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6%p, 1.7%p 하락한 5.1%, 3.4%로 낮아졌음

8) 慧保天下(2020. 4), “疫情下分险红锐减17% 车险降近3% 谁才是保险业增长极?”

9) 经济观察报(2020. 4), “一季度汽车销量下滑42.4% 中汽协担忧需求端受损”

10) 亚洲金融合作协会(2020. 2), ““新冠肺炎”对保险业的短期冲击和长期机遇”

11) 上海证券报(2020. 3), “保险业推出营业中断险 25款产品护航企业复工”; 证券日报(2020. 3), “1月份保费收入同比增6.8% 车险赔付同比降15%”

12) 中国智库网(2020. 4), “朱俊生:新冠肺炎疫情对保险业的影响及建议”

13)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20. 4), “2020年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中国银行保险监督管理委员会(2019. 4), “2019年1-3月人身险公司经营情况表”

- (시장전망) 중국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성장세는 2020년 1/4분기에 둔화됐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면서 2/4분기에 개선될 것으로 전망함¹⁴⁾
 - 보험설계사 및 은행 채널의 보험판매는 1월 하순부터 2월 말까지 도입된 도시 봉쇄 방역 조치로 제한받았지만 2월 하순부터 생활 방역 조치기 시행되면서 재개됨
 - 2020년 3월 보험산업 수입보험료 증가율은 전년 동기 대비 5.2%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가장 심한 1~2월 수입보험료 증가율인 1.1%에 비해 4.1%p 확대됨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온라인보험 가입 증가 및 건강보험에 대한 수요 상승은 앞으로 생명보험시장의 성장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평가됨
 - 2020년 1/4분기 4개 온라인전문보험회사를 기준으로 집계된 온라인보험 수입보험료 및 건강보험 수입보험료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75.3%, 21.5% 증가한 바 있음
 - 4월부터 자동차 판매량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면서 손해보험에서 약 70%를 차지하는 자동차보험은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함
 - 2020년 4월 중국 자동차 판매량은 207만 대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하면서 21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을 기록함¹⁵⁾
 - 2018년 기준 중국의 보험밀도 및 침투도가 각각 295유로, 3.6%로 세계평균 수준(614유로, 5.4%)보다 매우 낮아 이는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잠재력이 높은 것을 의미함¹⁶⁾

14) 中国金融新闻网(2020. 5), “疫情影响减弱二季度保费收入有望继续回暖”

15) 21世纪经济报道(2020. 5), “4月汽车销量同比增长4.4%结束21个月连续下滑”

16) 经济观察报(2020. 4), “一季度汽车销量下滑42.4% 中汽协担忧需求端受损”

라. 대만

■ (수입보험료) 2020년 1/4분기 코로나19의 영향은 생명보험과 손해보험에서 다르게 나타남¹⁷⁾

-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는 7,832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1% 감소한 반면,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480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함
 - 생명보험 중 유일하게 증가세를 유지하는 건강보험은 의료수요 증가, 장기요양에 대한 인식 상승 및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으로 신계약보험료 기준 99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8.3% 증가함
 - 손해보험 중 유일하게 감소세를 보여주는 항공보험은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사의 운항 급감 및 작년 12월에 발생한 민항사 파산으로 총수입보험료 기준 1.3억 대만달러로 전년 대비 41.2% 감소함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채널의 판매 위축 및 시장금리 하락에 따른 연금보험 매출 감소는 이번의 생명보험 총수입보험료 감소의 주요 원인임
 - 2020년 1/4분기 연금보험 신계약보험료는 763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9% 하락함
-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보험 판매가 2월부터 감소했지만,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의 증가에 힘입어 손해보험은 증가세를 유지함
 - 2020년 1/4분기 자동차보험 및 상해보험 총수입보험료는 각각 234억 대만달러, 119억 대만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3%, 10.9% 증가함

■ (여행자보험의 보험금 지급) 2020년 1/4분기 코로나19로 인한 여행자보험의 지급보험금은 3,622만 대만달러를 기록함¹⁸⁾

- 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해외 여행경보가 발령되면서 여행 계획 변경, 취소나 단축이 발생했기 때문임

■ (환헤지 손실) 2020년 1/4분기 보험회사의 환헤지로 인한 투자손실은 817억 대만달러를 기록함¹⁹⁾

17) 現代保險(2020. 4), “疫情助攻第1季僅健康險正成長”; 現代保險(2020. 4), “受疫情影響今年首季航空險保費大跌4成”

18) 卡優新聞網(2020. 5), “旅遊禁團令衝擊產險首季理賠金破3500萬”

19)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4), “109年3月保險業兌換損益、避險損益與外匯價格變動準備金情形”

○ 이는 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해외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임

■ (시장전망) 무디스(Moody's)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의 영향으로 대만 생명보험업에 대한 전망을 부정적으로 유지함²⁰⁾

- 생명보험회사의 주력상품인 저축보험 및 연금보험의 신규 판매는 코로나19로 인한 시장 금리 하락으로 어려워질 것으로 보임
- 해외투자 비중이 약 70%를 차지하는 생명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로 안정적인 수익은 힘들 것으로 예상됨

마. 유럽

■ 런던 재보험사인 로이드(Lloyd's)는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보험산업의 보험영업 및 투자 손실이 2,030억 달러(1,660억 파운드)에 달할 것으로 예상함²¹⁾

- 팬데믹으로 인한 보험금 지급 예상액은 총 1,070억 달러이며, 보험회사의 투자 포트폴리오 손실 금액은 960억 달러 수준일 것으로 예측됨
- 2020년 이벤트 취소보험 및 재산보험, 여행보험에서 280억 달러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임원배상책임보험,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및 신용보험에서 추가 보험금 청구가 예상됨

■ 로이드는 코로나19의 사회·경제적 영향과 그 규모 및 복잡성으로 전 세계 손해보험산업의 손실이 역사적 사건들의 손실을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함

- 코로나19 영향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 외에도 1,500만 파운드의 지원금을 마련하였으며, 단기 및 중·장기적으로 고객 지원 및 경제 회복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로이드의 자문위원회와도 협력 중임
 - ‘리커버 리(Recover Re)’라고 불리는 팬데믹 관련 사업회복 사후보장 수단이 검토되고 있음

20) 中央社(2020. 5), “疫情引發經濟衝擊 穆迪維持對台壽險負向展望”

21) Lloyd's(2020. 5. 14), “COVID-19 will see historic losses across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로이드의 예상 손실액은 다른 예측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며,²²⁾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기타 예측들이 있음

- Willis Towers Watson²³⁾은 락다운(Lockdown) 조치가 1년 동안 지속되는 경우, 미국과 영국 보험시장이 800억 달러의 손실을 입게 될 것으로 예상함(2020년 5월 1일)
- UBS²⁴⁾는 보험 손실액이 300억 달러에서 6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함(2020년 4월 24일)
- Allianz는 코로나19로 인한 알리안츠의 손해가 10억 유로(약 10억 7,939만 달러) 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측함²⁵⁾
- 영국보험협회(ABI: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여행보험에서만 최소 2억 7,500만 파운드(약 3억 1,900만 달러)의 보험금 지급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며,²⁶⁾ 개인 및 기업에 대해 12억 파운드(약 14억 6,900만 달러) 이상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함²⁷⁾

22) Insurance Post(2020. 5. 14), "Covid-19 will cost insurance industry \$203bn, says Lloyd's"

23) 런던에 본사를 둔 글로벌 리스크 관리 및 보험 중개, 자문회사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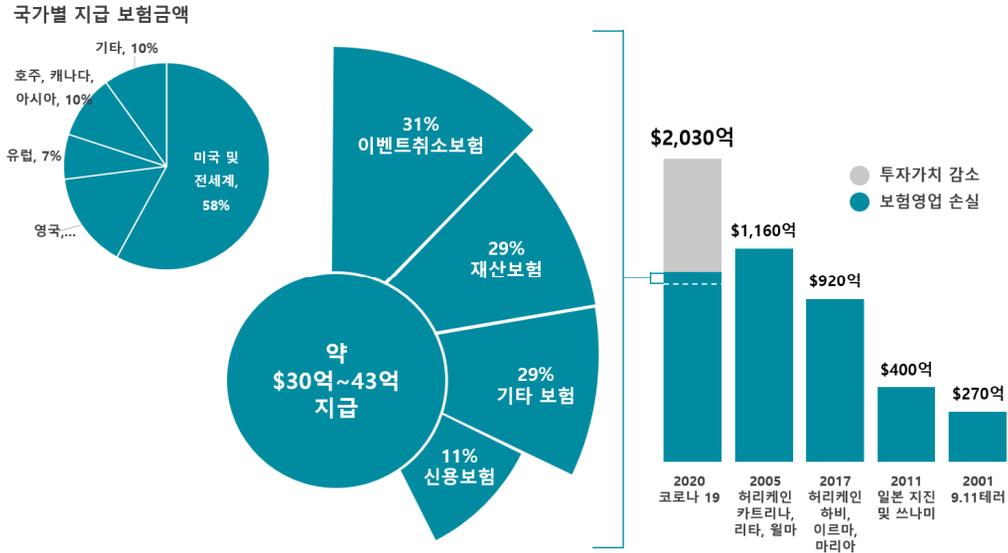
24) 스위스 연방은행과 스위스 은행의 합병으로 탄생한 스위스의 금융 그룹임

25) Insurance Post(2020. 5. 12), "Allianz CFO outlines potential €1bn plus Covid-19 hit"

26) ABI(2020. 3. 24), "COVID-19 - Travel insurers expect to make record payouts to customers"

27) ABI(2020. 4. 25), "Covid-19: Payouts of over £1.2 billion likely to be made to customers according to latest estimate from the ABI"

〈그림 1〉 코로나19에 대응한 Lloyd's의 사업 지원



자료: Lloyd's(2020. 5. 14), "COVID-19 will see historic losses across the global insurance industry"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건강보험) 호주 연구기관(Australia Institute)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민간건강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에 따라 향후 6개월간 35억~55억 호주 달러 정도의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함²⁸⁾

○ 보험가입자는 평균적으로 500~750호주 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인해 진료를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민간건강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이 감소함

■ (여행자보험) 호주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여행을 취소한 가입자들의 여행자 보험료 환불 요청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음

28) 호주 연구기관(<https://www.tai.org.au/content/private-health-funds-reap-5-billion-pandemic-windfall>)

- 호주 정부의 해외여행 금지 조치로 인하여 여행자 보험상품의 보험료 환급 신청이 120억 달러를 기록함²⁹⁾

2) 싱가포르

■ (생명보험)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생명보험산업에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함께 미칠 것으로 전망됨³⁰⁾

- 코로나19로 소비자들의 신규 보험 가입 건수는 오히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Swiss Re 설문조사에 따르면 코로나19 발병 이후, 설문대상자 중 신규 보험가입의 향은 31% 증가하였으며, 신규로 보험가입한 소비자는 16% 증가하는 등 보험수요가 증가함³¹⁾
- 한편, 정부의 서킷 브레이커 조치, 실업률 상승, 경기 침체 예상 등은 생명보험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2020년 1/4분기 신규수입보험료는 신규 상품개발 및 활발한 프로모션으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9억 6천 6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하였지만, 코로나19로 12억 1천 5백만 싱가포르 달러를 기록한 2019년 4/4분기 대비 21% 감소함

■ (손해보험) AM Best 보고서에 따르면, 싱가포르 손해보험은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긍정적·부정적 요인이 모두 존재하지만 부정적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됨³²⁾

- 2019년 싱가포르 손해보험 영업실적은 사상 처음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한 데 이어, 2020년 초 코로나19 발병으로 인해 손해보험 영업실적이 더욱 악화됨
- (자동차보험) 코로나19로 자동차 대리점 영업이 중지되고 면허증 발급이 중단되면서 자동차보험 상품 판매는 감소한 반면, 교통사고는 줄어들면서 자동차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이 감소함

29) 호주 보험신문(<https://www.insurancenews.com.au/daily/calls-for-travel-premiums-to-be-refunded>)

30)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https://www.lia.org.sg/news-room/industry-performance/2020/life-insurance-industry-achieves-20-per-cent-increase-in-sa-for-q1-2020/>)

31) Swiss Re(2020. 4. 29), "COVID-19 Consumer Survey Singapore", <https://www.swissre.com/dam/jcr:5235c471-991f-4857-bd29-5973cfaa8270/covid19-infographic-apac-singapore.pdf>

32) AM Best(2020. 4. 27), "Singapore Non-Life Insurance: COVID-19 Impacts Add to Deterioration in Underwriting Results"

- (건강보험) 고령화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의료비 청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서킷 브레이커 조치에 따른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감소함에 따라 의료비 청구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여행자보험) 2019년 싱가포르 손해보험 총수입보험료의 5%를 차지한 여행자 보험상품이 여행금지 조치로 인해 판매율이 급격하게 감소함

■ (납입 연장 영향) 싱가포르 통화감독청이 생명 및 건강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납입기간을 연장해줌에 따라, 가입자들의 납입 연장 요청 건수가 늘어났지만, 보험회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임³³⁾

- CNA에 따르면, 2020년 5월 17일 기준 AIA 보험회사는 6,100건, Great Eastern 보험회사는 2,800건, Manulife 보험회사는 500건의 납입 연장 요청이 접수된 걸로 나타남³⁴⁾
- 보험회사 관계자들과 금융서비스 자문가는 납입 유예 기간의 연장일 뿐, 보험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전망함

33)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 /id/61783/Type/eDaily/Singaporeans-flood-life-insurers-with-premium-deferment-applications](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783/Type/eDaily/Singaporeans-flood-life-insurers-with-premium-deferment-applications))

34) Channel News Asia(CNA)(<https://www.channelnewsasia.com/news/singapore/thousands-seeking-to-defer-payments-of-insurance-premiums-video-12743208>)

2. 상품개발 및 보장확대

가. 미국

■ (지수형 보험) 코로나19로 전염병 관련 보장에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 시 사전에 정한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할 때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의 발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³⁵⁾

- (장점) 전염병 등으로 전 세계에서 손실이 발생하여도 사전에 정해진 금액만을 지급하므로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에 어려움이 적으며,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보상 여부가 결정되므로 복잡한 손해사정절차가 없어 불필요한 법적·행정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음
- (한계점) 실제 손실과 지급보험금의 차이인 베이스 리스크(Basis Risk)를 줄여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으며, 과거 데이터 부족으로 전염병 위험을 보험료에 정확히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존재함

■ (여행보험) 뉴욕주의 권고(2020. 3. 6)³⁶⁾에 따라, 일부 보험회사는 전염병 사유를 포함하여 어떤 이유로든 여행을 취소할 수 있는(CFAR: Cancel For Any Reason) 여행보험 상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함

- CFAR 여행보험은 보험료가 표준여행보험의 보험료에 비해 40~60% 정도 높지만, 전염병 등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 여행경비의 50~75%를 보험금으로 지급함
- Allianz, Nationwide, Starr Indemnity, Berkshire, Crum & Forster, Zurich의 6개 보험회사가 CFAR 여행보험 상품을 제공하기로 합의함

35) Willis Towers Watson(2020. 5), "Scenario Analysis of the COVID-19 pandemic", pp. 112~113

36) DFS(2020), *Insurance Circular Letter*, No. 4

나. 일본

■ 일본 생·손보업계는 금융청의 요청(2020. 3. 13)과 정부의 긴급 경제대책(2020. 3. 7)에 따라 보험계약자 보호와 고용유지 대응책을 마련함³⁷⁾

- (보험료 납입 유예기간 연장) 계약자가 요청할 경우 생명보험보험료 납입 유예기간을 보험상품에 따라 최대 6개월간 연장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함
- (계약갱신기한 연장) 보험계약자가 3월 16일 이후 도래한 계약갱신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워 갱신기한 연장을 신청할 경우 갱신일자를 조정하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함
 - 또한 계약 갱신일을 경과한 경우에도 보험계약자가 신청하면 갱신일을 소급하여 절차를 진행함
- (보험금 등 청구 절차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 보험금, 급부금, 해약환급금, 약관대출 신청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생략하는 등 서류 간편화를 실시함
- (재택근무, 고용유지) 정부의 고용유지 정책에 따라 보험회사 직원들에게 휴가 제공, 파트타임 근무, 교대근무, 재택근무를 적극적으로 장려함

■ 일본 생·손보업계는 금융청의 요청(2020. 4. 10)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보험약관을 확대 해석하여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³⁸⁾

- (재해사망금 지급) 생명보험업계는 사망보험 또는 종신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할 경우에 재해사망 보험금을 2배 지급하는 '배액지불제도' 적용 방안을 검토 중임
- (휴업보상금 지급) 손해보험업계는 휴업보상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 등이 계약자 본인, 종업원, 고객의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해 휴업할 경우, 2월부터 소급하여 휴업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임
- (보상여부 공시) 각 생명·손해보험회사들은 홈페이지 등에서 자사 판매 중인 보험상품에 대한 코로나19 감염 시 보상 확대 및 보상 여부를 공시하고 있음³⁹⁾

37) 日本生命保險協會 News Release(2020. 3. 17); 日本損害保險協會 News Release(2020. 4. 6)

38) 니혼생명 홈페이지(<https://www.nissay.co.jp/coronavirusoshirase/>), 도쿄해상 홈페이지(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company/news/200302_01.html)

39) https://www.nikkei.com/article/DGXMZO58726690R00C20A5XY0000/?n_cid=SPTMG002

다. 중국

- (기업휴지보험)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된 후, 조업 재개 과정에서 코로나19 재발로 인한 영업중지를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개발함⁴⁰⁾
 - 코로나19 확산 이전에는 기업휴지보험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거의 없거나 제공하더라도 코로나19로 비롯한 법정감염병을 보장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확산 이후 코로나19 까지 보장하는 기업휴지보험을 신규 개발함
 - 일부 보험회사는 기존의 기업보험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손실을 새롭게 포함시켰음
 - 저장성 닝보시(宁波市)에서 지방정부는 영세중소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기업휴지보험료의 50%까지 부담해줌

- (코로나19 특화상품 개발 금지) 은보감회는 질병 발생률, 의료비 통계 등 경험데이터 부족으로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 개발을 금지했으며, 기존 보험상품의 보장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하도록 권고함⁴¹⁾
 -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만을 보장하는 특화상품을 개발했지만 은보감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했으며, 대다수 보험회사는 은보감회의 권고를 고려해 기관매 보험상품의 보장 범위에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40) 财经网(2020. 4), ““营业中断险”后又推“复工复产险” 国内保险公司如何打算?”

41) 中国政府网(2020. 2), “国务院联防联控机制权威发布(2020年2月15日14时)文字实录”

라. 대만

- (건강보험)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가 법정감염병으로 분류되면서 코로나19까지 보장하는 건강보험 신상품을 출시함⁴²⁾
 - 푸본생명(푸본생명)은 법정감염병으로 인한 입원 및 사망을 보장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했고, 신광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장기 입원 시 생활보조금, 중환자실 입원 시 보조금과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대만생명은 법정감염병 확진자가 발생하면 위로금을 지급하는 건강보험을 출시함
- (개인손해배상보험) 푸본손보는 코로나19 확진자 및 격리 대상자를 보상하는 개인손해배상보험 신상품을 개발함⁴³⁾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입원일당 및 위로금을 지급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함
- (기업휴지급여보상보험) 푸본손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확진되거나 격리된 직원의 급여를 보장하는 신상품을 판매함⁴⁴⁾
 - 코로나19 확진자에게 건강보험료 산정에 사용된 월급만큼을 지급하며, 방역당국이 지정한 격리대상자에게 월급의 50%까지 지급함
- (기업휴지손실보상보험) 남산(南山)손보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영업 손실을 보장하는 신상품을 출시함⁴⁵⁾
 - 동 상품은 1년 만기 상품이며 최고 60만 대만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함

42)富邦人壽(2020. 3), “富邦人壽推全台首張法定傳染病定期健康險「金」放心”;新光人壽(2020. 4), “新壽推「活力單」醫療險 防疫有保障”;台灣人壽(2020. 4), “全民抗疫·台灣人壽推「安心365」防疫保單上市”

43)富邦產險(2020. 4), “富邦產險推出業界首創個人防疫保險商品 民眾若因法定傳染病須進行居家隔離將可獲得保障!”

44)富邦產險(2020. 3), “落實政府防疫措施 富邦產險率先推出「企業防疫薪資費用保險」減輕小型企業薪資負擔、維護員工受薪權益”

45)南山產物(2020. 3), “中小企業主的戰「疫」護盾! 南山產物推「金防疫」專案”

마. 유럽

- 전염성 질병 및 팬데믹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Marsh, Munich Re, Metabiota는 2018년 PathogenRX라는 상품을 출시하였으나,⁴⁶⁾ 이를 보유한 기업은 많지 않음⁴⁷⁾
 - 전염성 질병은 일반적으로 즉각적인 물리적 피해를 일으키지 않으며, 기업들의 전염성 질병으로 인한 잠재적 경제 손실을 측정할 방법이 없어 모델링하기가 어려우므로 이를 보장하는 보험 상품이 존재하지 않거나 보장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Marsh의 PathogenRX는 Metabiota의 전염성 질병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염성 질병 위험의 모델링이 가능하고 재정적 손실에 대한 보상이 가능하며 의료, 여행, 항공, 공공 기관, 스포츠 및 이벤트, 소매점 등의 가입이 가능함
 - 코로나19 확산 후 해당 상품에 대한 문의가 폭증함
- 영국에서는 Hiscox가 전염병으로 인한 강제폐업의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어 대규모 소송이 준비 중임⁴⁸⁾
 - Hiscox 외에도 Allianz, RSA, Ecclesiastical, QBE, Axa, Zurich 등이 기업휴지 보험에 대한 보험금 청구를 거부하여 잠재적 소송 가능성이 존재함⁴⁹⁾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호주 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는 각 보험상품별로 코로나19 관련 보장사항을 밝힘⁵⁰⁾

46) Marsh 홈페이지(<https://www.marsh.com/us/campaigns/pathogenrx.html>)

47) Insurance Journal(2020. 4. 3), "This Insurance Would Have Helped in Coronavirus Crisis But Nobody Bought It"

48) The Guardian(2020. 4. 22), "UK firms plan legal action against Hiscox over Covid-19 insurance claims"

49) Insurance Age(2020. 5. 18), "Covid-19: Hiscox under fresh attack for back-tracking on BI claim"

50) 호주 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https://www.insurancecouncil.com.au/issues-submissions/covid-19>

- (여행자보험) 호주 정부의 여행 금지 조치로 많은 보험회사는 해외여행 보험상품 판매를 중단하였고, 일부 보험회사만이 2020년 후반에 여행자 보험상품 판매를 재개할 계획임
- (기업휴지보험) 대부분의 보험회사가 2005년 SARS 발병 이후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은 면책사항으로 포함시켜 코로나19 관련 보험금 지급이 불가능함
- (별장보험) 보험회사는 별장보험(Holiday Home Insurance) 가입자의 경우, 호주 정부의 폐쇄조치와 여행 금지 조치로 인해 방문을 못하게 됨에 따라, 최대 미사용 기간을 연장시켜 주기로 함
- (임대인보험) 일부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정부 조치, 경제 침체 등으로 임차인이 재정적으로 어려워 채무 불이행을 할 경우 임대인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임대인 보험상품을 개발함
- (소비자신용보험) 코로나19로 인해 질병, 상해, 실직, 사망 시, 각 개인별 가입한 소비자 신용보험(Consumer Credit Insurance)의 보장범위에 따라 신용카드 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개인 대출 등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생명 및 건강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질병, 사망 등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힘
 - 개인별로 가입한 보험에 따라 보장범위는 다를 것임
- (주택보험 및 가재보험) 주택보험 및 가재보험은 코로나19에 특별한 영향을 받지 않음

■ (지침사항 변경) 2020년 5월 7일 호주 보험협회(ICA)는 코로나19로 인해 타격을 받은 기업과 개인을 위해 새로운 2020년 일반보험 지침사항(2020 General Insurance Code of Practice) 관련 변경 사항을 발표함⁵¹⁾

- 동 지침사항은 2020년 7월 1일부터 또는 그 이전에 보험회사가 소비자 관련 조항 중 파트9(재정적 취약 고객 지원)과 파트10(재정적 어려움)을 신속하게 도입하여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도와주도록 함
- 또한, 보험회사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제도를 만들어서 소비자들을 지원하도록 함
- 호주 보험협회는 보험회사가 2020년 일반보험 지침사항 중 우선적으로 소비자 지원 관련 조항을 도입할 수 있도록 다른 조항들은 2021년 7월 1일까지 도입하도록 유예기간을 줌

51) 호주 보험협회(ICA: Insurance Council of Australia), <https://www.insurancecouncil.com.au/media-centre>

2) 싱가포르

■ 싱가포르 AIA 보험회사는 가입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추가 보험 혜택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⁵²⁾

- (가입자격) 싱가포르 AIA 보험회사는 2020년 2월 17일~2020년 7월 31일 기간 동안 생명보험상품을 가입한 가입자들에게 코로나19 관련 추가적 보장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함
- 이 혜택은 싱가포르 시민권자들에게만 제공되며, 2020년 2월 17일 가입 이전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어야 함
- (보장혜택) 가입자가 코로나19로 사망할 경우 25,000싱가포르 달러를 일시불로 지급하고, 코로나19로 입원할 경우 일시불로 1,000싱가포르 달러를 지급함
- (보장기간) 2020년 12월 31일 또는 전염병 발발 대응 태세(DORSCON)⁵³⁾ 단계가 1단계⁵⁴⁾로 내려간 후, 30일 동안 보장해 줌

52) 싱가포르 AIA 보험회사(<https://www.aia.com.sg/en/campaigns-promotions/covid19-special-coverage.html>)

53) Disease Outbreak Response System Condition

54) 총 4단계로 1단계부터 초록색, 노란색, 오렌지색, 빨간색 순서임

3. 보험회사의 사회적 기여

가. 미국

- (코로나19 치료비) 미 건강보험회사(Aetna, Anthem 등)은 코로나19 치료비용의 계약자 본인부담금을 면제함⁵⁵⁾
 - (Aetna) 기존에 2020년 5월 31일까지 받은 입원 치료에 한정되었으나, 2020년 9월 30일까지로 적용 기간을 연장함
- (원격의료 지원) 미국의 건강보험회사들(Aetna, Anthem 등)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90일간 진료과목에 상관없이 원격의료 이용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원격진료를 받을 것을 권장함⁵⁶⁾
- (1차 의료 본인부담금 면제) Aetna는 메디케어 어드벤처지(Medicare Advantage) 보험계약자의 1차 의료(Primary Care) 진료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면제함
 - 2020년 5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적용되며, 보험회사와 계약된(In-network) 의료기관 이용에 한함
- (추가 지원) Aetna는 헬스케어 회사인 CVS와 제휴하여, 코로나19로 확진된 보험계약자에게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의약품이 포함된 구급상자를 제공함⁵⁷⁾
 - 개인 및 가정 청소용품도 포함되어 있어 집안의 다른 사람들이 코로나19 감염의 잠재적 위험으로부터 보호됨

55) Anthem, Press Release(2020. 4. 1), “Anthem Waives Cost Share for COVID-19 Treatment”, https://ir.antheminc.com/news-releases/news-release-details/anthem-waives-cost-share-covid-19-treatment?field_nir_news_date_value%5bmin%5d=

56)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0609/type/eDaily/US-Aetna-partners-CVS-Health-to-support-COVID-19-patients>)

57)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0609/type/eDaily/US-Aetna-partners-CVS-Health-to-support-COVID-19-patients>)

나. 일본

■ 일본 생·손보업계는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보험계약자 코로나19 지원 대책을 마련함⁵⁸⁾

- (자택·호텔 요양 시 급부) 일본 정부가 호텔과 자택 등을 경증자 임시 요양시설로 허용함에 따라 생명보험업계는 계약자가 의사 진단서 제출 시 호텔이나 자택에서 요양할 경우에도 입원 급부금을 지급할 예정임⁵⁹⁾
 - 다만, 의료기관의 병상 부족을 이유로 입원하지 못하고 임시시설에서 입원과 동일형태로 요양을 한 경우와 의료기관에서 조기 퇴원한 경우로 한정함
- (본인 확인 간소화) 보험계약자가 보험금 청구 시 본인 확인절차 일부를 생략하는 등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원격진료 보상) 후생노동성이 코로나19 원격진료를 장려함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코로나19와 관련하여 전화나 인터넷 진료를 받을 경우 통원급부금을 지급할 예정임⁶⁰⁾
- (무이자 약관대출) 정부의 무이자 대출 대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5월 31일까지 보험계약자가 신규로 약관대출을 신청할 경우 9월 30일까지 무이자 약관대출을 제공을 함
- (기업 대출상환 조건 완화) 기업 대출금 상환 기일이 도래할 기업에게 상환 연장 등 대출상환 조건 완화를 실시함

■ 일본 손해보험업계는 자율적으로 다음과 같은 특별 대책을 마련함⁶¹⁾

- (해외여행자보험 자동 연장)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여행에서 귀국 후 호텔 등 시설에서 자동격리 대상자가 된 경우, 추가 보험료 부담 없이 자택으로 귀가 시까지 보험계약을 연장하는 특별조치를 시행함
- (상해보험금 지급) 상해보험에 가입한 계약자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보험금 청구 시 상해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임

■ (보험설계사 소득 보상) 생명보험회사들은 정부의 코로나19 긴급조치에 따라 대면 영업을

58) 니혼생명 홈페이지(<https://www.nissay.co.jp/coronavirusoshirase/>), 도쿄해상 홈페이지(https://www.tokiomarine-nichido.co.jp/company/news/200302_01.html)

59) 日本經濟新聞(2020. 4. 7)

60) 日本經濟新聞(2020. 4. 28)

61) 日本經濟新聞(2020. 4. 27)

자제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를 대상으로 소득 보상을 검토 중임

- 메이지야스다(明治安田)생명의 경우 전년도 6개월 보험설계사의 영업실적으로 기초로 감소한 급여를 산정하여 성과급여에 반영할 예정임

다. 중국

■ (보장범위 확대) 보험회사는 기관매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보장범위에서 코로나19를 포함시켰음

- 중국 정부는 기본의료보험 및 재정지출로 코로나19의 치료비용을 보장하고 있지만, 중국 보험회사는 보장범위 확대를 통해 치료비용 외의 코로나19로 인한 사망보험금, 입원 일당의 지급을 제공함

- 2020년 2월 24일 기준 70개 보험회사는 1,210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인상하지 않고, 코로나19를 보장범위에서 포함시켰음

- 다만 대부분 보험회사는 코로나19에 대한 보장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만 설정함

■ (보험금 지급 서비스 강화) 보험회사는 보험금 청구 시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보험금 청구 접수채널 개설,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 및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 취소와 같은 조치를 통해 코로나19 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보험금 청구 절차 간소화는 보험증권 생략, 보험금 선지급, 병원비 선결제를 포함하며, 취소된 보험금 청구 제한 조건은 면책기간, 지정병원 이용제한, 자기부담한도가 있음

■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일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생산,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게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해줌

- 코로나19 진원지인 후베이성 및 확산세가 심각한 저장성에서 일부 보험회사는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또는 면제를 해줌

■ (온라인 의료서비스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병원 방문이 어려워지면서 많은 보험회사들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과 협력해 일반 시민에게 온라인진료 및 심리상담 서

비스, 코로나19 방역 정보를 무료로 제공함

- 중국평안보험은 온라인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인 굿닥터와 함께 보험회사의 앱에서 관련 서비스를 제공함

■ (무료보험 제공) 많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 경찰, 기자 및 배달원에게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보장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중국인수생명은 우한시에서 일하는 18만 명의 의료진에게 보험가입금액이 9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하며, 양광생명은 우한시에 일하는 의료진 및 그의 가족에게 보험가입금액이 1,000억 위안에 달하는 보험을 무료로 제공함

■ (방역 물자 및 성금 기부) 많은 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에 따른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방역 물자 및 성금을 기부함

- 3월 27일까지 보험회사는 총 3.76억 위안에 달하는 방역 물자 및 성금을 기부함

라. 대만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단독 페이지 개설) 대부분 보험회사는 고객 편의성 제고를 위해 보험 계약 해지, 약관대출 신청, 만기보험금 지급, 보험료 반환 및 연금 지급 등과 같은 보험서비스를 안내하는 단독 페이지를 개설함⁶²⁾

- 해당 페이지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및 보험협회 홈페이지에도 조회가 가능함

■ (보장범위 확대 및 면책기간 취소) 대다수 보험회사는 대만 금융감독관리위원회 요구에 따라 코로나19까지 보장하도록 기판매 보험상품의 약관을 수정하며 면책기간을 취소함⁶³⁾

- 코로나19뿐만 아니라 기타 법정감염병도 같이 포함시켰음

62) 金融監督管理委員會(2020. 3), “保險公司因應嚴重特殊傳染性肺炎疫情提供之保戶服務相關便民措施網址及服務專線彙總表”

63) 好險在這裏(2020. 3), “69種法定傳染病可免等待期,武漢肺炎保單已上市”

-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의 이자상환 유예) 대부분 보험회사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는 보험가입자를 위해 보험료 납입 및 약관대출의 이자상환 유예를 제공함⁶⁴⁾
 - 한편, 케세이생명 및 난산생명은 의료진, 방역 직원, 확진자,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체류자, 방역당국이 지정한 자가격리자 및 코로나19로 어려운 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 유예를 제공함⁶⁵⁾

- (보험금 선지급 및 의료진을 위한 위로금 지급) 케세이생명은 대만에서 최초로 보험계약자에게 의료보험금을 선지급하며, 코로나19 확진으로 의료진인 보험계약자에게 5만 대만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함⁶⁶⁾
 - 보험가입자는 의료보험금을 선지급 받지만, 사후 구체적인 보험금 청구 금액에 따라 남으면 환급하고 부족하면 더 받을 수 있음
 - 한편, 대만생명 및 글로벌생명은 의료진인 보험가입자에게 5만 대만달러의 위로금을 지급함

마. 유럽

- (보험료 납입 및 상환 옵션) 상당수의 보험회사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다양한 상품에 대해 상환 옵션을 제공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도록 조치함⁶⁷⁾⁶⁸⁾
 - 보험료 납입 연기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이자 또는 수수료를 요구하지 않으며, 일시적으로 실직자에 대한 보험 보장을 유지함⁶⁹⁾

64) 中國人壽, 法定傳染病-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因應專區 등입

65) 國泰人壽, 肺炎防疫服務專區, 【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國泰人壽相關因應措施; 南山人壽, 新聞中心, 保戶關懷及房貸紓困雙管齊下 南山人壽挺保戶和醫護 全面擴大適用對象

66) 國泰人壽, 肺炎防疫服務專區, 【嚴重特殊傳染性肺炎(新冠肺炎)】國泰人壽相關因應措施

67) AXA 홈페이지(<https://www.axa.co.uk/c-19-business-pledge/>)

68) AVIVA 홈페이지(<https://www.aviva.co.uk/help-and-support/coronavirus/>)

69) Insurance Europe 홈페이지(<https://www.insuranceurope.eu/covid-19-coronavirus>)

- (여행보험) 여행을 취소하는 경우 여행보험의 전액 환불을 보장하고,⁷⁰⁾ 해외 체류 중인 여행보험 가입 고객에 대하여 보험가입 기간 무료 연장이 가능하며, 새로운 여행을 계획하는 경우 무료 이전이 가능함
- (자동차보험) 자동차보험 고객을 위해 보장을 강화하고, 특히 필수 근로자 및 NHS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자동차보험을 보장함
- (주택보험) 고객들이 재택근무를 하는 동안 주택보험이 보장되며, 일반적으로 60일 이상 주택이 비어 있는 경우 도난, 고장, 기물 파손 등에 대해 보상하지 않으나 기준일을 최대 12주로 연장하기도 함⁷¹⁾
- (기업보험) 사용하지 않는 건물에 대한 보장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함

바. 동남아시아

1) 호주

- (면책 미적용) 호주 투자회사 및 생명보험회사를 대표하는 금융서비스협회(FSC: Financial Services Council)는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보험가입 거절 및 전염병 면책조항을 적용하지 않기로 함⁷²⁾
 - 또한, 생명보험회사가 코로나19 관련 의료종사자들에게 일반 보험료보다 높은 보험료를 요구하지 않도록 함
- (영구장해보험) 금융서비스협회(FSC)는 생명보험회사들이 호주 정부의 3차 경제부양패키지의 일환인 일자리 지키기 조치에 협력하여 보험가입자들의 영구장해보험(TPD: Total Permanent Disability)⁷³⁾에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고 발표함⁷⁴⁾

70) Royal&Sun Alliance 홈페이지(<https://www.morethan.com/coronavirus/>)

71) UK Insurance Limited 홈페이지(<https://u-k-insurance.co.uk/covid.html#faqs>)

72) 호주 금융서비스협회(FSC)(<https://fsc.org.au/policy/life-insurance/commitments#front>)

73)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입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진단되었을 경우,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임

74) 호주 금융서비스협회(FSC)(<https://www.fsc.org.au/news/media-releases>)

- 생명보험회사들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가입자들이 실직하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들어도 이들의 영구장해보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언급함
 - 영구장해보험은 퇴직연금상품 중 하나로, 질병이나 사고로 퇴직하기 전까지의 총 근무시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달라짐
 - 이러한 조치는 2020년 9월 27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1일 전까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함

- (위험관리 계획) 금융서비스협회(FSC)는 모든 생명보험회사가 보험금 청구 처리 및 고객문의 등과 같은 필수적인 업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감염병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함⁷⁵⁾
- 건전성감독청(APRA)의 Prudential Practice Guide 233에 의거하여, 보험회사 직원들이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도 소비자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는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함

2) 싱가포르

- (보장범위 확대) 2020년 2월 싱가포르 보험회사는 Integrated Shield Plans,⁷⁶⁾ 개인건강보험, 단체건강보험 등을 가입한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비용을 보장해주기로 함⁷⁷⁾
- 일부 생명보험회사는 계약자가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경우 진단금, 일별 입원비 등을 추가적으로 보상하기로 함
- 건강보험 및 단체보험 계약자는 입원 후 최대 14일까지 입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음
- Integrated Shield Plans 및 단체보험 계약자는 원격의료 진료비를 보상받을 수 있음
- (보험료 납부 연장)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소비자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보험료 납부기간을 최대 6개월까지 연장하는 정책을 제공함⁷⁸⁾

75) 호주 금융서비스협회(FSC)(<https://www.fsc.org.au/news/media-releases>)

76) 메디컬드 라이프 외 개인적으로 추가로 가입한 의료보험임

77) 싱가포르 통화감독청(<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mas-welcomes-measures-by-financial-institutions-to-support-customers-facing-the-impact-of-covid-19>);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https://www.lia.org.sg/news-room/industry-performance/2020/life-insurance-industry-achieves-20-per-cent-increase-in-sa-for-q1-2020/>)

78) 싱가포르 생명보험협회(<https://www.lia.org.sg/news-room/media-releases/2020/measures-by-life-insurers-to-support-customers-financially-impacted-by-covid-19/>); 싱가포르 통화감독청(MAS)(<https://www.mas.gov.sg/news/media-releases/2020/mas-and-financial-industry-to-support-individuals-and-smes-affected-by-the-covid-19-pandemic>)

○ 2020년 4월 1일~9월 30일 기간 동안 보험 갱신 또는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생명보험 및 건강보험 가입자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 납부를 연장할 수 있음

■ (보험료 분할납부 허용)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보험료 할부거래 분할납부를 허용함⁷⁹⁾

○ 손해보험 소비자들은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분할납부를 할 수 있으며, 대면거래를 피하기 위하여 전자 결제도 허용함

79) 싱가포르 손해보험협회(<https://gia.org.sg/agents/media-center/company-news/490-measures-taken-by-general-insurance-sector.html>)

4. 팬데믹 리스크

가. 미국

- 연방정부는 팬데믹 리스크 보험법(Pandemic Risk Insurance Act of 2020) 초안을 제시하여 보험회사의 팬데믹 관련 기업휴지보험의 손실을 공유하는 프로그램(Federal Pandemic Risk Reinsurance Program)을 마련하고자 함
 - 관련 손실을 1년간 최대 5,000억 달러 한도로, 2억 5천만 달러(공제액)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정부가 95%, 보험회사가 5%를 부담하는 것을 초안으로 담고 있음
 - 손실 2억 5천만 달러까지는 팬데믹 보험상품을 제공하는 보험회사가 부담함
 - 미국의 9/11 사태 이후 마련된 테러보험 프로그램(TRIA: Terrorism Risk Insurance Act)을 모델로 함
 - 7개 주가 기업휴지보험에서 코로나19 관련 손실을 소급적용하여 보장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⁸⁰⁾한 상태이나, 보험회사의 재정 악화 가능성 및 복잡한 법적 문제 등의 이슈가 존재함
- 미국 리스크관리협회(RIMS: Risk Management Society)는 미 재무부, 의회 및 대통령 집무실에 경제 회복 가속화를 위해 팬데믹 리스크 보험법 통과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냄(2020. 4. 21)⁸¹⁾
 - RIMS가 미국 리스크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91%가 전염병과 관련된 보험 청구에 대해 테러보험법과 유사한 연방 손실공유 프로그램을 지지함
 - 미국소매협회(NRF: National Retail Federation)⁸²⁾ 또한 팬데믹 리스크 보험 법안 통과를 촉구함(2020. 4. 23)⁸³⁾

80) <https://www.insurancejournal.com/news/east/2020/04/15/564920.htm?print>

81)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326/type/eDaily/US-RIMS-pushes-for-a-pandemic-risk-insurance-programme>)

82) 미국소매협회(NRF)는 백화점, 인터넷 및 독립 소매점, 레스토랑 체인 및 식료품점 등을 포함하여 소매업 회원으로 구성된 세계 최대의 소매 무역협회임

83) Asia Insurance Review(<https://www.asiainsurancereview.com/News/View-NewsLetter-Article/id/61367/type/eDaily/US-Major-retailers-call-for-pandemic-insurance-programme>)

나. 일본

- 미쓰이스미토모해상은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팬데믹 선포 시 급부를 지급하는 파생금융 상품을 일본 보험업계 최초로 2018년에 개발하여 판매함⁸⁴⁾
 - (개발 배경) 2020년 도쿄 올림픽의 개최를 앞두고 방일 외국인 여행객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전염병이 유행할 경우, 기업의 대규모 손실 발생이 우려되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었음

- (상품 특징)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한 기업의 매출 감소와 대책 비용 증가 위험을 보전함으로써 경영의 조기 정상화와 수익 안정화를 목적으로 개발함
 - 자본금 10억 엔 이상의 기업을 상대로 대상기간(1년)에 신종 인플루엔자 발생으로 국내 사망자 등이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함
 - 국내 사망자 수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기초로 지급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손해조사 및 고객의 청구서류가 불필요하는 등 지급절차가 간단함
 - 보험상품은 실제 피보험자에 발생한 손해액을 기준으로 보험금을 산출하지만, 금융파생상품은 사전에 정한 조건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금액을 산출함
 - 따라서 보험은 손해액을 조사하는 과정이 필수적인 반면, 금융파생상품은 불필요함

- (활용사례) 공장 및 사무실 영업 중지, 여행업 소득 감소로 발생하는 손실 보상에 활용함
 - 제조기업 등이 신종 인플루엔자에 의해 공장 또는 사무실이 일시 폐쇄되어 발생하는 생산 중단과 사업 유지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금전적 보상을 받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함
 - 여행·레저 산업 및 철도·항공 산업의 경우 이용객, 숙박객, 승객 등의 감소 리스크를 헤치할 수 있음

84) KIDI BRIEF(2020. 2)

다. 유럽

- 영국 정부는 기업들이 무역신용보험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임시 재보험제도를 마련하기로 함⁸⁵⁾
 - 이 제도는 무역신용보험의 지속적인 가용성 보장 및 빠른 경제 회복을 위한 것임
- 영국보험업계도 정부 지원 테러 재보험기금 Pool Re와 함께 팬데믹 보험을 개발하기 위해 여러 보험회사 사장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함⁸⁶⁾
- 프랑스는 팬데믹 보험 보장을 위한 새로운 매커니즘을 연구하고 있으며, 또 다른 잠재적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대응 계획을 세우기 위한 자금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⁸⁷⁾
 - 프랑스 재무부 장관인 Bruno Le Maire가 설립한 실무 그룹에는 국회의원, 기업가, 프랑스 보험협회, 공공재보험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6월 상반기에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임
 - 논의 중인 계획 중 하나는 자연재해에 대해 국가 보증을 제공하는 프랑스의 CatNat 체제의 모방임(CCR: Caisse Centrale de Reassurance)

85) ABI(2020. 5. 13), "ABI backs Government plans for a temporary reinsurance scheme so businesses can continue to access trade credit insurance"

86) Business Insurance(2020. 4. 29), "France drafting future insurance backstop for pandemics"

87) Business Insurance(2020. 4. 29), "France drafting future insurance backstop for pandemics"

보험연구원(KIRI) 발간물 안내

※ 2017년부터 기존의 연구보고서, 정책보고서, 경영보고서가 연구보고서로 통합되었습니다.

■ 연구보고서

- 2017-1 보험산업 미래 / 김석영·윤성훈·이선주 2017.2
- 2017-2 자동차보험 과실상계제도 개선방안 / 전용식·채원영 2017.2
- 2017-3 상호협정 관련 입법정책 연구 / 정호열 2017.2
- 2017-4 저소득층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공사연계연금 연구 / 정원석·강성호·마지혜 2017.3
- 2017-5 자영업자를 위한 사적소득보상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7.3
- 2017-6 우리나라 사회안전망 개선을 위한 현안 과제 / 이태열·최장훈·김유미 2017.4
- 2017-7 일본의 보험회사 도산처리제도 및 사례 / 정봉은 2017.5
- 2017-8 보험회사 업무위탁 관련 제도 개선방안 / 이승준·정인영 2017.5
- 2017-9 부채시가평가제도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이혜은 2017.8
- 2017-10 효율적 의료비 지출을 통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 방안 / 김대환 2017.8
- 2017-11 인슈어테크 혁명: 현황 점검 및 과제 고찰 / 박소정·박지윤 2017.8
- 2017-12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역할 제고 방안 / 이기형·이규성 2017.9
- 2017-13 보험금청구권과 소멸시효 / 권영준 2017.9
- 2017-14 2017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7.10
- 2017-15 2018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7.11
- 2017-16 퇴직연금 환경변화와 연금세제 개편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7.12
- 2017-17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현황과 개선방안 / 송윤아·이소양 2017.12
- 2017-18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소득 / 최장훈·이태열·김미화 2017.12
- 2017-19 연금세제 효과연구 / 정원석·이선주 2017.12
- 2017-20 주요국의 지진보험 운영 현황 및 시사점 / 최창희·한성원 2017.12
- 2017-21 사적연금의 장기연금수령 유도방안 / 김세중·김유미 2017.12
- 2017-22 누적전망이론을 이용한 생명보험과 연금의 유보가격 측정 연구 / 지홍민 2017.12
- 2018-1 보증연장 서비스 규제 방안 / 백영화·박정희 2018.1
- 2018-2 건강생활서비스 공·사 협력 방안 / 조용운·오승연·김동겸 2018.2
- 2018-3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개선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8.2
- 2018-4 IFRS 9과 보험회사의 ALM 및 자산배분 / 조영현·이혜은 2018.2
- 2018-5 보험상품 변천과 개발 방향 / 김석영·김세영·이선주 2018.2
- 2018-6 계리적 관점에서 본 실손의료보험 개선 방안 / 조재린·정성희 2018.3
- 2018-7 국내 보험회사의 금융겸업 현황과 시사점 / 전용식·이혜은 2018.3
- 2018-8 장애인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오승연·김석영·이선주 2018.4

- 2018-9 주요국 공·사 건강보험 연계 체계 분석 / 정성희·이태열·김유미 2018.4
- 2018-10 정신질환 위험보장 강화 방안 / 이정택·임태준·김동겸 2018.4
- 2018-11 기초서류 준수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방안 / 황현아·백영화·권오경 2018.8
- 2018-12 201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8.9
- 2018-13 상속법의 관점에서 본 생명보험 / 최준규 2018.9
- 2018-14 호주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경희 2018.9
- 2018-15 빅데이터 기반의 사이버위험 측정 방법 및 사이버사고 예측모형 연구 / 이진무 2018.9
- 2018-16 빅데이터 분석에 의한 요율산정 방법 비교: 실손의료보험 적용 사례 / 이항석 2018.9
- 2018-17 보험 모집 행위의 의미 및 범위에 대한 검토 / 백영화·손민숙 2018.10
- 2018-18 보험회사 해외채권투자와 환해지 / 황인창·임준환·채원영 2018.10
- 2018-19 베트남 생명보험산업의 현황 및 시사점 / 조용운·김동겸 2018.10
- 2018-20 여성 관련 연금정책 평가와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김동겸 2018.10
- 2018-21 디지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이버보험 역할제고 방안 / 임준·이상우·이소양 2018.11
- 2018-22 인구 고령화와 일본 보험산업 변화 / 윤성훈·김석영·한성원·손민숙 2018.11
- 2018-23 퇴직연기금 디폴트 옵션 도입 방안 및 부채연계투자전략에 관한 연구 / 성주호 2018.11
- 2018-24 보험 산업의 블록체인 활용: 점검 및 대응 / 김현수·권혁준 2018.11
- 2018-25 생명보험산업의 금리위험 평가: 보험부채 중심으로 / 임준환·최장훈·한성원 2018.11
- 2018-26 보험회사의 장수위험에 관한 연구 / 김세중·김유미 2018.11
- 2018-27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2019년 및 중장기 / 동향분석실 2018.11
- 2018-28 보험산업 중장기 전망 / 전용식·김유미·최예린 2018.12
- 2018-29 빅데이터 활용 현황과 개선 방안 / 최창희·홍민지 2018.12
- 2018-30 판매채널 변화가 보험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정원석·김석영·박정희 2018.12
- 2018-31 Solvency II 시행 전후 유럽보험시장과 시사점 / 김해식 2018.12
- 2018-32 보험회사 대출채권 운용의 특징과 시사점 / 조영현·황인창·이혜은 2018.12
- 2019-1 보험회사의 시스템리스크에 대한 고찰 / 김범 2019.1
- 2019-2 인도 보험시장 현황 및 진출 전략 / 이승준·정인영 2019.8
- 2019-3 201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금융소비자연구실 2019.10
- 2019-4 암보험 관련 주요 분쟁사례 연구 / 백영화·박정희 2019.10
- 2019-5 계약자 신뢰 제고를 위한 보험마케팅 - 상품과 수수료 중심으로 - / 정세창 2019.10
- 2019-6 생명보험 전매거래에 관한 연구 / 홍지민 2019.10
- 2019-7 재보험 출재전략 연구 / 김석영·이규성 2019.11
- 2019-8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수급권보호 방안 / 류건식·강성호·이상우 2019.11
- 2019-9 금융소비자보호법의 도입과 정책과제 / 양승현·손민숙 2019.11
- 2019-10 2020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9.12
- 2019-11 노인장기요양서비스 현황과 보험회사의 역할 제고 방향 / 강성호·김혜란 2019.12
- 2019-12 보험회사의 이익조정에 관한 시사점 / 송인정 2019.12

- 2019-13 비대면채널 활용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 / 정원석·김석영·정인영 2019.12
 2020-1 기업의 보험수요에 대한 연구 / 송윤아·한성원 2020.1
 2020-2 원리금보장형 퇴직연금 요구자본 강화와 퇴직연금 관리 / 김세중·김혜란 2020. 4

■ 연구보고서(구)

- 2008-1 보험회사의 리스크 중심 경영전략에 관한 연구 / 최영목·장동식·김동겸 2008.1
 2008-2 한국 보험시장과 공정거래법 / 정호열 2008.6
 2008-3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자산운용 / 류진식·이경희·김동겸 2008.3
 2009-1 보험설계사의 특성분석과 고능률화 방안 / 안철경·권오경 2009.1
 2009-2 자동차사고의 사회적 비용 최소화 방안 / 기승도 2009.2
 2009-3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의 진단과 평가 / 유경원·이혜은 2009.3
 2009-4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제고 방안 / 류진식·이창우·김동겸 2009.3
 2009-5 일반화선형모형(GLM)을 이용한 자동차보험 요율상대도 산출 방법 연구 / 기승도·김대환 2009.8
 2009-6 주행거리에 연동한 자동차보험제도 연구 / 기승도·김대환·김혜란 2010.1
 2010-1 우리나라 가계 금융자산 축적 부진의 원인과 시사점 / 유경원·이혜은 2010.4
 2010-2 생명보험 상품별 해지율 추정 및 예측 모형 / 황진태·이경희 2010.5
 2010-3 보험회사 자산관리서비스 사업모형 검토 / 진 익·김동겸 2010.7

■ 정책보고서(구)

- 2008-2 환경오염리스크관리를 위한 보험제도 활용방안 / 이기형 2008.3
 2008-3 금융상품의 정의 및 분류에 관한 연구 / 유지호·최 원 2008.3
 2008-4 2009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이태열·신종협·황진태·유진아·김세환·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8.11
 2009-1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 진 익·이민환·유경원·최영목·최형선·최 원·이경아·이혜은 2009.2
 2009-2 퇴직연금의 급여 지급 방식 다양화 방안 / 이경희 2009.3
 2009-3 보험분쟁의 재판외적 해결 활성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이종욱 2009.3
 2009-4 2010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황진태·변혜원·이경희·이정환·박정희·김세중·최이섭 2009.12
 2009-5 금융상품판매전문회사의 도입이 보험회사에 미치는 영향 / 안철경·변혜원·권오경 2010.1
 2010-1 보험사기 영향요인과 방지방안 / 송윤아 2010.3
 2010-2 2011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이진면·김대환·이경희·이정환·최 원·김세중·최이섭 2010.12
 2011-1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개선방안 / 오영수·안철경·변혜원·최영목·

- 최형선·김경환·이상우·박정희·김미화 2010.4
- 2011-2 일반공제사업 규제의 합리화 방안 / 오영수·김경환·박정희 2011.7
- 2011-3 퇴직연금 적립금의 연금전환 유도방안 / 이경희 2011.5
- 2011-4 저출산·고령화와 금융의 역할 / 윤성훈·류건식·오영수·조용운·진 익·유진아·변혜원 2011.7
- 2011-5 소비자 보호를 위한 보험유통채널 개선방안 / 안철경·이경희 2011.11
- 2011-6 2012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황진태·이정환·최 원·김세중·오병국 2011.12
- 2012-1 인적사고 보험금의 지급방식 다양화 방안 / 조재린·이기형·정인영 2012.8
- 2012-2 보험산업 진입 및 퇴출에 관한 연구 / 이기형·변혜원·정인영 2012.10
- 2012-3 금융위기 이후 보험규제 변화 및 시사점 / 임준환·유진아·이경아 2012.11
- 2012-4 소비자중심의 변액연금보험 개선방안 연구: 공시 및 상품설계 개선을 중심으로 / 이기형·임준환·김해식·이경희·조영현·정인영 2012.12
- 2013-1 생명보험의 자살면책기간이 자살에 미치는 영향 / 이창우·윤상호 2013.1
- 2013-2 퇴직연금 지배구조체계 개선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3 2013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이정환·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2
- 2013-4 사회안전망 체계 개편과 보험산업 역할 / 진 익·오병국·이성은 2013.3
- 2013-5 보험지주회사 감독체계 개선방안 연구 / 이승준·김해식·조재린 2013.5
- 2013-6 2014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전용식·최 원·김세중·채원영 2013.12
- 2014-1 보험시장 경쟁정책 투명성 제고방안 / 이승준·강민규·이해량 2014.3
- 2014-2 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규제 평가 및 개선방안 / 조재린·김해식·김석영 2014.3
- 2014-3 공·사 사회안전망의 효율적인 역할 제고 방안 / 이태열·강성호·김유미 2014.4
- 2014-4 2015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역·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량 2014.11
- 2014-5 의료보장체계 합리화를 위한 공·사건강보험 협력방안 / 조용운·김경환·김미화 2014.12
- 2015-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규제 - IFRS와 RBC 연계방안 / 김해식·조재린·이경아 2015.2
- 2015-2 2016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윤성훈·김석영·김진역·최 원·채원영·이아름·이해량 2015.11
- 2016-1 정년연장의 노후소득 개선 효과와 개인연금의 정책방향 / 강성호·정봉은·김유미 2016.2
- 2016-2 국민건강보험 보장률 인상 정책 평가: DSGE 접근법 / 임태준·이정택·김혜란 2016.11
- 2016-3 2017년도 보험산업 전망과 과제 / 동향분석실 2016.12

■ 경영보고서(구)

- 2009-1 기업휴지보험 활성화 방안 연구 / 이기형·한상용 2009.3
- 2009-2 자산관리서비스 활성화 방안 / 진 익 2009.3
- 2009-3 탄소시장 및 녹색보험 활성화 방안 / 진 익·유시용·이경아 2009.3
- 2009-4 생명보험회사의 지속가능성장에 관한 연구 / 최영목·최 원 2009.6
- 2010-1 독립판매채널의 성장과 생명보험회사의 대응 / 안철경·권오경 2010.2

- 2010-2 보험회사의 윤리경영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 오영수·김경환 2010.2
- 2010-3 보험회사의 퇴직연금사업 운영전략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3
- 2010-4(1) 보험환경변화에 따른 보험산업 성장방안 / 산업연구실·정책연구실·동향분석실 2010.6
- 2010-4(2) 종합금융서비스를 활용한 보험산업 성장방안 / 금융제도실·재무연구실 2010.6
- 2010-5 변액보험 보증리스크관리연구 / 권용재·장동식·서성민 2010.4
- 2010-6 RBC 내부모형 도입 방안 / 김해식·최영목·김소연·장동식·서성민 2010.10
- 2010-7 금융보증보험 가격결정모형 / 최영수 2010.7
- 2011-1 보험회사의 비대면채널 활용방안 / 안철경·변혜원·서성민 2011.1
- 2011-2 보증보험의 특성과 리스크 평가 / 최영목·김소연·김동겸 2011.2
- 2011-3 충성도를 고려한 자동차보험 마케팅전략 연구 / 기승도·황진태 2011.3
- 2011-4 보험회사의 상조서비스 기여방안 / 황진태·기승도·권오경 2011.5
- 2011-5 사기성클레임에 대한 최적조사방안 / 송윤아·정인영 2011.6
- 2011-6 민영의료보험의 보험리스크관리방안 / 조용운·황진태·김미화 2011.8
- 2011-7 보험회사의 개인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류건식·김대환·이상우 2011.9
- 2011-8 퇴직연금시장의 환경변화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운영방안 / 김대환·류건식·이상우 2011.10
- 2012-1 국내 생명보험회사의 기업공개 평가와 시사점 / 조영현·전용식·이혜은 2012.7
- 2012-2 보험산업 비전 2020 : @ sure 4.0 / 진 익·김동겸·김혜란 2012.7
- 2012-3 현금흐름방식 보험료 산출의 시행과 과제 / 김해식·김석영·김세영·이혜은 2012.9
- 2012-4 보험회사의 장수리스크 발생원인과 관리방안 / 김대환·류건식·김동겸 2012.9
- 2012-5 은퇴가구의 경제형태 분석 / 유경원 2012.9
- 2012-6 보험회사의 날씨리스크 인수 활성화 방안: 지수형 날씨보험을 중심으로 / 조재린·황진태·권용재·채원영 2012.10
- 2013-1 자동차보험시장의 가격경쟁이 손해율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전용식·채원영 2013.3
- 2013-2 중국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확대방안 연구 / 기승도·조용운·이소양 2013.5
- 2016-1 뉴 노멀 시대의 보험회사 경영전략 / 임준환·정봉은·황인창·이혜은·김혜란·정승연 2016.4
- 2016-2 금융보증보험 잠재 시장 연구: 지방자치단체 자금조달 시장을 중심으로 / 최창희·황인창·이경아 2016.5
- 2016-3 퇴직연금시장 환경변화와 보험회사 대응방안 / 류건식·강성호·김동겸 2016.5

■ 조사보고서

- 2008-1 보험회사 글로벌화를 위한 해외보험시장 조사 / 양성문·김진역·지재원·박정희·김세중 2008.2
- 2008-2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도입에 대응한 장기간병보험 운영 방안 / 오영수 2008.3
- 2008-3 2008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기승도·이상우 2008.4
- 2008-4 주요국의 보험상품 판매권유 규제 / 이상우 2008.3

- 2009-1 2009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안철경·이상우·권오경 2009.3
- 2009-2 Solvency II의 리스크 평가모형 및 측정 방법 연구 / 장동식 2009.3
- 2009-3 이슬람 보험시장 진출방안 / 이진면·이정환·최이섭·정중영·최태영 2009.3
- 2009-4 미국 생명보험 정산거래의 현황과 시사점 / 김해식 2009.3
- 2009-5 헤지펀드 운용전략 활용방안 / 진 익·김상수·김종훈·변귀영·유시용 2009.3
- 2009-6 복합금융 그룹의 리스크와 감독 / 이민환·전선애·최 원 2009.4
- 2009-7 보험산업 글로벌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 / 서대교·오영수·김영진 2009.4
- 2009-8 구조화금융 관점에서 본 금융위기 분석 및 시사점 / 임준환·이민환·윤건용·최 원 2009.7
- 2009-9 보험리스크 측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연구 / 조용운·김세환·김세중 2009.7
- 2009-10 생명보험계약의 효력상실·해약분석 / 류건식·장동식 2009.8
- 2010-1 과거 금융위기 사례분석을 통한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전망 / 신종협·최형선·최 원 2010.3
- 2010-2 금융산업의 영업행위 규제 개선방안 / 서대교·김미화 2010.3
- 2010-3 주요국의 민영건강보험의 운영체제와 시사점 / 이창우·이상우 2010.4
- 2010-4 2010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변혜원·박정희 2010.4
- 2010-5 산재보험의 운영체제에 대한 연구 / 송윤아 2010.5
- 2010-6 보험산업 내 공정거래규제 조화방안 / 이승준·이종욱 2010.5
- 2010-7 보험종류별 진료수가 차등적용 개선방안 / 조용운·서대교·김미화 2010.4
- 2010-8 보험회사의 금리위험 대응전략 / 진 익·김해식·유진아·김동겸 2011.1
- 2010-9 퇴직연금 규제체계 및 정책방향 / 류건식·이창우·이상우 2010.7
- 2011-1 생명보험설계사 활동실태 및 만족도 분석 / 안철경·황진태·서성민 2011.6
- 2011-2 2011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김대환·최 원 2011.5
- 2011-3 보험회사 녹색금융 참여방안 / 진 익·김해식·김혜란 2011.7
- 2011-4 의료시장 변화에 따른 민영실손의료보험의 대응 / 이창우·이기형 2011.8
- 2011-5 아세안 주요국의 보험시장 규제제도 연구 / 조용운·변혜원·이승준·김경환·오병국 2011.11
- 2012-1 2012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황진태·전용식·윤상호·기승도·이상우·최 원 2012.6
- 2012-2 일본의 퇴직연금제도 운영체제 특징과 시사점 / 이상우·오병국 2012.12
- 2012-3 솔벤시 II의 보고 및 공시 체계와 시사점 / 장동식·김경환 2012.12
- 2013-1 2013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황진태·변혜원·정원석·박선영·이상우·최 원 2013.8
- 2013-2 건강보험 진료비 전망 및 활용방안 / 조용운·황진태·조재린 2013.9
- 2013-3 소비자 신뢰 제고와 보험상품 정보공시 개선방안 / 김해식·변혜원·황진태 2013.12
- 2013-4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 이행에 관한 연구 / 변혜원·조영현 2013.12
- 2014-1 주택연금 연계 간병보험제도 도입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4.3
- 2014-2 소득수준을 고려한 개인연금 세제 효율화방안: 보험료 납입단계의 세제방식 중심으로 / 정원석·강성호·이상우 2014.4
- 2014-3 보험규제에 관한 주요국의 법제연구: 모집채널, 행위 규제 등을 중심으로 / 한기정·최준규 2014.4
- 2014-4 보험산업 환경변화와 판매채널 전략 연구 / 황진태·박선영·권오경 2014.4

- 2014-5 거시경제 환경변화의 보험산업 파급효과 분석 / 전성주·전용식 2014.5
 2014-6 국내경제의 일본식 장기부진 가능성 검토 / 전용식·윤성훈·채원영 2014.5
 2014-7 건강생활관리서비스 사업모형 연구 / 조용운·오승연·김미화 2014.7
 2014-8 보험개인정보 보호법제 개선방안 / 김경환·강민규·이해량 2014.8
 2014-9 2014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전용식·변혜원·정원석·박선영·오승연·이상우·최 원 2014.8
 2014-10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 / 김석영·김세중·김혜란 2014.11
 2014-11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사업 평가와 제언 / 전용식·조영현·채원영 2014.12
 2015-1 보험민원 해결 프로세스 선진화 방안 / 박선영·권오경 2015.1
 2015-2 재무건전성 규제 강화와 생명보험회사의 자본관리 / 조영현·조재린·김혜란 2015.2
 2015-3 국내 배상책임보험 시장 성장 저해 요인 분석 - 대인사고 손해배상액 산정 기준을 중심으로 - / 최창희·정인영 2015.3
 2015-4 보험산업 신뢰도 제고 방안 / 이태열·황진태·이선주 2015.3
 2015-5 2015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5.8
 2015-6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가 보험 수요에 미치는 영향 / 오승연·김유미 2015.8
 2016-1 경영환경 변화와 주요 해외 보험회사의 대응 전략 / 전용식·조영현 2016.2
 2016-2 시스템리스크를 고려한 복합금융그룹 감독방안 / 이승준·민세진 2016.3
 2016-3 저성장 시대 보험회사의 비용관리 / 김해식·김세중·김현경 2016.4
 2016-4 자동차보험 해외사업 경영성과 분석과 시사점 / 전용식·송윤아·채원영 2016.4
 2016-5 금융·보험세제연구: 집합투자기구, 보험 그리고 연금세제를 중심으로 / 정원석·임 준·김유미 2016.5
 2016-6 가용자본 산출 방식에 따른국내 보험회사 지급여력 비교 / 조재린·황인창·이경아 2016.5
 2016-7 해외 사례를 통해 본 중·소형 보험회사의 생존전략 / 이태열·김해식·김현경 2016.5
 2016-8 생명보험회사의 연금상품 다양화 방안: 중신소득 보장기능을 중심으로 / 김세중·김혜란 2016.6
 2016-9 2016년 보험소비자 설문조사 / 동향분석실 2016.8
 2016-10 자율주행자동차 보험제도 연구 / 이기형·김혜란 2016.9
 2019-1 자동차보험 잔여시장제도 개선 방향 연구 / 기승도·홍민지 2019.5

■ 이슈보고서

- 2019-1 실손의료보험 현황과 개선 방안 / 정성희·문혜정 2019.10
 2020-1 서울 지역별 아파트 가격 거품 가능성 검토 / 윤성훈 2020.1
 2020-2 보험회사 자회사형 GA의 성과와 시사점 / 김동겸 2020.3

■ 조사자료집

- 2014-1 보험시장 자유화에 따른 보험산업 환경변화 / 최 원·김세중 2014.6
 2014-2 주요국 내부자본적정성 평가 및 관리 제도 연구 - Own Risk and Solvency Assessment - /

장동식·이정환 2014.8

- 2015-1 고령층 대상 보험시장 현황과 해외사례 / 강성호·정원석·김동점 2015.1
 2015-2 경증치매자 보호를 위한 보험사의 치매신탁 도입방안 / 정봉은·이선주 2015.2
 2015-3 소비자 금융이해력 강화 방안: 보험 및 연금 / 변혜원·이해랑 2015.4
 2015-4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계경제의 구조적 변화 / 박대근·박춘원·이항용 2015.5
 2015-5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 전성주·박선영·김유미 2015.5
 2015-6 고령화에 대응한 생애자산관리 서비스 활성화 방안 / 정원석·김미화 2015.5
 2015-7 일반 손해보험 요율제도 개선방안 연구 / 김석영·김혜란 2015.12
 2018-1 변액연금 최저보증 및 사업비 부과 현황 조사 / 김세환 2018.2
 2018-2 리콜 리스크관리와 보험의 역할 / 김세환 2018.12
 2018-3 주요국 혼합형 퇴직연금제도 현황과 시사점 / 이상우 2018.12
 2020-1 공제보험 현황 조사 / 최창희·홍민지 2020.4

■ 연차보고서

- 제 1 호 200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09.4
 제 2 호 200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0.3
 제 3 호 2010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1.3
 제 4 호 2011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2.3
 제 5 호 2012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3
 제 6 호 2013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3.12
 제 7 호 2014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4.12
 제 8 호 2015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5.12
 제 9 호 2016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7.1
 제 10 호 2017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8.1
 제 11호 2018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19.1
 제 12호 2019년 연차보고서 / 보험연구원 2020.1

■ 영문발간물

-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8 / KIRI, 2008.9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09 / KIRI, 2009.9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0 / KIRI, 2010.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1 / KIRI, 2011.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2 / KIRI, 2012.11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3 / KIRI, 2013.12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4 / KIRI, 2014.8

-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5 / KIRI, 2015.8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6 / KIRI, 2016.8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7 / KIRI, 2017.8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8 / KIRI, 2018.8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2019 / KIRI, 2019.8
 제 7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3 / KIRI, 2014.2
 제 8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3 / KIRI, 2014.5
 제 9 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4 / KIRI, 2014.8
 제1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4 / KIRI, 2014.10
 제1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4 / KIRI, 2015.2
 제1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4 / KIRI, 2015.4
 제1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5 / KIRI, 2015.8
 제1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5 / KIRI, 2015.11
 제1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5 / KIRI, 2016.2
 제1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5/ KIRI, 2016.6
 제1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6/ KIRI, 2016.9
 제1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6/ KIRI, 2016.12
 제1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6/ KIRI, 2017.2
 제2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6/ KIRI, 2017.5
 제2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7/ KIRI, 2017.9
 제2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7/ KIRI, 2017.11
 제23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7/ KIRI, 2018.2
 제24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7/ KIRI, 2018.5
 제25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8/ KIRI, 2018.8
 제26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8/ KIRI, 2018.12
 제27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8/ KIRI, 2019.2
 제28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8/ KIRI, 2019.4
 제29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1Q FY2019/ KIRI, 2019.10
 제30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2Q FY2019/ KIRI, 2019.12
 제31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3Q FY2019/ KIRI, 2020.2
 제32호 Korean Insurance Industry Trend 4Q FY2019/ KIRI, 2020.5

■ CEO Report

- 2008-1 자동차보험 물적담보 손해를 관리 방안 / 기승도 2008.6
 2008-2 보험산업 소액지급결제시스템 참여 관련 주요 이슈 / 이태열 2008.6
 2008-3 FY2008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08.8

- 2008-4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안의 영향과 보험회사 대응과제 / 류건식·서성민 2008.12
- 2009-1 FY2009 보험산업 수정전망과 대응과제 / 동향분석실 2009.2
- 2009-2 퇴직연금 예금보험료율 적용의 타당성 검토 / 류건식·김동겸 2009.3
- 2009-3 퇴직연금 사업자 관련규제의 적정성 검토 / 류건식·이상우 2009.6
- 2009-4 퇴직연금 가입 및 인식실태 조사 / 류건식·이상우 2009.10
- 2010-1 복수사용자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및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김대환·이상우·김혜란 2010.4
- 2010-2 FY2010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0.6
- 2010-3 보험소비자 보호의 경영전략적 접근 / 오영수 2010.7
- 2010-4 장기손해보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보험금 지급심사제도 개선 / 김대환·이기형 2010.9
- 2010-5 퇴직금 중간정산의 문제점과 개선과제 / 류건식·이상우 2010.9
- 2010-6 우리나라 신용카드시장의 특징 및 개선논의 / 최형선 2010.11
- 2011-1 G20 정상회의의 금융규제 논의 내용 및 보험산업에 대한 시사점 / 김동겸 2011.2
- 2011-2 영국의 공동계정 운영체제 / 최형선·김동겸 2011.3
- 2011-3 FY2011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1.7
- 2011-4 근퇴법 개정에 따른 퇴직연금 운영방안과 과제 / 김대환·류건식 2011.8
- 2012-1 FY2012 수입보험료 전망 / 동향분석실 2012.8
- 2012-2 건강생활서비스법 제정(안)에 대한 검토 / 조용운·이상우 2012.11
- 2012-3 보험연구원 명사초청 보험발전 간담회 토론 내용 / 윤성훈·전용식·전성주·채원영 2012.12
- 2012-4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 정책공약집을 중심으로 / 이기형·정인영 2012.12
- 2013-1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경감제 정책에 대한 평가 / 김대환·이상우 2013.1
- 2013-2 새정부의 보험산업 정책(III):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 이승준 2013.3
- 2013-3 FY2013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3.7
- 2013-4 유럽 복합금융그룹의 보험사업 매각 원인과 시사점 / 전용식·윤성훈 2013.7
- 2014-1 2014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4.6
- 2014-2 인구구조 변화가 보험계약규모에 미치는 영향 분석 / 김석영·김세중 2014.6
- 2014-3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 이태열·조재린·황진태·송윤아 2014.7
- 2014-4 아베노믹스 평가와 시사점 / 임준환·황인창·이혜은 2014.10
- 2015-1 연말정산 논란을 통해 본 소득세제 개선 방향 / 강성호·류건식·정원석 2015.2
- 2015-2 2015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5.6
- 2015-3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및 이의 영향 / 김석영 2015.10
- 2016-1 금융규제 운영규정 제정 의미와 시사점 / 김석영 2016.1
- 2016-3 2016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6.7
- 2016-4 EU Solvency II 경과조치의 의미와 시사점 / 황인창·조재린 2016.7
- 2016-5 비급여 진료비 관련 최근 논의 동향과 시사점 / 정성희·이태열 2016.9

- 2017-1 보험부채 시가평가와 보험산업의 과제 / 김해식 2017.2
 2017-2 2017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7.7
 2017-3 1인 1 퇴직연금시대의 보험회사 IRP 전략 / 류건식·이태열 2017.7
 2018-1 2018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8.7
 2018-2 북한 보험산업의 이해와 대응 / 안철경·정인영 2018.7
 2019-1 기후변화 위험과 보험회사의 대응 방안 / 이승준 2019.4
 2019-2 2019년 수입보험료 수정 전망 / 동향분석실 2019.7
 2019-3 보험생태계 강화를 위한 과제 / 김동겸·정인영 2019.8
 2019-4 저(무)해지 환급형 보험 현황 및 분석 / 김규동 2019.12
 2020-1 코로나 19(Covid-19) 영향 및 보험산업 대응과제 / 김해식·조영현·김석영·노건엽·황인창·김동겸·손민숙 2020.4

■ Insurance Business Report

- 26호 퇴직연금 중심의 근로자 노후소득보장 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2
 27호 보험부채의 리스크마진 측정 및 적용 사례 / 이경희 2008.6
 28호 일본 금융상품판매법의 주요내용과 보험산업에 대한 영향 / 이기형 2008.6
 29호 보험회사의 노인장기요양 사업 진출 방안 / 오영수 2008.6
 30호 교차모집제도의 활용의향 분석 / 안철경·권오경 2008.7
 31호 퇴직연금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영향과 대응과제 / 류건식·김동겸 2008.7
 32호 보험회사의 헤지펀드 활용방안 / 진 익 2008.7
 33호 연금보험의 확대와 보험회사의 대응과제 / 이경희·서성민 2008.9

■ 간행물

- 보험동향 / 연 4회
- 보험금융연구 / 연 4회

※ 2008년 이전 발간물은 보험연구원 홈페이지(<http://www.kiri.or.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도서회원 가입안내 』

회원 및 제공자료

	법인회원	특별회원	개인회원
연회비	₩ 30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제공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보고서 - 기타보고서 - 연속간행물 · 보험금융연구 · 보험동향 · KIRI 포커스 모음집 · KIRI 이슈 모음집 · KOREA INSURANCE INDUSTRY
	- 영문연차보고서	-	-

※ 특별회원 가입대상 :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가입문의

보험연구원 도서회원 담당

전화 : (02) 3775 - 9113 팩스 : (02) 3775 - 9102

회비납입방법

- 무통장입금 : 국민은행 (400401 - 01 - 125198)

예금주 : 보험연구원

가입절차

보험연구원 홈페이지(www.kiri.or.kr)에 접속 후 도서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등록 후 회비입금을 하시면 확인 후 1년간 회원자격이 주어집니다.

자료구입처

서울 : 보험연구원 자료실 (02-3775-9113 / lsy@kiri.or.kr)

『해외 보험동향』 2020년 여름호 (통권 2호)

발행일	2020년 6월
발행인	안 철 경
발행처	보 험 연 구 원
등 록	2016년 10월 7일(등록번호 영등포 바 00140)
주 소	0732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6길 38
연락처	대표전화 / 02-3775-9000
인쇄소	경성문화사 / 02-786-2999

ISSN 2714-0482

정가 10,000원

본 자료에 실린 내용에 대한 문의는 보험연구원의
글로벌보험센터(☎3775-9094)로 연락하여 주십시오.

